

韓 · 日 國稅行政의 比較 · 評價

1997. 10.

柳 時 權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지난 30년에 걸쳐 國稅廳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9%의 經濟成長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대한 규모의 財政需要를 원활히 조달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國稅廳은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납세인원의 증가와 주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인원과 예산으로 公平負擔의 實現, 納稅者 서비스의 強化, 科學的인 稅源管理 및 稅務公務員 風土의 刷新 등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국세행정의 평가는 비교적 적은 징세비용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는가에 의하여 측정하는 效率性(efficiency)과 일정기간 동안에 自進申告納付率이 어느 정도 향상하였는가에 의하여 측정하는 效果性(effectiveness)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國稅廳은 세수증대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자진신고납부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크게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本 研究의 目的은 조세제도와 행정 양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및 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日本의 그것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國稅行政 30년을 評價하고 앞으로 나아갈 方向을 제시하는 데 있다. 兩國의 稅務行政을 평면적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이 장기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民主國家의 비용인 세금을 公正하게 모든 국민이 스스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自進申告納付하게 하는 데 있다”로 설정하고 양국의 제도 및 행정이 어느 정도 이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분석·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國稅行政이 日本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租稅體系는 간접세 중심의 세제인 데 비하여 日本은 戰後 샤프(K. Shoup) 勸告에 의하여 소득세를 基幹稅로 하는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확립하였다. 오늘날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은 그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제를 확립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집행관서인 국세청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1980년에,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제도는 1995년에 비로소 도입한 데 비하여 日本은 1947년에 이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장 신고자의 우대조치를 근간으로 하는 靑色申告制度를 시행하는 등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50년이 지난 오늘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중세 분야에서 표준소득률, 자동부과율 등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장부의 기장과 비치에 의한 신고납부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國稅廳의 機構는 아직도 稅目別 組織에 의존하고 있어 신고서의 분류·조사 등 집행상에 문제가 많은 데 비하여 日本은 1991년에 세목별 조직을 納稅者別 組織으로 改編하였다. 오늘날 선진국의 세무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은 기능별 조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兩國이 공개하는 稅務統計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 國稅廳의 경우 가능한 한 최소한의 통계만을 공개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유로운 연구를 지원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민주화를 위하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日本 수준의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柳時權 博士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本 報告書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한 두분의 평가자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원고정리를 도와준 본원의 康美貞, 李姓嫵 研究員과 崔祉燾 研究助員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0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 仲 秀

目 次

I. 序 論	13
1. 國稅廳 發足の 背景	14
2. 國稅廳과 稅務行政의 基本方向	15
3. 國稅行政 30年の 評價	17
II. 우리나라의 國稅行政	18
1. 序論	18
2. 主要稅目の 申告納付와 調査	29
3. 源泉徵收制度	67
4. 滯納處分	70
5. 權利救濟	72
III. 日本의 國稅行政	78
1. 序論	78
2. 申告納稅制度와 調査	96
3. 源泉徵收制度	122
4. 納付와 滯納國稅의 徵收	125
5. 權利救濟制度	132
6. 其他 稅務行政에 關聯된 事項	134
IV. 韓·日 國稅行政의 比較·評價	147
1. 租稅體系	147
2. 申告納付와 調査行政	149

3. 國稅廳機構의 改編	154
4. 國稅情報의 公開	156
〈參考文獻〉	158

表 目 次

〈表 II - 1〉 年度別・稅目別 租稅徵收	20
〈表 II - 2〉 直・間稅 比率	22
〈表 II - 3〉 租稅負擔率 推移	23
〈表 II - 4〉 國稅廳 發足 當時(1966. 3. 3)의 定員 現況	27
〈表 II - 5〉 國稅廳 定員의 推移	28
〈表 II - 6〉 綠色申告制 導入 當時 및 最近의 綠色申告人員 推移	31
〈表 II - 7〉 書面申告決定人員 推移	33
〈表 II - 8〉 年度別 納稅組合數 및 所得稅 納付 推移	35
〈表 II - 9〉 事業所得稅 申告人員 推移	35
〈表 II - 10〉 綜合所得稅 申告狀況 推移	36
〈表 II - 11〉 標準所得率 種目數 및 平均所得率 推移	41
〈表 II - 12〉 法人 現況	43
〈表 II - 13〉 營利法人 種類別 現況	44
〈表 II - 14〉 資本金 階級別 法人分布	45
〈表 II - 15〉 誠實申告法人의 選定 現況	48
〈表 II - 16〉 課稅標準 階級別 申告法人數 推移	51
〈表 II - 17〉 年度別 調查法人數 및 自進納付稅 比率	52
〈表 II - 18〉 調查法人數 推移	56
〈表 II - 19〉 推計決定 現況	57
〈表 II - 20〉 申告書 作成方法別 申告 現況(1994年 2期)	60
〈表 II - 21〉 附加價值稅 更正實績 推移	66
〈表 II - 22〉 年度別 源泉稅 徵收比重	68
〈表 II - 23〉 徵收義務者別 源泉徵收 構成	69

〈表 II-24〉 納稅義務者別 源泉徵收 構成	69
〈表 II-25〉 滯納發生 比率 推移(內國稅)	71
〈表 II-26〉 未定理 滯納額의 件當 平均額 推移	71
〈表 II-27〉 再審査請求 및 處理 現況	73
〈表 II-28〉 異議申請 및 處理 現況	75
〈表 II-29〉 審判請求 및 處理 現況(內國稅分)	76
〈表 II-30〉 審査·審判請求와 行政訴訟의 年度別 發生 現況	77
〈表 II-31〉 租稅行政訴訟의 國家勝訴率 推移	77
〈表 III-1〉 日本 一般會計歲入의 科目別 決算額 및 歲入에 대한 租稅收入 比重	80
〈表 III-2〉 日本의 國稅收入 構成의 年度別 比較	81
〈表 III-3〉 日本의 國稅收入 構成의 國際比較	85
〈表 III-4〉 日本의 國民所得에 대한 租稅負擔率	86
〈表 III-5〉 日本의 徵稅費(累年比較)	96
〈表 III-6〉 日本의 個人 青色申告者數 推移	99
〈表 III-7〉 日本의 法人數 및 青色申告法人數 推移	100
〈表 III-8〉 日本의 記帳制度 適用者數(個人) 推移	101
〈表 III-9〉 日本의 所得稅 確定申告者數 推移	101
〈表 III-10〉 日本의 所得稅 納稅者數 및 申告納稅額 推移	103
〈表 III-11〉 日本의 法人 現況	105
〈表 III-12〉 日本의 法人稅 申告狀況 推移	107
〈表 III-13〉 日本의 法人稅 課稅額 推移	108
〈表 III-14〉 日本의 相續稅 課稅 現況	113
〈表 III-15〉 日本의 贈與稅 課稅 現況	114
〈表 III-16〉 日本의 消費稅 課稅 現況(1993)	119
〈表 III-17〉 日本의 酒類製造 및 販賣免許場數 推移	119

〈表 Ⅲ－18〉	日本の 主要酒類 酒稅額表(1994年 現在)	120
〈表 Ⅲ－19〉	日本の 酒類課稅數量 및 課稅額 推移	121
〈表 Ⅲ－20〉	日本の 源泉所得稅 課稅 現況	123
〈表 Ⅲ－21〉	日本の 國稅徵收 現況	127
〈表 Ⅲ－22〉	日本の 最近 物納申請 現況	128
〈表 Ⅲ－23〉	日本の 對替納稅 普及 現況(確定申告分)	129
〈表 Ⅲ－24〉	日本の 滯納發生 處理 現況	132
〈表 Ⅲ－25〉	日本の 査察事件 處理實績	137
〈表 Ⅲ－26〉	日本の 間接稅 犯則事件 處分 現況	138
〈表 Ⅲ－27〉	日本の Tax Answer 利用 코드 上位 20(1994年)	141
〈表 Ⅲ－28〉	日本の 全國 稅理士會 會員數 推移	146
〈表 Ⅳ－ 1〉	韓國과 日本の 所得稅 比重	148
〈表 Ⅳ－ 2〉	綠色申告制 導入 當時 및 最近 5個年間 綠色申告人員 推移	150
〈表 Ⅳ－ 3〉	綜合所得稅 種類別 調查決定 推移	151

圖 目 次

[圖 II - 1] 國稅廳 發足當時의 機構(1966年 3月 3日)	25
[圖 II - 2] 現在의 國稅廳 機構(1995年 4月 12日)	26
[圖 II - 3] 國稅審査請求法에 의한 不服請求 節次圖	72
[圖 II - 4] 現行 不服請求 節次圖	74
[圖 III - 1] 日本 1995年 稅務行政機構圖	89
[圖 III - 2] 地價稅의 構造	111
[圖 III - 3] 消費稅의 흐름	116

I. 序 論

1966년 3월 3일 國稅廳이 開廳된 이래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그 동안 國稅廳은 매년 늘어나는 방대한 규모의 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技術開發, 戰略產業에 대한 投資促進 國家, 競爭力 提高 등을 위한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국세행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公平負擔의 實現, 自律的 申告納稅 爲主의 稅政, 納稅者에 대한 서비스의 強化, 科學的인 稅源管理 및 稅務公職 風土의 刷新 등을 통하여 현대 민주국가로서의 합리적인 국세행정 기반을 확고히 다져온 면이 있다¹⁾.

國稅廳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필요한 財政需要를 충족하는 데 매우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의 급격한 팽창, 납세인원의 대폭적인 증가, 稅法의 複雜化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諸外國에 비하여 낮은 징세비로 세무행정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自進申告 納稅水準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가지고 세무행정을 평가하면 우리 국세행정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앞으로 改革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민의 自發的 遵守(順應) 水準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세무행정 외에 稅法이 과세공평을 기하고 稅法과 납세절차를 簡素化하여 납세자가 自律的으로 세법을 지키는 데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1)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本 報告書에서는 제도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日本의 國稅行政과 우리나라의 行政을 相互 比較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國稅行政 30년을 평가하고자 한다. 국세행정은 다양한 부분을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양국 행정을 비교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대한 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있어서 兩國의 租稅體系, 신고납부제도와 세무조사, 세무행정기구, 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兩國 行政을 比較하여 우리나라의 國稅行政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國稅廳 發足の 背景

19세기 말 近代化 過程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日本에 의해 근대 조세제도가 도입되었다. 日本의 통치하에서 重要稅目이 창설된 경위를 보면, 法人所得稅는 1916년 8월부터 日本이 그들의 所得稅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施行함으로써 신설되었다. 1927년에는 그 이전에 市稅(府稅) 또는 면부과금으로써 부과되던 營業稅를 國稅로 전환하였다. 한편, 所得稅는 1934년에 一般所得稅로 창설되었으며 第1種 所得稅, 第2種 所得稅 및 第3種 所得稅의 3種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

1948년 정부수립 후 美軍政으로부터 獨自의인 財政政策을 떠나가기 위하여 1949년에서 1950년에 걸쳐 각종 세법을 정비하였으나 이를 집행할 稅務行政이 뒤따르지 못하여 새로운 세법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6·25의 발발로 稅制와 稅務行政은 전신체제로 전환되어 세무행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 휴전 후에는 재정이 美國의 援助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조세행정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日帝時代에 형성된 왜곡된 納稅意識

2) 財務部, 『韓國稅制史』(上卷), 1979, pp. 47~76.

이 그대로 이어져 납세자나 기업은 脫稅를 부도덕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한 방편으로 보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³⁾.

5·16 후 정부주도로 의욕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막대한 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稅收增大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내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財務部 傘下에 國稅廳을 신설하게 되었다.

2. 國稅廳과 稅務行政의 基本方向

國稅廳 발족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제도와 행정을 財務部 司稅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司稅局 傘下에 稅務行政機關으로 司稅廳과 稅務署를 두고 있었다. 國稅廳 發足으로 財務部 司稅局은 稅制局으로 개편하여 租稅制度의 立案과 이에 관련한 調查業務를 담당하도록 하고 稅務行政業務는 國稅廳과 그 산하의 4個 地方國稅廳 그리고 77個의 稅務署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國稅廳이 발족된 지 올해로 30년이 지났다. 그 동안 國稅廳은 경제의 高度成長에 따른 稅收增加와 新稅制 導入 등의 여건의 변화와 함께 關聯組織을 新設 또는 擴大 改編하였다.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稅源의 規模가 확대되고 國稅廳은 그 본연의 임무인 세금의 賦課·徵收 이외에 不動產 投機抑制, 物價의 團束 및 호화성 사치풍조의 억제 등 經濟成長에 따른 社會病理 現狀에 대한 치유 기능도 일부 담당하게 됨으로써 國稅行政에 대한 需要는 날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國稅廳 機構의 擴大와 더불어 정원도 점차 증가하여 국세청 발족 당시 세무관서의 정원이 5,500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총 1만

3) 李愚澤, 「租稅行政의 回顧와 政策課題」, 『光復 後 50年間의 租稅 및 金融政策의 發展과 政策方向』(第1卷: 租稅政策), 韓國租稅研究院, 1995. 12, p. 31.

7,491명으로 설립 당시보다 약 3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稅收은 1966년 700억원에서 1995년 실적으로 49조억원으로 증가하여 명목적으로 무려 700배, 納稅者數는 현재 607만명으로 발족 당시에 비하여 4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稅收와 納稅者의 增加로 늘어난 國稅廳의 업무량에 비하여 人力의 증가폭은 적기 때문에 人力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9%라는 奇蹟的 經濟成長을 하는 데 필요한 財政需要를 稅收增大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는 점에서 國稅廳은 세계적으로 가장 效率的(efficient)인 徵稅機關이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國稅廳의 徵收能力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무행정의 다른 측면, 즉 일정기간 동안에 自進申告納付를 어느 정도 증가시켰느냐는 稅務行政의 效果性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稅務行政이 效率的이라는 의미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며 세무행정이 효과적인가의 여부는 일정기간중에 납세자 스스로 자기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계산하여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自進申告納付가 어느 정도 신장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정의는, 전통적인 재정학상에서는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화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각자가 소속하고 있는 社會의 費用을 국민 각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통설적으로 定義되고 있다. 稅務行政의 窮極的 目標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申告하고 納付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納稅者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가 알기 쉬운 稅法을 제정하고 집중적인 納稅者 敎育과 弘報를 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으로 공정한 자기 몫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無賃乘車하는 反社會的이고 몰염치한 탈세법에 대하여는 엄중한 稅務調査를 통하여 응분의 처벌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량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국민 개개인에게 租稅制度

와 行政이 公正하다는 信賴가 확산되어야 한다.

3. 國稅行政 30年の 評價

本 報告書는 國稅行政의 30年을 객觀적인 立場에서 評價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國稅廳 30年史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國稅行政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照明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比較·평가의 기준으로 日本 國稅行政을 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稅制와 稅政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日本이며, 지금도 實物 經濟 分野 못지않게 稅制를 포함한 제반 경제행정에서 日本의 先例와 經驗이 우리에게 많은 示唆點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日本 國稅行政과 모든 분야에서 比較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本 보고서에서는 첫째, 韓國과 日本의 租稅體系 둘째, 申告納付制度의 定着 셋째, 稅務調査 넷째, 稅務行政機構, 끝으로 稅務情報의 公開 등 5개 항목에 관하여 양국의 국세행정을 比較하여 우리 국세행정 30年을 평가하고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 우리 國稅行政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 報告書의 構成은 序論에 이어 第Ⅱ章에서 韓國의 國稅行政 30年の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第Ⅲ章에서는 日本의 國稅行政에 대해 설명하였다. 第Ⅳ章에서는 중요한 分野에 대한 兩國 國稅行政의 比較·分析을 통하여 우리 國稅行政 30年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찾도록 하였다.

II. 우리나라의 國稅行政

1. 序論

가. 우리나라의 歲入構造와 租稅收入

1) 一般財政에 있어서의 租稅收入

우리 경제는 5·16 군사혁명 후 1962년부터 7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정부 주도적,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재정은 일반행정, 치안, 국방 등 그 본래의 기능 외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擴充과 중요전략산업에의 투자 지원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재정이 추구하였던 戰略을 시기별로 개관하여 보면, 경제개발계획의 초기 단계였던 1960년대에는 성장기반에 대한 投融資 支援과 自立經濟의 追求 및 豫算制度 整備에 중점을 두었으며 1970년대에는 성장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경기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가) 租稅收入의 推移

豫算의 세입재원은 대부분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수입으로 총당되는데 租稅收入은 국민의 소득수준과 직결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적인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租稅收入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國民

所得 水準이 증가함에 따라 租稅收入, 특히 國稅規模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一般財政收入 중 內國稅가 차지하는 比重의 推移를 보면, 1965년에 39.9%에서 國稅廳 발족과 더불어 1966년에는 45.5%를 차지하면서 增加趨勢가 계속되어 재정자립이 달성된 1974년에는 64.6%으로 그 비중이 증대되었다.

1975년에는 계속 팽창되던 국방비 수요에 따라 防衛稅가 신설되고, 1982년에는 福祉國家를 향한 교육재정의 막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教育稅가 신설되어 1985년에는 세입예산 중 防衛稅가 13.1%, 教育稅가 2.5%를 점유하였다.

그리하여 歲入豫算 中 內國稅의 比重은 防衛稅가 신설된 1975년부터 상대적으로 낮아져 1980년에는 55%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內國稅의 대폭적인 增加에 따라 1993년에는 81.4%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내국세와 방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 國稅廳 소관분은 1970년 이래 매년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1980년까지는 전체 세입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도 점유비가 계속 증가하여 1994년에는 세입예산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

나) 內國稅 徵收規模 推移

內國稅 徵收規模를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발족 1년 전인 1965년에 421억원이었던 것이 국세청 개청과 더불어 700억원을 돌파하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75년에는 1조 123억원으로 15배가 늘어났으며, 1985년에는 7조 4,969억원에 달하였고 1987년도에는 1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1996년에는 49조원을 초과하여 무려 700배가 증가하였다.

한편, 內國稅와 防衛稅, 教育稅 등을 포함한 국세청 소관분으로 보면 훨씬 증가폭이 커 1966년의 700억원에 비하여 1996년은 64조 9,602억원으로 928배에 달하였다.

이러한 稅收增大의 要因으로는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物價上昇을 들 수 있으나, 이외에도 稅制의 합리적 改編과 國民의 納稅道義 昂揚 그리고 租稅行政 각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발전 등을 들 수 있다(〈表 II-1〉 참조).

〈表 II-1〉 年度別·稅目別 租稅徵收

(單位: 億원, %)

	196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總計	700	100.0	269,854	320,853	363,747	436,905	517,487	649,602	100
內國稅	700	100.0	240,892	300,801	341,746	384,490	443,820	492,023	75.7
直接稅	338	48.3	116,273	145,733	164,135	196,452	234,273	253,198	39.0
所得稅	203	29.0	64,594	80,084	94,625	112,078	136,182	147,669	22.7
申告分	-	-	26,183	27,583	36,051	41,189	46,766	49,550	7.6
源泉分	-	-	38,411	52,501	58,577	70,889	89,416	98,119	15.1
法人稅	109	15.5	45,855	59,411	58,623	73,876	86,626	93,561	14.4
土地超過利得稅	-	-	1,902	1,218	3,226	561	280	136	-
相續稅	-	-	3,262	4,333	6,672	9,074	10,294	9,665	1.5
相續贈與	1	0.1	1,044	1,750	3,463	5,236	6,056	5,658	0.9
資產再評價稅	3	0.5	2,218	2,582	3,208	3,839	4,237	4,007	0.6
不當利得稅	-	-	659	689	985	864	891	2,167	0.3
間接稅	337	48.1	120,852	150,002	173,686	181,921	201,242	229,432	35.3
附加價值稅	-	-	82,526	100,763	116,875	130,580	146,369	167,895	25.9
特別消費稅	-	-	22,465	30,686	36,069	24,456	26,171	31,193	4.8
酒稅	63	9.1	11,453	13,290	13,676	15,458	18,245	20,838	3.2
電話稅	-	-	3,114	3,604	3,997	4,587	5,431	6,610	1.0
證券去來稅	0	0.0	1,293	1,658	3,069	6,840	5,026	2,896	0.4
印紙稅	15	2.2	2,242	2,150	2,426	2,753	3,198	3,560	0.5
過年度收入	10	1.5	1,525	2,915	1,498	3,364	5,107	5,833	0.9
交通稅	-	-	-	-	-	24,572	33,718	143	-
防衛稅	-	-	13,641	1,830	1,213	752	620	41,242	6.4
教育稅	-	-	15,321	18,223	20,789	25,396	29,931	14,860	2.3
農魚村特別稅	-	-	-	-	-	1,695	9,399	-	-

註: 1966년도는 내국세를 100%로 한 구성비임.

資料: 재무부, 『한국세제사』(상권), 1979, p. 37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6.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7. 4.

2) 國稅의 直·間稅比率

直接稅와 間接稅의 비율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조세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租稅負擔의 公平問題와 社會福祉政策과 관련하여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一般的으로 直接稅는 所得再分配機能이나 景氣調節機能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間接稅는 그 徵收의 便宜성과 稅收確保의 長點이 있지만 逆進性으로 인하여 稅負擔의 公平과 所得再分配에 劣影響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에서는 다른 목표에 우선하여 경제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租稅構造를 갖게 되며, 또한 납세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징수비가 적게 들고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조세마찰이나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間接稅에 置重하는 경향이 있다.

1962년 第1次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함에 따라 해마다 증대하는 財政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國民所得이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징수편의에 따라 直接稅보다는 間接稅에 비중을 두고 1962년에 消費稅 系統의 稅率을 引上한 결과, 直·間稅 比率이 1961년에 51% 대 49%에서 1962년에는 37% 대 63%로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經濟成長과 더불어 所得稅 및 法人稅의 伸張率이 다른 稅目보다 높아져 1963년부터는 直接稅 比重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6년에는 國稅廳 발족을 계기로 脫稅防止, 課稅標準 現實化 및 陰性稅源 發掘 등 稅負擔의 公平을 위한 稅務行政의 강화 결과, 直接稅가 前年對比 78%나 증가한 데 힘입어 세계개혁 없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直接稅의 比重이 間接稅보다 높게 되었다.

그러나 附加價値稅制가 도입된 1977년부터는 間接稅의 세수가 증가된 반면 重化學工業의 육성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控除制度 新設 및 減免規模의 擴大로 直接稅의 稅收增大가 둔화되어 間接稅 比重이 60%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直接稅 比重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直接稅 比重이 4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增加趨勢는 19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直·間稅 比重을 보면 1994년에는 直接稅 比重이 間接稅 比重을 초과하게 되어 直接稅 51.6%, 間接稅 48.4%를 나타냈는바, 이는 1991~1995년 기간중에 직접세는 年平均 21.6%가 증가하였으나 간접세는 17.5%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990年代에 直接稅의 比重이 증가된 원인은 1989년 12월에 改正되어 1991년부터 과세된 土地超過利得稅의 稅收가 1993년부터 크게 늘어나 直接稅에 포함되었고, 반면 그 동안 特別消費稅로 과세된 경유·휘발유의 세수가 1993년에 신설된 交通稅로 흡수되어 間接稅를 그만큼 낮추었기 때문이다. 1996년도 直·間稅 比率는 각각 52.1%, 47.9%을 나타냈다(〈表 II-2〉 참조).

〈表 II-2〉 直·間稅 比率

(單位: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內國稅	직접세	49.5	40.1	32.9	36.6	44.1	53.4	52.1
	간접세	50.5	59.9	67.1	63.4	55.9	46.6	47.9
國稅	직접세	38.5	33.9	28.7	31.8	43.7	46.8	44.4
	간접세	61.5	66.1	71.3	68.2	56.3	53.2	55.6
租稅	직접세	43.5	39.5	36.9	39.3	49.5	54.7	52.9
	간접세	56.5	60.5	63.1	60.7	50.5	45.3	47.1

資料: 財政經濟院, 『租稅概要』, 1997. 4.

3) 租稅負擔率

국세청 발족 이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년도인 1962년의 租稅負擔率은 10.6%에 불과하였으나 1967년 조세부담률은 11.9%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이후 政府主導에 의한 經濟成長政策이 지속됨에 따라 세입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1980년 17.7%, 1990년에 18.6%로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1994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를 上廻하게 되었으며 1996년 실적에 의한 조세부담률은 21.1%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제국의 조세부담률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현재 주요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스웨덴 51.6%, 프랑스 45.8%, 이탈리아 43.5%, 독일 42.9%, 영국이 35.8%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비교적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로는 일본 29.5%(1997년 전망치)와 미국 28.4%(1993년)를 들 수 있다.

〈表 II - 3〉 租稅負擔率 推移

(單位: %)

	1970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租稅負擔率	14.6	17.7	18.6	17.9	18.7	18.9	19.8	20.5	21.1
內國稅負擔率	10.4	9.9	10.7	11.2	12.6	12.9	12.6	16.1	16.7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財政經濟院, 『財政金融統計』, 1996. 7~8.

나. 國稅廳 組織의 概要

國稅廳은 財務部 산하에 內國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1966년 3월 3일에 설치되었다. 國稅廳 발족 이전에는 財務部の 司稅局이 국세에 관한 제도와 행정을 관장하였고 그 산하에 4개의 司稅廳과 그 하부조직으로서 稅務署가 있었다.

5·16 이후 政府가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해 조세징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6년 政府組織法을 개정하여 國稅廳 職制가 공포되고 동년 3월 3일 國稅廳이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세

무행정과 조세제도를 담당해 오던 財務部 司稅局은 租稅制度의 立案 및 稅制에 관한 調査만을 담당하는 稅制局으로 개편되었다.

國稅廳의 發足은 內國稅 行政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國稅行政組織은 강력한 세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國稅廳 발족 당시의 기구를 보면 [圖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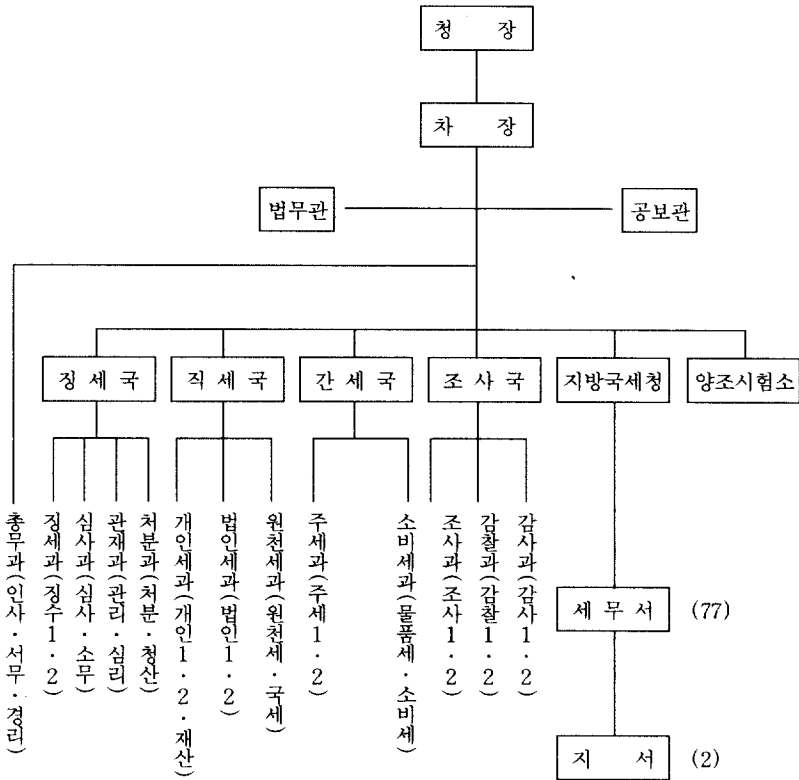
國稅廳의 조직은 1966년 발족 이후 稅源規模와 稅制의 변화에 따라 여러 번의 개편을 거쳤는데 먼저 稅制側面에서 보면 1968년 부분적인 綜合所得稅와 不動產投機抑制에 關한 特例措置法, 1974년에 國民福祉年金法, 1975년에 綜合所得稅, 1977년에 附加價値稅, 1990년에 土地超過利得稅 등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國稅廳은 그 相關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稅源規模의 확대에 따라 1967년에 中部地方國稅廳, 1968년에는 大邱地方國稅廳, 1993년에 京仁地方國稅廳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소단위 세무서체제로의 이행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稅務署를 분리·신설하였다.

한편, 國稅廳 釀造試驗所를 國稅廳 技術研究所로 개편하였으며, 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稅務敎育院도 설립하여 1966년 國稅廳 발족 당시 4局 13課 2擔當官·4個 地方國稅廳·77個 稅務署·2個 支署이던 조직이 6局 3擔當官 30課(11個 4級擔當 포함)·7개 地方廳 134個 稅務署·8個 支署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圖 II-1], [圖 II-2] 참조).

이와 같이 稅務行政組織은 國稅廳 발족 이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편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改編方向은 稅政의 기본을 稅源管理와 納稅奉仕라고 할 때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세원밀집 지역에 地方國稅廳 및 稅務署 신설을 계속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소단위 세무서 및 지서 신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점증하는 稅政民主化와 公平·根據課稅의 필요성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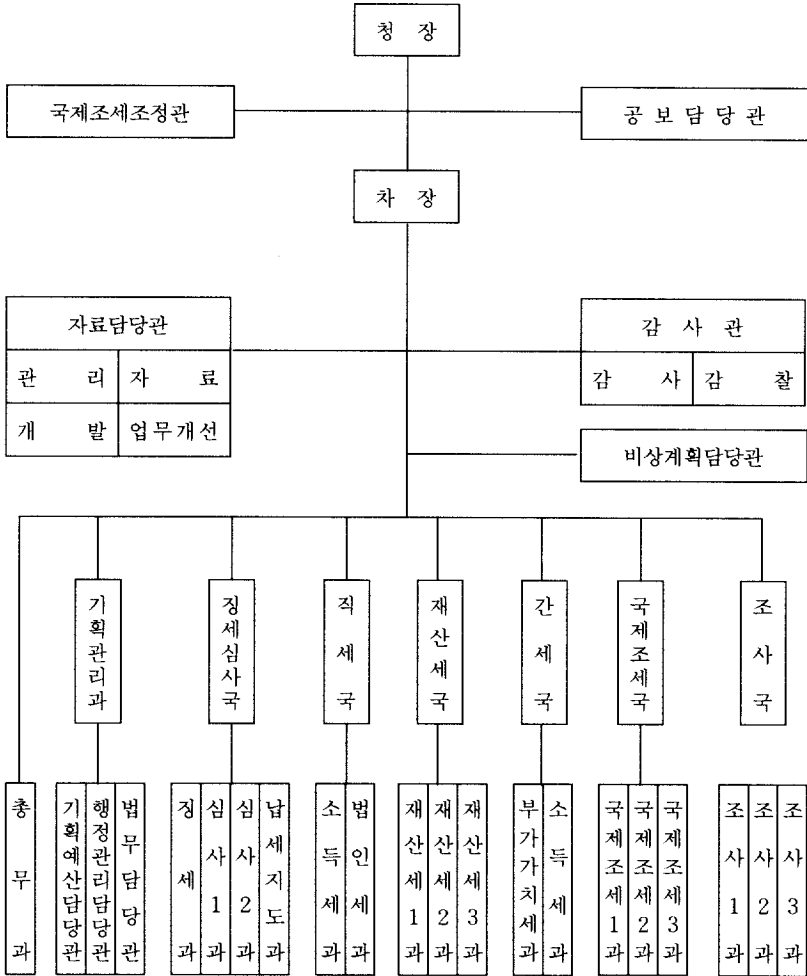
비하여 과학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한 전산분야의 확대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고·조사·납세봉사 등의 설치방안도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신중히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⁴⁾.

[圖 II - 1] 國稅廳 發足當時의 機構(1966年 3月 3日)



4)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 916.

[圖 II -2] 現在の 國稅廳 機構 (1995年 4月 12日)



다. 國稅廳의 定員

國稅廳 발족 당시에 세무관서 총 정원 은 5,500명이었다. 그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세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國稅廳 본연의 기능인 세금의 부과·징수기능 이외에 부동산투기 억제, 물가의 단속, 호화사치풍조의

역제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치유기능의 일부도 담당하는 등 國稅行政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組織 및 機構의 확대와 더불어 정원도 점차 증가하여 1973년에 1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발족 후 30년이 지난 현재는 1만 7,491명으로 國稅廳 설립 당시에 비하여 1만 1,991명이 증가하였다(〈表 II-4〉 참조).

〈表 II-4〉 國稅廳 發足 當時(1966. 3. 3)의 定員 現況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고용직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계	5,500	6	1	4	4	74	238	1,184	1,282	1,021	1,266	316	104
본 청	208	6	1	4	-	14	29	63	59	6	4	-	22
지 방 청	376	-	-	4	4	8	28	138	126	6	7	47	12
세 무 서	4,906	-	-	-	-	51	181	982	1,093	1,008	1,252	269	70
양조시험소	10	-	-	-	-	1	-	1	4	1	3	-	-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國稅廳 정원과 업무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인 納稅者數와 내국세의 徵收實績 등을 살펴보면 1966년 납세자수는 254만 8천명이었는데 여기에는 등록세 납세자 105만 4천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149만 4천명이었으나 1995년 현재 납세자수는 607만명으로 國稅廳 발족 당시의 4배에 이르고 있으며 稅收는 700배(GNP 327배)에 달하고 있으나 稅務公務員數 증가는 3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원관리 측면에서도 업무량에 비해 직원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점차 國稅廳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增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다만 작은 政府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해마다 縮小 내지는 凍結하려는 原則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은 增員이 불가피하지만 내부적으로도 人力의 再配置, 電

算化를 통한 업무개선 등을 통해 業務量 減縮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表 II-5〉 참조).

〈表 II-5〉 國稅廳 定員의 推移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5
세무공무원(명)	5,500	9,795	11,573	14,299	14,869	16,945	17,491
납세자수(천명)	2,548	3,485	4,719	2,648	3,469	4,736	6,070
G N P(억원)	10,370	33,751	138,811	457,750	905,990	2,142,400	3,489,793
내국세(억원)	700	3,555	13,705	45,958	84,640	240,892	443,820

註 : 1. 1966~1976년의 납세자수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1996 : 105만 4천명, 1971 : 165만 5천명, 1976 : 215만 6천명)가 포함되어 있음.

資料 :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마. 現行 租稅體系

조세	국세 (17個)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법
				상속세·증여세		상속세법
				재평가세		자산재평가법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법
		간접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주세	주세법	
				전화세	전화세법	
			유통세	인지세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조세	지방세 (15個)	도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득세			

2. 主要稅目の 申告納付와 調査

가. 所得稅의 申告納付와 調査

1) 所得稅의 申告納付

所得稅의 納稅義務 確定方式에는 自進申告納付制度和 政府賦課課稅制度가 있으나 所得稅制의 理想은 納稅者 스스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산출하여 自進申告納付함으로써 納稅義務를 確定하는 自進申告納付制度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그 동안 國稅廳의 所得稅 行政은 점진적으로 자율적인 申告·納付를 확대하고 조사를 축소함으로써 申告納付를 중심으로 하는 稅政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1969년에는 國稅廳 발족 이후 실시해 온 綠色申告制를 法制化하여 自進申告納付 體系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였고

1974년 말에는 綜合所得稅制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4월 말, 1979년부터는 5월 말까지 申告期限을 延長함으로써 신고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다. 1995년에는 所得稅 自進申告納付制度가 導入되었으며 이에 따라 所得稅의 行政方向도 이와 같은 所得稅申告納稅制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래의 申告指導 爲主로 짜여 있던 所得稅 事務處理規程을 전면 개편하는 등 소득세 행정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있다.

가) 記帳者에 대한 申告指導

(1) 綠色申告制度의 實施

1966년 3월 國稅廳 開廳과 더불어 記帳에 의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한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綠色申告制度를 實施하였다.

綠色申告制度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지양하고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促求하였다. 녹색신고자의 資格要件은 直前期와 直前前期에 계속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받은 者에 한정하였고, 이들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조사로써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과세자료의 對查猶豫 및 申告時에 附屬書類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실지조사가 생략되는 것을 기회로 동 제도를 조세기피의 사례로 惡用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성실신고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1968년 3월에는 「綠色申告業體에 대한 循環調査要綱」을 마련하여 1968년 6월부터 2년마다 1회의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綠色申告制度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녹색신고자의 자격요건이 單純하여 어느 정도 記帳能力만 있으면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성실기장자가 녹색신고자가 되는 등 問題點이 露出

되어 1969년 7월에는 資格要件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녹색신고제도를 일반신고자에 비하여 특별상가의 容認 및 세액의 분납 등 각종 特典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동 제도를 法制化하였다.

그러나 綠色申告制度가 法制化된 후에도 綠色申告者 중 不誠實納稅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申告所得率이 60% 이하인 者 및 前期 決定所得率이 80% 이하인 者 등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을 事後管理하였다. 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1972년에 「綠色申告審議會」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이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1975년부터는 녹색신고자의 자격요건 중 당초 결정과 경정결정금액과의 차액이 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廢止하여 그 요건을 緩和하였고 또한 循環調查制度를 폐지하는 등 녹색신고자의 확대와 더불어 자진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오다가 1990년 12월에는 이 같은 방침을 선회하여 綠色申告者 承認要件을 強化하였고 이에 따라 녹색신고자가 축소되는 등 제도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表 II-6>에서 보는 것처럼 적용 받는 사업자수가 極少數에 불과해 본래의 취지가 退色하게 되어 1995년에 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면서 녹색신고제도는 폐지되었다.

<表 II-6> 綠色申告制 導入 當時 및 最近의 綠色申告人員 推移

(單位: 名, %)

	1966	1990	1991	1992	1993	1994
신고인원	109	211	153	5	30	8
기장인원에 대한 비율	-	0.1	0.08	-	-	-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그러나 그 동안 녹색신고제도는 소득세의 自律申告 納付稅政 풍토조성에 先導的인 役割을 담당하였으며 이 制度의 導入을 계기로 소득세가

자진신고납부 稅政으로 轉換하는 등 소득세 행정의 발전에 크게 寄與하였다⁵⁾.

(2) 誠實記帳者의 擴大

國稅廳 개청 당시인 1966년의 경우 기장내용이 일반적으로 극히 불성실하였다. 그래서 기장신고자 5,163명 중 실지조사를 받은 자는 590명으로 11.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기장내용의 虛僞·不實 등으로 그 내용을 인정받는 자가 極少數였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정여건하에서 효율적인 申告指導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誠實한 記帳을 誘導하는 것이 당면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66년에는 「誠實한 記帳申告」에 역점을 두어 업종별 기장세미나의 개최, 매스컴 등을 통한 성실한 기장의 촉구 등 성실신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하였다.

성실기장자의 확대를 위하여 國稅廳이 제정한 要綱 또는 規程을 보면 1969년에 「記帳指導 및 實地調査 要綱」, 1972년에 「記帳指導 및 實地調査 運營規程」을 제정·시행하였고, 1983년에는 간이장부의무자와 일기장의무자의 기장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장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사업자의 기장관행 및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기장자 확대시책의 積極的인 推進으로 기장신고자는 양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불성실기장신고자도 함께 증가하는 등 質的인 面에서는 未洽한 면이 많았다. 1990년에는 기장인원 확대를 위한 각종 申告指導業務를 廢止하고 납세자들이 自律的으로 申告納付하도록 분위기를 誘導하였으며, 不實記帳申告 防止를 위하여 사후에 성실 기장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등 불성실기장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였다.

5)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 310.

(3) 書面申告制度의 運用

1976년에는 書面申告決定對象者의 擴大를 통한 신고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書面申告基準을 제정하여 기장자는 이 기준에 의해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연간 사업소득이 1,500만원 이상인 記帳申告者에 대해서는 稅務士, 公認會計士가 작성한 調整計算書를 첨부하여 書面申告基準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동년 5월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調整計算書 業務取扱規程」을 제정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기장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이를 모두 실지조사결정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실지조사가 不實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申告基準에 의한 신고자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에 이 기준을 지역별로 差等化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는 申告所得金額이 所得標準率에 의한 소득금액의 75% 이상 그리고 기타 지역은 70% 이상 신고하게 하였다.

1982년 이후 書面申告率을 높이기 위하여 基準을 合理的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書面申告基準을 대폭 緩和하여 서면신고인원의 확대를 기하였다. 연도별 서면신고 결정인원을 보면 1976년에 과세자의 0.1%이던 것이 1995년에는 과세자의 25%에 달하게 되었다(〈表 II-7〉 참조).

〈表 II-7〉 書面申告 決定人員 推移

(單位: 千名, %)

	1976	1980	1985	1990	1995
과세자(A)	401	539	620	637	1,266
서면신고 결정인원(B)	0.3	2.1	94.7	235	320
B/A	0.1	0.4	15.3	36.9	25.3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나) 無記帳者에 대한 申告指導

1967년에는 無記帳者의 誠實申告 및 記帳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기본시설사항은 물론 신고상황 및 조사결정내용을 記錄·管理하게 하는 녹색카드제를 실시하였다. 동 제도를 실시한 趣旨는 과세내용을 공개하고 납세자별 신고내용과 조사결정내용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나 납세자의 협조 부족 등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無記帳 零細納稅者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는 매년 소득세확정신고 전에 標準所得率을 공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표준소득률은 사실상 무기장 영세납세자의 申告基準으로 활용되었으며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도 事實上의 申告基準으로 활용되었다. 세정당국은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標準所得率에 의한 신고지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推計課稅를 축소하고 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하여 記帳指導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1975년부터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國稅廳長이 정한 일정을 이상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대로 결정되는 自動賦課率制度를 導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세마찰의 사전해소, 행정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適用基準이 嚴格하여 혜택받는 사업자의 수가 極少數에 불과하고, 제도운용의 實效가 미미하여 1992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세원의 파악과 세수의 적기확보가 곤란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자율적 납세풍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納稅組合制度를 도입·시행하였다. 年度別 納稅組合數 및 所得稅納付 推移를 보면 <表 II-8>과 같다.

〈表 II-8〉 年度別 納稅組合數 및 所得稅 納付 推移

(單位: 個, 百萬圓)

	1977	1980	1985	1990	1994
納稅組合數	27	117	133	138	146
申告納付稅額	2,807	6,134	18,540	21,762	34,300
交 付 金	138	333	844	1,110	1,681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다) 申告狀況 推移

所得稅 申告狀況을 1975년 종합소득세 導入 前後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國稅廳 開廳時부터 二元的 綜合所得稅制의 마지막 연도인 1975년까지 신고사항 추이는 〈表 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에는 사업소득신고대상자가 43만 9천명으로서 이 가운데 신고자는 18만 1천명으로 申告比率이 41.3%에 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低調하였다. 그후 稅政當局이 지속적인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부분적인 종합과세 제도가 실시되었던 1969년에는 신고비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실시 전인 1975년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비율이 59.2%까지 증가하는 등 納稅誠實度가 차츰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II-9〉 事業所得稅 申告人員 推移

(單位: 千名, %)

	對象人員	申告人員	申告比率
1966	439	181	41.3
1969	481	243	50.5
1973	528	312	59.6
1975	680	402	59.2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1975년 綜合所得稅制의 全面的 實施 이후의 申告狀況 推移를 보면 <表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에 신고인원이 62만 8천명으로서 신고대상자의 69.5%만이 신고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신고대상자의 99% 내외가 신고함으로써 신고인원의 확대 면에서는 거의 定着段階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1984년에 37.1%였던 신고대상인원 중 과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課稅比率 水準이 1994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表 II-10> 綜合所得稅 申告狀況 推移

(單位: 名, 百萬元, %)

	1976	1980	1984	1986	1990	1994	
신고대상인원	903,226	1,372,064	1,688,802	1,788,651	2,171,912	3,165,119	
과세인원(A)	903,226	1,372,064	625,723	648,849	652,876	1,155,000	
신고인원(B)	628,042	1,359,285	622,262	644,312	636,633	1,138,204	
신고비율(B/A)	69.5	99.1	99.4	99.3	97.5	98.5	
신고소득	541,180	1,929,495	2,911,221	3,869,794	5,281,413	15,821,522	
결정세액	41,902	125,163	335,761	510,812	915,930	2,670,018	
증감비 (1976년 대비)	인원	100	151.9	186.9	198.0	240.4	350.5
	소득	100	356.5	538.1	715.1	976.1	2,294.4
	세액	100	304.8	817.0	1,243.9	2,231.7	6,512.2

註: 1. 1976, 1980년도의 申告人員 課稅人員에는 課稅未達者 포함.

2. 1976, 1980년도의 決定稅額은 自納稅額임.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2) 所得稅의 調査

가) 概觀

所得稅는 1949년 所得稅法 制定 이후 1995년 申告納付制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政府가 調査·決定하는 이른바 政府賦課課稅制度를 채택·시행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조사결정에 관한 제도 및 행정의 중요 변천과정을 국세청 개청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9년에 「賦課基準準則」을 制定, 제조업종의 평균소득을 및 생산비를 책정하여 과세기준으로 활용하였고 1963년에는 「事業所得 및 不動產所得 實地調査要領」을 제정하여 記帳內容이 다소 未洽하더라도 실질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조사결정하는 등 記帳者 擴大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64년과 1965년의 記帳申告者가 전납세자의 1%, 실질조사결정자는 0.1%에 불과해 推計決定 中心의 과세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國稅廳 開廳 이후에는 신고서류에 의한 書面調査決定制度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稅務干涉을 縮小하는 등 자율적인 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주력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所得標準率 등 推計決定基準을 客觀化·合理化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연도별로 새로운 要綱·規程의 시행이나 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66년 綠色申告運用要綱 및 同 施行規則 制定 運營
- 1968년 公正事務處理規程 制定 施行
- 1969년 同 要綱의 法制化
- 1975년 綠色申告者에 대한 書面調査決定方法을 誠實申告者에게 擴大
- 1980년 質的差等管理制度 實施(書面調査決定의 擴大와 不誠實 對納稅者 精密調査)

簡易調査 制度 實施(調査業務의 能率 向上과 納稅者 便宜 圖謀, 1984년 廢止)

- 1984년 循環調査制 實施(實地調査의 猶豫와 2個 年度分 同時調査)
- 1985년 調査의 差等化(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응징 강화 不況業種에 대한 경미한 조사 등의 指導調査體系 確立)
- 1988년 差等調査의 發展的 運用, 稅務署長에게 調査對象 選定の 裁量權 附與
- 1991년 選別調査體制로의 轉換, 調査猶豫者 差等管理方案의 實施
- 1994년 調査猶豫制度 廢止, 不誠實申告者에 대한 調査強化

이와 같이 그 동안 所得稅 調査行政은 납세자의 自律的인 申告納付體系 확립을 위하여 가급적 實地調査對象者의 범위를 縮小하고 대신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脫漏心理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1994년에는 전체 소득세 조사결정인원 중 1%만이 實地調査 決定對象이었으며 나머지 납세자는 신고대로 결정하였다.

나) 決定類型의 變遷

國稅廳 開廳 前까지는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實地調査 決定方法과 推計調査 決定方法으로 결정하였으나 1966년에 녹색신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書面調査 決定方法이 추가되었고 1975년에는 서면조사 결정 방법을 보완하는 課稅標準 確定申告決定制度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所得稅 決定方法은 申告決定과 調査決定으로 크게 분류되고 다시 政府 調査決定은 實地調査決定, 推計調査決定 및 書面調査決定의 3가지 類型으로 구분된다.

(1) 確定申告 決定

確定申告決定制度는 1975년에 시행한 제도로서 零細事業者(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즉 사업소득자 1,500만원, 부동산 400만원 이하인 자)가 國稅廳長이 정한 基準率(自動賦課率) 이상 신고한 때에는 記帳有無에 관계없이 신고대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政府賦課課稅制度下에서 조사업무량을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1979년도에는 零細事業者가 아니더라도 신고대로 결정받을 수 있는 確定申告決定基準制度가 도입되어 自動賦課率制度和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그후 自動賦課率制度의 경우 적용대상기준이 낮아 實效性이 거의 없고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의 경우도 書面決定制度和 중복·경합되는 등 이들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3년에는 자동부과율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確定申告決定基準制度로 개편하는 반면 종래에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확정신고결정기준율제도를 書面調査決定制度로 흡수하여 課稅標準 確定申告決定制度로 一元化하였다.

(2) 實地調査 決定

196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推計決定對象者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자를 장부에 의한 實地調査 決定對象으로 유도하고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租稅負擔의 公平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6년 國稅廳 開廳 이후 實地調査決定을 위한 지침·규정 및 조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66년 業種別·地域別로 선정한 고소득자의 事業所得 決定狀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實地調査에 활용
- 1968년 「綠色申告者 循環調査 施行細則」制定, 매 2년마다 實地調査를 實施하여 적출소득이 신고소득금액의 20% 이상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綠色申告者의 자격을 박탈
- 1969년 記帳指導 및 實地調査 運營要綱 制定

- 1975년 公平課稅準則 制定, 複式 및 簡易帳簿義務者 중 일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 1976년 所得稅 實地調查指針 制定
- 1977년 業種別 同時調查制 實施
- 1982년 誠實申告者에 대한 稅務調查 排除
- 1985년 業種別 과거 3년간의 통계활용에 의한 조사의 내실화
- 1988년 差等調查制 補強, 사업규모, 業種, 納稅誠實度 등에 따른 차별화
- 1990년 정밀조사대상자에 대한 金融去來追跡調查, 대상선정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기준으로 전환
- 1991년 選別調查體制로 轉換, 조사유예제의 도입, 지방청 직세국에 소득세 조사전담반 설치

(3) 推計調查 決定

所得金額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帳簿 또는 證憑書類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未備 또는 虛僞인 경우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해 實地調查를 할 수 없을 때에는 原則的으로 標準所得率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推計調查 決定한다.

標準所得率制度(당초 名稱은 소득표준율)는 1954년 처음으로 소득세 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었는데 標準所得率의 연도별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66년 所得率調查 結果를 토대로 6개월마다 制定
- 1967년 양약제조, 기선저인망 등 4개 업종에 輕減率 適用으로 差等率 도입
- 1968년 지역별·업종별 차등률제도 실시, 서울·부산지역 호텔 기본율에 10% 가산, 음식점·서비스업의 택사업자 20% 輕減率 적용
- 1969년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매매업 기본율의 2배
- 1972년 개인 유사법인에 대하여 基本率의 10% 가산
- 1973년 특수소득표준율 제정으로 正常利潤 超過利益 重課

- 1975년 소득표준심의회 설치
- 1976년 성실원천징수의무자와 수출품생산업자 등 輕減率, 위장업자 기본율의 2배 대외비에서 공개, 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부여 및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
- 1979년 차등률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零細業者 등은 낮은 率, 위장업자 등은 높은 率 적용
- 1980년 소득표준을 이원화, 사업규모별 이익 반영 및 기장확대 5개년 계획 지원
- 1984년 수입금액비례 差等率制, 根據課稅의 기반조성
- 1988년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 輕減率
- 1991년 5단계 수입금액 비례율체계를 3단계로 조정, 계속 기장불이행자에 대한 10~20% 加算
- 1993년 3단계 收入金額 누진율체계를 單一率 구조로 개편, 차등률제도 정비(10개 중 6개 폐지)
- 1994년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 업종의 所得率 引下, 대사업자 기장회피 추계신고 방지를 위한 무기장가산을 新設
- 1995년 소득률 차이가 없는 유사종목 統廢合, 업종분류체계의 全面的 改編, 표준소득률은 종래 무기장자의 소득금액 추계기준 및 기장자의 서면신고기준으로 活用되었다. 소득세 신고납세제 전환에 따라 신고 기준역할은 없어서 국세청 개청 이후 標準所得率의 種目數 및 平均所得率 推移는 <表 II-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II-11〉 標準所得率 種目數 및 平均所得率 推移

(單位: 個,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種目數	839	1,036	1,213	873	1,508	1,519	1,638
平均標準所得率	13.36	14.46	12.38	10.14	10.0	10.0	10.4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4) 書面調査 決定

書面調査 決定이라 함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국세청 개청 직후인 1966년 5월에 시행된 綠色申告制度和 함께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즉, 납세자의 誠實申告를 유도하고 세무행정당국의 稅務干涉을 축소함으로써 自律稅政의 基盤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세를 申告納付制로 轉換하기 위한 前段階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國稅廳의 所得稅 行政은 書面調査 決定對象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書面調査 決定對象 範圍 등의 變遷內容은 다음과 같다.

- 1975년 서면조사 결정대상에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 이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調整計算書를 첨부하여 基準率 이상으로 申告한 者를 포함
- 1981년 최근 2년간 실지·서면조사를 받은 자로서 所得標準率 對比 일정률 이상 신고자
- 1984년 최근 3년간 신고 결정상황 電算分析에 의한 성실납세자가 신고기준 이상으로 신고한 자
- 1985년 성실신고기준율을 基本基準과 差等基準으로 구분
- 1986년 서면대상 중점 권장대상 선정, 1985년 신규사업자 最初 記帳 申告者도 대상에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해 실지 추계조사를 받았더라도 소득표준을 대비 100% 이상 신고하면 書面對象으로 분류
- 1987년 문세업종에 대한 기장확인조사 실시, 脫漏稅金의 追徵
- 1988년 不誠實記帳申告 혐의가 짙은 업종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시 보정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개인별 서면신고기준이 실소득률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客觀的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基準率의 10~20% 조정할 수 있는 「개인별 실상반영기준특례」 제도를 실시

- 1990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서면신고소득률을 달리 적용하는 「業種別申告基準率」제도를 도입하여, 同率을 생산성업종, 일반업종, 중점관리업종으로 구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地方廳長이 (±5%) 範圍 內에서 調整하는 裁量權 부여

나. 法人稅의 申告納付와 調査

1) 法人稅의 申告納付

가) 法人數 推移

稼動法人數는 國稅廳이 발족한 1966년에 6,595개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12만 5,413개에 이르고 있다(〈表 II-12〉 참조).

〈表 II-12〉 法人 現況

(單位: 個, %)

		1967	1971	1975	1979	1984	1987	1990	1992	1994
법 인 수	계	6,861	9,182	14,868	23,542	40,678	50,732	76,638	102,136	125,413
	영리	6,750	8,795	13,416	20,530	31,600	41,281	66,545	91,428	113,644
	비영리	31	289	1,311	2,750	8,732	8,931	9,318	9,936	11,050
	외국	80	98	141	262	346	511	775	772	719
증 가 율	전년대비 ¹⁾	4.0	1.4	11.5	13.8	5.0	10.6	17.5	12.8	11.7
	평균	1966~1970 8.3	1971~1975 9.7	1976~1984 11.4	1985~1990 11.2	1991~1994 13.2				

註: 1. 매년말 현재 가동법인수임.
 2.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임.
 1) 각각 직전년 대비 증가율임.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外國法人을 제외한 營利內國法人의 種類別 分布現況을 보면 1967년에는 주식회사가 85.1%, 합자회사가 11.2%, 합명회사가 2.9%, 유한회사가 0.8%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비율이 85.9% 대 14.1%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1994년에는 물적회사가 96.0%로 증가하고 인적회사는 4.0%로 감소하였다(〈表 II-13〉 참조).

〈表 II-13〉 營利法人 種類別 現況

(單位: 個, %)

	계	株式會社		合資會社		合名會社		有限會社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1967	6,750	5,742	85.1	755	11.2	195	2.9	58	0.8
1971	8,795	7,638	86.8	883	10.0	171	2.0	103	1.2
1975	13,416	12,093	90.1	1,027	7.7	158	1.2	138	1.0
1979	20,530	18,518	90.2	1,365	6.6	260	1.3	387	1.9
1984	31,600	28,335	89.7	2,096	6.6	384	1.2	785	2.5
1987	41,281	37,527	90.9	2,230	5.4	371	0.9	1,153	2.8
1990	66,545	61,354	92.2	2,644	4.0	393	0.6	2,154	3.2
1992	91,428	83,623	91.5	3,212	3.5	432	0.5	4,161	4.5
1994	113,644	104,893	92.3	3,807	3.4	738	0.6	4,206	3.7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法人의 資本金 階級別 分布現況을 보면 1977년에는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소자본법인이 전체 稼動法人의 80.2%라는 높은 점유비를 보였으나 그후 1982년에는 61.3%, 1984년에 와서는 46.0%로 해마다 감소되어 오다가 1994년에는 4.6%로 줄어들었다.

〈表 II - 14〉 資本金 階級別 法人分布

(單位 : 個, %)

	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10억원 미만		1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1977	18,698	100.0	14,993	80.2	1,680	9.0	1,626	8.7	359	1.9	40	0.2
1980	26,612	100.0	19,235	72.3	3,140	11.8	3,386	12.8	734	2.7	117	0.4
1982	35,424	100.0	21,725	61.3	6,179	17.4	6,380	18.0	967	2.8	173	0.5
1984	40,678	100.0	18,726	46.0	9,866	24.3	10,435	25.7	1,383	3.4	268	0.6
1986	45,844	100.0	13,436	29.3	14,902	32.5	15,412	33.6	1,738	3.8	356	0.8
1988	56,615	100.0	6,412	11.3	26,709	47.2	20,700	36.6	2,273	4.0	521	0.9
1990	76,638	100.0	5,270	6.9	34,717	45.3	32,156	42.0	3,783	4.9	712	0.9
1992	102,136	100.0	6,514	6.4	41,043	40.2	47,750	46.7	5,884	5.8	945	0.9
1994	125,413	100.0	5,770	4.6	51,478	41.0	59,191	47.2	7,776	6.2	1,198	1.0

資料 :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나) 法人管理制度的 變遷

納稅는 가능한 한 납세자가 課稅當局의 干涉 없이 스스로 申告·納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과세당국은 조세저항 없이 필요한 財政需要를 확보하는 것이 稅務行政의 목적이므로 납세관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변천·발전되어 왔다. 國稅廳이 발족한 1966년에 綠色申告制度의 施行, 1970년부터 誠實申告 法人制度, 1976년 法人差等管理制度의 導入 등으로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1980년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한 이후에는 質的 區分管理, 申告誠實度評價制의 실시 및 체계적인 申告指導와 不誠實 申告法人에 대한 강력한 稅務調査의 영향으로 납세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법인세수의 90% 이상이 自進納付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納稅水準의 向上을 바탕으로 1992년 이후부터는 과거 規制爲主의 行政에서 납세상담·지도의 강화, 세무행정의 간소화 등 서비스

行政 爲主로 法人管理를 전환하여 성실한 納稅者를 보호하며 최대의 便宜를 제공하고 불성실법인은 철저히 가려내어 엄정히 관리함으로써 자율적 성실신고의 定着을 위하여 法人管理를 계속 개선해 가고 있다.

(1) 綠色申告制度의 實施

法人稅가 申告納付制度로 전환하기 이전의 법인세제도는 納稅義務의 確定節次가 아니고 정부가 租稅債權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에 대한 자료제공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租稅確定節次를 거쳐야만 세법상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모든 法人이 申告의 誠實與否에 관계없이 매년 조사결정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규모도 大型化되어 한정된 인력으로는 그 처리에 限界가 있어 國稅廳 발족 직후인 1966년 5월 國稅廳의 행정조치로 「綠色申告運用要綱」을 제정·시행하여 직전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法人을 대상으로 하여 書面調査로 법인세를 부과·결정하고, 출장·호출·전화 등 기타 방법에 의한 實地調査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1969년 8월 綠色申告法人의 범위를 조정하여 이를 法制化하였다.

1969년 7월 綠色申告制度가 법제화된 이후, 녹색신고 법인자격은 自動적으로 취득되는 법인과 정부의 承認에 의하여 취득되는 법인으로 구분하였다. 자동녹색법인은 공개법인, 韓國證券去來所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격승인법인은 신고소득률, 자료제출상황, 源泉徵收狀況 등이 성실한 법인으로서 자격승인신청을 하여 國稅廳長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하였다.

法制化 이후 資格種類別 綠色申告法人 現況을 보면 1969년에 340개에서 1973년에는 261개로 감소되었다가 1974년부터는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에는 502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綠色申告法人이 총가동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69년에 4.1%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1년도에는

1.7%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녹색신고제도의 法制化 이후 녹색신고법인에 대한 資格審査 등 관리가 강화되고 정부의 企業公開政策의 적극 추진으로 승인녹색법인의 많은 수가 公開法人으로 轉換하였기 때문에 승인녹색법인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綠色申告制度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오히려 脫稅나 租稅回避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1967년 12월에 녹색신고법인의 성실도 측정을 위하여 書面決定한 349개 법인에 대하여 事後指導調査를 실시한 결과, 서면조사결정소득에서 16.7%의 漏落所得이 적출되어 1968년 3월 「綠色申告業體에 대한 循環調査要綱」을 마련하여 2년마다 1회의 정기적인 순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과세의 적정을 기하고 綠色申告制度를 보완하여 法制化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0년 11월에는 不誠實하다고 인정되는 173개 녹색법인의 자격을 書面審査에 의하여 재확인하여 그 중 48%에 해당하는 83개 법인의 녹색자격을 취소하였으며, 자격확인조사작업에서만 2억 1,900만원의 稅額을 추징하였다. 또한 자격이 취소된 83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3억 200만원을 추징하였다. 1971년 4월에는 「녹색신고제도 심의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1974년에는 法人稅制 行政革新業務의 일환으로 공개법인 46개를 포함한 녹색신고법인 182개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상당수의 不誠實 綠色申告法人을 색출하여 자격을 박탈하였다.

1976년 6월에는 「法人差等管理規程」을 제정하여 녹색신고법인도 그 誠實度에 따라 差等管理하였으며 1978년 2월에는 「녹색신고법인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기준적정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하도록 함으로써 不誠實 綠色申告法人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녹색신고법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자격심리를 철저히 한 결과 綠色法人의 申告所得率이 일반법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신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2) 誠實申告法人制度의 運用

誠實申告法人制度는 1970년도 稅政指標의 하나인 ‘誠實稅政’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하나로 동년 6월에 國稅廳의 행정조치로 시행되다가 그후 1974년 12월 法制化 과정을 거쳐 申告納稅制度로 전환되기 전까지 시행된 제도로서 녹색신고제도와 함께 法人의 誠實申告 提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4년 12월에는 國稅廳의 행정조치로서 운용해오던 誠實申告法人制度가 법제화되면서 國稅廳長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한 법인 중에서 생산수율과 源泉徵收, 資料提出 등에 義務履行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히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誠實申告法人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 지정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書面調査決定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성실신고법인 선정기준을 대폭 보완하게 되었는데 종전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신고소득과 세부담률에 의한 誠實度 測定基準을 사업의 규모와 經濟與件의 變動 등에 따른 業種別 經營成果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간접세, 원천징수, 과세자료 등을 추가하고 법인기업에만 시행해 온 성실신고제도를 簡易帳簿 및 複式簿記 義務者인 개인업체에까지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表 II - 15〉 誠實申告法人의 選定 現況

(單位：個)

	1970	1971	1972	1973	1974
法人數	15	48	92	36	47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3) 法人差等管理制 實施

그동안 실시해 온 綠色申告制度나 誠實申告制度가 일부 성실한 법인에게만 특전을 부여한 데 비하여 法人差等管理制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納稅義務 履行의 誠實度에 따라 성실신고법인과 불성실신고법인으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 전환의 기반을 다지는 데 力點을 둔 제도이다. 1976년 6월 「法人差等管理規程」을 만들어 시행하다가 1977년 8월에 일부 개정을 거쳐 1979년까지 시행하였다. 이는 모든 法人을 신고의 성실도에 따라 甲·乙·丙·丁 4등급으로 구분하고 甲等級은 녹색신고법인과 성실신고법인으로, 乙等級은 준성실신고법인으로, 丙等級은 실지조사유예법인으로, 丁等級은 실지조사법인으로 분류하였다.

다) 申告納稅制度下的 法人管理

1979년 12월 直接稅 分野에서는 처음으로 법인세를 申告納稅制度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세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국세청에서는 1980년 초부터 改正稅法과 稅務調整·申告要領 및 申告納稅制度下的 法人管理 方向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法人綜合管理規程과 法人稅 基本通則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는 稅務調整計算書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을 지정 고시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1980년 12월에는 「法人綜合管理規程」을 제정하여 새로운 과세제도에 맞는 법인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하였는데 당시 제정된 법인종합관리규정은 申告納稅制度下에서 법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었다.

1981년부터는 모든 법인을 申告의 誠實度 分析結果에 따라 模範申告法人, 優秀申告法人, 普通申告法人 및 不良申告法人(후에 每期 管理法人으로, 다시 지도관리법인으로 변경)으로 분류하여 구분관리를 하게 되었다. 管理類型的 分類基準은 법인의 세력에 의한 誠實度를 주된 기준

으로 하고 외형규모와 업종을 부차적인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력에 의한 성실도는 과거 3~5년간의 法人稅 申告 및 決定狀況과 稅負擔狀況 및 稅法上 協力義務履行狀況, 內部統制機能의 程度, 代表者의 企業經營態度, 기타의 蒐集情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외형규모는 대법인(외형 100억원 이상), 중법인(외형 5억원 이상), 영세법인(외형 5억원 미만)으로 분류하여 法人의 分布狀況에 따라 세분하였다. 관리유형의 분류에 업종을 기하고 세무서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형금액 3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稅務署長이 분류하여 地方國稅廳長이 확정하고 3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작성한 誠實度分析表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분류·확정하였다.

申告納稅制度로 전환된 후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국세청의 꾸준한 노력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申告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법인 관리체계의 誠實度 評價基準 및 方法을 보다 合理的이고 客觀化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同 制度는 모든 법인의 지속적인 성실신고 여부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므로 일시적인 성실신고만으로 장기간 모범이나 우수법인으로 구분·관리하게 되면 이후 성실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1984년 12월 法人綜合管理規程을 개정하였다. 종전의 3~5년의 주기적 관리제를 每年 管理制度로 바꾸어 모든 법인을 매 사업연도마다 성실도를 분석하고 그 분석요소를 法人稅 申告 및 決定狀況과 稅法上 協力義務 中心에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등 주요 財務諸表上的 經營成果 등을 추가하여 業種別, 外形階級別로 전국 평균치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성실신고는 물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성실도 평가방법을 과거 稅歷에 의한 수동 분석에서 稅歷 및 財務諸表에 의한 電算分析으로 개선하여 客觀性 確保는 물론 稅政의 科學化와 人力의 效率的 運用을 도모하였다.

라) 法人稅 申告狀況 推移

〈表 II -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人稅 課稅標準 階級別 申告法人數를 보면 1976년에는 총신고법인 1만 3,647개의 34%에 해당하는 4,635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하였으며, 1억원 이상 소득을 낸 법인은 612개 법인으로 4.5%에 불과하였다. 1980년에는 결손신고법인이 40.5%(8,905개)로 크게 증가하고 1억원 이상 소득을 낸 법인도 1980년에는 6.8%, 1981년에는 6.4%로 1979년의 7.2%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1979년 石油波動的 餘波와 선진국의 景氣沈滯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表 II - 16〉 課稅標準 階級別 申告法人數 推移

(單位: 個, %)

		계	결 손	1천만원 미만	1천만~1억원 미만	1억~10억원 미만	10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976	법인수	13,647	4,635	6,151	2,249	523	77	12
	구성비	100	34.0	45.1	16.5	3.8	0.6	0.1
1980	법인수	21,974	8,905	7,385	4,204	1,196	235	49
	구성비	100	40.5	33.6	19.1	5.5	1.1	0.2
1984	법인수	37,185	12,070	13,817	8,856	1,949	373	120
	구성비	100	32.5	37.2	23.8	5.2	1.0	0.3
1986	법인수	41,284	10,617	15,394	11,830	2,811	490	142
	구성비	100	25.7	37.3	28.7	6.8	1.2	0.3
1988	법인수	48,437	11,000	15,567	16,363	4,546	675	286
	구성비	100	22.7	32.1	33.8	9.4	1.4	0.6
1990	법인수	63,080	17,222	16,907	19,302	8,399	944	306
	구성비	100	27.3	26.8	30.6	13.3	1.5	0.5
1992	법인수	85,454	28,060	18,449	27,567	9,593	1,324	461
	구성비	100	32.8	21.6	32.3	11.2	1.6	0.5
1994	법인수	103,869	34,561	22,662	32,652	11,847	1,594	553
	구성비	100	33.3	21.8	31.5	11.4	1.5	0.5

註: 1990년은 1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과 8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구분함.
 資料: 國稅廳, 『國稅廳三十年史』, 1996.

그후 缺損申告法人의 比率이 1984년 32.5%, 1986년 25.7%, 1988년 22.7%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2년 32.8%, 1994년 33.3%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3低現象의 經濟好況으로 인하여 企業收支가 好調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의 극심한 勞使紛糾로 企業收支가 惡化되는 尙반된 경제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表 II - 17〉에서 1990년대의 年度別 自進申告納付比率을 세액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 94.7%, 1991년에 95.5%, 1992년에 94.4%, 1993년 91.8% 그리고 1994년에 93.8%로 나타나 있다.

〈表 II - 17〉 年度別 調査法人數 및 自進納付稅 比率

(單位：個, 百萬元, %)

		1990	1991	1992	1993	1994
합 계	법인수 ¹⁾	65,244	76,638	90,553	102,136	112,262
	징수액	3,226,128	4,585,547	5,941,051	5,862,329	7,387,569
고 지	조사법인수 ²⁾	3,256	3,766	2,335	4,467	4,209
	조사비율	5.0	4.9	2.6	4.4	3.7
	세액	170,678	207,995	333,813	479,505	460,174
	비율	5.3	4.5	5.6	8.2	6.2
자진납부 ³⁾	세액	3,055,450	4,377,552	5,607,238	5,382,824	6,297,935
	비율 ⁴⁾	94.7	95.5	94.4	91.8	93.8

- 註： 1) 법인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가동법인수임.
- 2) 조사법인수는 전부 또는 부분조사 법인수임.
- 3) 고지세액 및 자진납세액은 당해연도 징수분임.
- 4) 자진납부비율은 전체법인세수 중 자진납부에 의한 세수임.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2) 法人稅 調査

가) 調査機構 및 管轄의 變遷

法人稅 調査를 담당하는 기구와 관할은 法人의 納稅水準, 法人에 대한 國稅行政 方向, 從事職員의 資質과 行政需要 등에 따라 時代的으로 많은 變遷을 거듭해 왔다.

國稅廳 發足 이전에는 각 사세청과 세무서의 법인세과(직세과 포함)에서 담당하였으나 實際 調査活動은 주로 세무서에서 행하고 사세청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세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稅務 調査를 담당하였다.

국세청 발족 이후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주요시책의 하나로 추진한 高所得者에 대한 重點 調査方針에 따라 대법인, 저소득결손법인, 중감면법인, 학교법인, 정부투자기업, 재벌계열기업 등 중요도가 높고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地方國稅廳 法人稅課에서 직접 조사하고 기타 법인은 세무서에서 담당하였다.

1970년과 1971년에는 國營企業體, 金融機關 및 保險會社, 非營利法人, 2년 이상 계속 결손신고법인, 재벌계열 법인과 세무서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선정하여 地方國稅廳에서 직접 조사하고 기타 법인은 세무서에서 담당하였다. 이후 1972~1975년까지는 法人의 年間 外형 금액 크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국세청에 聯合 調査班(이하 본청조사반이라 함)을 編成하여 조사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여 國稅廳長의 承認을 받은 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반에서, 기타 법인은 稅務署에서 조사함으로써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조사반에 의한 調査活動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으며 이때부터 조사반에 의한 정밀조세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6년에는 조사법인의 구분을 申告內容의 誠實度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수준과 원단위 조사 등을 본청조사반에서, 기타 법인은 地方國稅廳

과 稅務署에서 각각 분담하였다.

1979년에는 본청조사반이 해체되고 지방국세청에 조사반을 法制化함에 따라 外形金額 50억원 이상인 제조·광산·서비스업과 외형 100억원 이상인 기타업종 영위법인은 조사반이, 기타법인은 地方國稅廳 法人稅課와 稅務署에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는 법인조사유형을 業種과 外形金額의 크기에 따라 精密調查對象法人은 조사반이, 重點調查對象法人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그리고 指導對象法人은 세무서에서 각각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량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부터 地方國稅廳의 調查機構를 조사관으로 單一化하고, 지역별 법인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여 外形金額의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청은 100억원 이상, 중부·부산청은 50억원 이상, 대전·광주·대구청은 30억원 이상인 법인을 조사반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1985~1988년까지는 서울청의 조사관할을 외형금액 50억원 이상으로 擴大 調整하였다. 1989년에는 종전에 外形金額의 크기에 따라 지방청 조사관실과 세무서 조사관할을 구분해 오던 것을 業種別 調查難易度, 調查人力, 波及效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사관할을 각 지방청별로 기준을 정하여 彈力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0년부터는 외형금액의 크기에 따라 조사관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다시 환원하였다. 國民經濟의 規模가 확대되고 法人의 外形規模도 커짐에 따라 서울·중부·부산청은 외형 100억원 이상, 대전·광주·대구청은 외형 50억원 이상의 법인을 지방청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가 1992년부터는 외형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모두 地方廳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기타 법인은 稅務署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외형규모에 비해 相對的으로 자산규모가 큰 부동산·서비스업과 不動產過多保有法人·資本去來를 선호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外形金額의 크기에 따른 조사관할 구분기준을 資產基準으로 변경하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

상인 법인에 대한 조사를 地方廳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기타 법인은 稅務署에서 담당하도록 개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調査法人 推移

과세제도가 신고납세제로 변경되기 전인 1980년까지의 調査法人數 推移를 보면 <表 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연평균 7,050개 법인을 조사하여 가동법인의 90% 이상을 조사하였으며, 1971년부터 1975년까지의 5년간은 연평균 8,882개, 1976년부터 1980년까지의 5년간은 1만 6,056개 법인을 조사하여 調査比率이 점차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에는 2만 3,216개의 法人을 조사하여 조사비율이 가동법인의 87.2%에 달했는데 이는 申告納稅制의 轉換을 앞두고 부과과세제도하에서의 調査未決法人을 마무리짓기 위한 調査活動의 강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申告納稅制度로의 전환한 이후인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調査比率을 보면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처음 신고한 1981년에는 1만 3,359개 법인을 조사하여 가동법인 2만 8,808개의 46.4%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8.4%, 1990년에는 4.6%, 1994년에는 3.5%로 급격한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법인수가 대폭 감소되면서 1989년 이후에는 95% 이상의 법인이 조사를 받지 않고 自進申告納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

法人稅 調査告知稅額의 推移를 보면 1966년에는 總賦課實績의 23%라는 높은 占有率의 고지세액을 징수하였으나 1970년에는 부과실적의 15.7%, 1975년에는 9.4%로 減少趨勢를 보이다가 1980년에 총부과실적의 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고지세액의 비율이 다시 증가한 것은 申告納稅制度의 轉換을 앞두고 부과과세제도하의 調査未決法人의 조기처리를 위한 調査法人 增加에 그 원인이 있었다.

申告納稅制度로 전환한 이후 1984년에는 부과실적의 6.8%, 1986년에는 3.6%, 1988년에 3%, 1990년에 2.7%, 1992년에 1.7%로 告知稅額

〈表 II - 18〉 調査法人數 推移

(單位: 個, %)

	가동법인수 (A)	조사법인수 (B)	조사비율 (B/A)	연평균 조사법인수
1966	6,595	6,396	97.0	7,050
1970	9,055	8,214	90.7	
1971	9,182	8,437	91.9	8,882
1975	14,868	10,785	72.5	
1976	16,199	12,116	74.8	16,056
1980	26,612	23,216	87.2	
1981	28,808	13,359	46.4	7,785
1985	42,719	3,596	8.4	
1986	45,844	3,379	7.4	3,327
1990	76,638	3,502	4.6	
1991	90,533	3,901	4.3	3,905
1994	125,413	4,447	3.5	

資料: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比率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法人稅의 推計調査現況을 보면 1972년에는 총 조사법인수의 33%를 추계 조사하였으며 그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表 II -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推計調査法人數가 총 조사법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였으며 1992년 이후에도 추계결정 비율은 3% 전후에 머물고 있다.

다. 附加價値稅의 申告納付와 調査

1) 附加價値稅의 申告納付

申告管理業務는 납세자에 대한 案内指導·相談 및 申告接受와 檢討에 관한 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고안내·지도, 신고

〈表 II - 19〉 推計決定 現況

(單位: 개, %)

	合 計				營利法人				非營利法人			
	계 (A)	실사 (B)	추계 (C)	비율 (C/A)	계 (A)	실사 (B)	추계 (C)	비율 (C/A)	계 (A)	실사 (B)	추계 (C)	비율 (C/A)
1972	9,574	6,410	3,164	33.0	9,290	6,126	3,164	34.0	284	284	-	-
1976	12,116	8,934	3,182	26.2	11,681	8,526	3,155	27.0	435	408	27	6.2
1980	23,216	20,709	2,507	10.8	21,782	19,292	2,940	11.4	1,434	1,417	17	1.2
1984	4,041	3,716	325	8.0	3,924	3,602	322	8.2	117	114	3	2.5
1988	3,019	2,928	91	3.0	2,929	2,845	84	2.9	90	83	7	7.8
1990	3,502	3,438	64	1.8	3,417	3,354	63	1.8	85	84	1	1.2
1992	2,156	2,089	67	3.1	3,123	2,057	66	3.1	33	32	1	3.0
1994	4,879	4,735	144	3.0	4,805	4,661	144	3.0	74	74	-	-

資料: 國稅廳, 法人稅課

서의 접수, 稅金計算書의 送報, 申告書의 電算入力 등으로 구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내의 한 세무서의 업무량 측정결과에 의하면 申告納付의 業務量은 전체업무량의 약 38%를 점하고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업무였다.

國稅廳은 附加價値稅 시행 초기에 제도의 정착을 위해 政府主導의 申告指導를 하였으나 점차 稅務干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1985년 이후에는 一括申告 接受制를 도입하는 등 自律申告納付制度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申告指導業務를 추진하였다. 1993년 文民政府 출범 이후 신고지도업무는 稅政刷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納稅便宜를 최대한 도모하고 성실납세자와 生産的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稅政面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도확인 등의 申告指導가 申告實績 제고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사전 세무간섭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 1995년 1월부터는 申告指導를 완전히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前期對比 一定率에 의한 신고권장도 일체 할 수 없도록 하고 종사직원에 의한 신고서 作成代行을 原則

의므로 배제하였으며 신고서 접수도 「民願奉仕室」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완전한 事業者 自律申告體制로 전환하였다.

申告指導의 變遷 內容은 ① 制度의 受容・整備段階(1977~1985년) ② 制度의 發展・定着段階(1986~1992년) ③ 制度의 變化・改革段階(1993~1995년)에 따라 區分된다.

制度의 受容・整備 段階에는 國稅廳이 申告指針을 시달하고 간담회 등 각종 홍보와 함께 舉廳的 申告指導를 실시하였으며 신고실적 제고를 위해 「業種別 申告勸獎 基準率」을 제정하고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비하여 一定率 이상을 신고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증액신고 강요와 접수거부 등 다소 물의가 있어 1978년에는 일정률에 의한 신고권장의 불합리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적정과표를 산정하는 「事後審理 調整課標制度」를 실시하여 申告勸獎과 事後 誠實申告 與否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1980년에는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郵便申告制度를 채택하였으며, 1981년에는 地域擔當制를 폐지하고 담당직원에 의한 業所訪問 申告指導를 일체 금지하는 대신 「알리는 方式」의 個別相談制를 실시하여 管理者 中心의 그룹별 면담방식으로 신고지도 방법을 개선하였다.

1984년 9월에는 「自律申告制 管理要領」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자율신고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事業者 選別區分 管理方法을 채택하여 사업자를 申告案内, 集團指導 그리고 個別指導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도함으로써 신고업무의 능력을 제고하였다.

1985년에는 「一括申告 接受制」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類型・分類內容에 따라 신고서 접수방법을 구분하였고 신고접수 창구도 별도로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신고서 접수에 따른 세적관리 책임자의 個別 干涉을 가급적 축소하여 납세자에게 자유로운 신고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동시에 신고업무의 자동화를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一括申告 對象者를 점차 확대하고, 타사업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申告案内文도 靑色으로 인쇄하여 一括申告對象者임을 안내함으로써 점

차 自律申告制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制度的 發展·定着段階(1986~1992년)에는 1986년부터 自律申告制를 실시하고 一括接受制를 도입하여 自進申告納付制度가 정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同 制度的 發展·定着을 위한 방향으로 申告指導業務를 전환하여 추진하였다. 1987년 2기부터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郵便申告制度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零細事業者의 納稅便宜를 도모하게 되었다. 1992년 제1기부터는 「稅務署一線機能活性化方案」을 수립하고, 國稅廳의 획일적인 업무지시를 지양함으로써 세무서 중심의 常時 稅源管理 體制를 구축할 수 있도록 申告指導方法을 본청에서는 全國의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시달하고 세무서는 官署 特性에 맞는 자체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脆弱地域이나 稅源을 중심 관리하도록 하여 一線機能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制度的 變化·改革段階(1993~1995년)에서는 原則적으로 신고서를 「民願奉仕室」에 접수하도록 하고 신고 막바지에는 申告便宜를 위하여 附加價値稅課(법인세과)에 신고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申告過程에서의 일체의 稅務干涉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稅政改革措置」에 따라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申告指導나 指導確認調査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신고서 작성도 세무공무원이 代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사업자 스스로 또는 稅務代理人의 협조를 받아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表 II-19>에서 1994년 2기 申告書 作成方法別 申告現況을 보면 自律申告 水準은 법인의 경우 99.9%, 개인 일반의 경우 87%, 그리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83%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郵便申告 水準은 법인의 경우 3.2%, 개인 일반의 경우 5.4%, 그리고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45.4%로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表 II - 20〉 申告書 作成方法別 申告 現況(1994年 2期)

(單位 : 名, %)

		合 計	構 成 比	法 人	構 成 比	個人一般	構 成 比	課稅特例	構 成 比
合 計		2,388,044	100	133,911	100	933,335	100	1,320,798	100
自 律 申 告	小 計	1,387,196	58.1	133,789	99.9	812,150	87.0	1,096,446	83.0
	本人作成	656,956	27.5	76,953	57.5	325,235	34.8	909,957	68.9
	稅務代理	449,621	18.8	56,783	42.3	365,418	39.2	27,420	2.1
	協力團體	280,619	11.8	53	0.1	121,497	13.0	159,069	12.0
作成代行		345,659	14.5	122	0.1	121,185	13.0	224,352	17.0
郵便申告		655,189	27.4	4,249	3.2	50,708	5.4	600,232	45.4

資料 :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 546.

2) 附加價値稅 申告行政⁶⁾

附加價値稅 시행 이후 신고납부제도의 早期定着을 위하여 國稅청이 추진한 신고행정을 時間별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施行 初期의 申告行政

새로운 稅制가 시행됨으로써 1977년 7월 이후부터 國稅청은 「부가가치세 조기정착」이라는 대명제하에 모든 行政力을 여기에 투입하였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자등록증 교부업무와 懇談會 등 弘報業務를 지속하였고, 이어서 각종 규정 및 지침의 제정, 재고품 신고와

6) 이 부분은 李愚澤, 「租稅行政의 回顧와 政策課題」, 『光復 後 50年間の 租稅 및 金融政策의 發展과 政策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5. 12의 pp. 45~50에서 引用한 것임.

陽性化措置, 그리고 각종 명령조치와 稅金計算書 指導團束 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措置와 業務를 執行하였다. 시행 초기의 主要業務 執行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事業者登錄證 交付

197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된 既存事業者의 營業稅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납과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6월 10일까지 마쳤고, 미등록자의 救濟를 위하여 1차를 7월 20일까지 2차를 8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 결과 대상인원의 97.5%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稅金計算書 授受를 위한 必須的 要件을 갖추게 되었다.

(2) 諸規定의 制定

附加價值稅制의 원활한 執行을 위하여 국세청은 법에서 委任된 사항과 기타 단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稅金計算書 事務取扱規程
- 零稅率 適用을 위한 國稅廳長의 指定書類에 관한 規程
- 外貨獲得事業者 指定 基準
- 金錢登錄器 設置運用 基準
- 補償金支給規程
- 在庫品 및 舊間接稅 調査承認 指針
- 主事業場 總括納付 認定 指針
- 專貰버스 運用 指針
- 附加價值稅 命令事項 制定

(3) 在庫品申告와 陽性化措置

附加價值稅 시행 이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에 포함되어 있는 營業稅, 物品稅, 기타 舊間接稅를 控除하기 위한 재고품 신고를 받아

제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양성화에 주력하였다.

(4) 各種 命令 措置

附加價値稅法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의 保全이나 기타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에게 義務履行을 強制하는 각종 명령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시행 초기 국세청은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사업자들에게 각종 명령서를 發付하였다.

이 명령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질서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많은 心的 負擔을 주어 왔으며, 조기정착을 위한 강박관념으로 사소한 위반사항도 가혹한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民願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5년 현재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령사항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검인 사용 - 일반과세자
- 금전등록기 사용 - 금전등록기 설치업자
- 금전등록기용 테이프의 제조판매 - 금전등록기 테이프 제조자 및 판매자
- 의제매입세공제에 따른 원재료수불부 비치 - 의제매입세공제대상 제조업자
- 가구류판매업자의 기장검인 및 가격표찰 - 가구류 판매업자
- 입장권 발행 및 가격표찰 - 카바레, 나이트클럽
- 객실 및 탁자별 판매상황 비치 - 유흥음식점 중 일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전문음식점
- 승차권 등의 사용 - 고속버스, 항공기사업자
- 전세버스 운행 - 전세버스운행사업자
- 운휴신고 - 택시운송사업자
- 입장권 등의 사용 - 입장권 발행업소

(5) 稅金計算書 指導 團束

국세청은 附加價値稅 시행 초기부터 稅金計算書 지도단속업무를 力點 事業으로 추진하였다. 시행 초기의 지도단속업무는 사업자들에게 세금 계산서의 성실한 수수를 유도하였고 각종 명령사항을 遵守시켜 최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하였으며 나아가 새로운 稅制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지도단속표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세금계산서 수수실적 등 지도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記載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1인별 책임담당제는 부가가치세의 成敗가 달려 있는 일반과세자(법인 1만 6,510명, 개인 11만 3,370명)에 대하여 종사직원 전원에게 일정건수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實效性 있는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새로운 稅制에 대한 납세자의 認識不足과 商慣習으로 인하여 稅金計算書의 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국에서는 이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단속을 계속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을 많이 사게 되어 租稅抵抗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3) 附加價値稅의 調查

가) 調查管理

附加價値稅 관련 조사는 調查對象에 따라 當然更正, 選別更正 및 特別更正으로 분류하여 집행하여 왔다. 當然更正 대상은 無申告(無納付)者,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전산처리결과 誤謬 또는 漏落資料發生者 등이고 選別更正對象은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의 手動 또는 電算分析結果 不誠實者와 不正還給 嫌疑者, 審理基準 未達申告者 등이며 特別更正對象은 탈세정보자료 또는 간접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者 등이다. 當然更正은 무신고 등 결정사유가 명백한 것이고, 特別更正도 內査 등을 통하여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조사관리에서 중요한 업무는 一般(選別)更正에 있다고 할 것이다.

營業稅制下에서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전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실지·추계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附加價値稅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申告納付制度로 운영된다. 이러한 申告納付制度는 사업자가 기장에 의해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附加價値稅 施行 이후 우리의 納稅風土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事例도 있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虛偽의 稅金計算書를 수수하여 不誠實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國稅廳은 부가가치세 시행 초기부터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고 전에 指導確認 또는 更正調査를 하거나 신고후 사업자들의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事後更正調査를 실시하여 왔다. 更正調査業務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어떻게 하면 客觀性과 合理性을 동시에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調査對象者 選定基準의 變更趨勢를 보면 선정권자의 주관적 판단과 담당자의 恣意性 介入을 축소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의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手動分析에 의한 선정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電算分析에 의한 선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電算分析을 통한 선정은 객관성을 제고할 수는 있었으나 그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 不誠實한 事業者를 선정한다는 합리성의 확보에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1980년대 말부터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한 것은 高額의 不實資料(전산불부합자료, 신용카드자료, 위장 가공자료 등)가 발생한 사업자를 優先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現金收入業種 또는 無資料去來가 많은 업종 등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 의한 一律的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申告誠實度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1995년도에는 과표현실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現金收入業種과 無資料去來가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을 위주로 종목별로 사업자를 분석하고 상대적 불성실자를 선정하여 동일 종목, 同時 調査體制로 조사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조사대상자 선정에 客觀性和 合理性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更正 調査 過程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調査便宜 등의 수단으로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帳簿 書類 등을 領置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되어 조사과정에서 民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調査公務員의 調査權 濫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稅務 調査 運營 準則」(國稅廳 訓令 第1169號)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一般(選別)決定 調査 時에는 일체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규정위반자에 대하여 소속 관서장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條項까지 新設하였다⁷⁾.

그러나 附加價值稅 調査는 원천적인 課稅標準 漏落 및 不實稅金計算書 授受行爲를 적출하는 조사로 현장에 있는 原始記錄의 預置 없이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가 어려운바, 과거와는 달리 經濟規模가 확대되고 탈루수법이 다양해져 가는 세정여건에 效率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調査技法이 지속적으로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나) 更正實績 推移

附加價值稅 施行 後 1977년 2기에 更正 調査를 받은 사업자는 <表 II-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자의 14.5%, 1978년에는 18.9%로

7)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 563.

많은 사업자가 그 대상이었다.

이는 附加價値稅 시행 초기에 새로운 세제의 早期定着을 위하여 세금 계산서지도 단속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1년부터는 조사사업자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調査對象 人員을 1% 内外로 대폭 縮小하여 집행하다가 1994년에는 0.6%까지 낮아졌다.

한편, 課稅特例者에 대한 選別更正은 조사인원에 비하여 세수 등의 면에서 실익이 적어 1994년부터는 경정조사 인원계획에서 제외하고, 僞裝 課稅特例者 規制 次元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업체당 追徵稅額을 보면 1985년까지는 법인, 개인 모두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表 II -21〉 附加價値稅 更正實績 推移

(單位：名, 百萬元)

	總事業者	調査人員				調査人員比率	追徵稅額				業體當稅額	
		計	法人	個人	特例		計	法人	個人	特例	法人	個人
1977.2	824,192	119,616	29,904	82,535	7,177	14.5	17,725	9,749	7,799	177	0.33	0.09
1978	878,429	166,316	41,579	114,758	9,979	18.9	9,307	5,119	4,095	93	0.12	0.04
1981	1,104,922	27,090	6,855	18,860	1,375	2.5	39,879	21,933	17,546	400	3.2	0.9
1985	1,269,342	12,587	2,833	9,589	165	1.0	44,364	24,693	19,531	140	8.7	2.1
1988	1,508,565	5,687	1,528	3,833	326	0.4	62,804	37,401	25,171	232	24.5	6.7
1990	1,834,240	4,577	940	2,309	1,328	0.3	73,332	32,400	39,887	1,045	34.5	17.3
1991	1,988,821	6,056	1,016	2,961	2,079	0.3	91,906	41,013	48,433	2,460	40.4	16.4
1992	2,102,213	7,256	1,156	3,792	2,308	0.3	103,880	46,431	54,422	3,027	40.2	14.4
1993	2,253,105	16,424	2,327	8,170	5,927	0.7	224,608	118,300	101,383	4,925	50.8	12.4
1994	2,388,044	14,736	3,079	10,801	856	0.6	306,033	153,463	151,333	1,237	49.8	14.0

註：1. 總事業者數는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個人, 法人 合計值임.

2. 稅額은 附加價値稅만임.

3. 業體當 稅額란의 個人은 課稅特例者를 除外한 業體當 稅額임.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 568.

3. 源泉徵收制度

가. 概要

源泉徵收라 함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去來相對方의 일정한 소득이나 수익의 發生源泉인 去來段階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부담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徵收하여 國庫에 납부하는 조세징수방법이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의 租稅收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徵稅費가 적게 들어 최소징세비의 원칙에 적합하며, 소득 또는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서 捕捉할 수 있어 稅源의 逸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源泉徵收制度는 각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제도가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일제하인 1934년으로 그 대상은 公·私債利子, 銀行支給利子 및 法人으로부터 받는 利子·配當 등을 지급할 때였다. 그 이후 이 제도는 미군정과 정부수립 이후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6·25사변을 계기로 영업거래시에 事業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營業稅를 원천징수하는 去來源泉徵收制度가 도입되어 종래의 일반원천징수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 그후 1977년에 附加價値稅制度의 시행에 따라 去來源泉徵收制度는 폐지되었다.

나. 源泉徵收의 推移

源泉徵收에 의하여 과세되는 稅收의 比重을 <表 II-22>에서 보면 1976년까지는 총 세수액의 27%였으나 1977년 6월에 去來源泉徵收制度가 廢止됨으로써 1978년에는 11.9%로 하락하였다. 그후 1982년부터 教育稅가 신설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19%를 차지하였으며 分離課稅利子·配當所得의 源泉徵收率을 인상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여 24% 내외를 유지하였다.

〈表 II - 22〉 年度別 源泉稅 徵收比重

(單位: 億圓, %)

	1965	1976	1978	1986	1988	1990	1992	1994
국세청 소관 계(A)	436	16,089	26,453	112,093	163,472	242,357	346,415	475,979
內 國 稅	436	14,280	23,285	94,570	136,423	204,922	324,218	421,839
交 通 稅	-	-	-	-	-	-	-	24,591
防 衛 稅	-	1,818	3,168	13,797	21,926	32,222	3,958	2,219
教 育 稅	-	-	-	3,726	5,123	5,213	18,239	25,420
農 特 稅	-	-	-	-	-	-	-	1,910
원천세 계(B)	120	4,362	3,146	16,852	28,277	46,059	82,305	114,197
內 國 稅	120	4,159	2,801	13,509	22,825	37,042	82,153	113,993
所 得 稅	-	-	2,646	11,765	20,006	27,282	53,171	71,318
法 人 稅	-	-	155	1,744	2,819	9,760	28,982	42,675
防 衛 稅	-	203	345	1,974	3,429	5,751	150	18
教 育 稅	-	-	-	1,369	2,023	3,266	2	4
農 特 稅	-	-	-	-	-	-	-	182
比率 (B/A)	27.53	27.10	11.9	15.0	17.3	19.0	23.8	24.0

註: 국세청 소관 계는 순징수결정액, 원천세 계는 부과치임.
 資料: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源泉稅의 徵收義務者別 構成을 보면 원천세 대부분을 법인인 징수의 무자가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거래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95% 이상을, 1990년 이후에는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表 II - 23〉 참조). 法人의 比重이 이와 같이 높은 것은 주로 법인의 經濟的 比重이 높아진 데 기인하지만 個人事業者에 대한 稅源管理가 未洽한 점도 있었다⁸⁾.

源泉稅의 納稅義務者別 構成을 〈表 II - 24〉에서 살펴보면, 개인세부담분이 1965년에는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으나 거래원천징수제도가

8)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 482.

확대된 1975년에는 57.9%로 낮아졌다. 그 후 거래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비중이 점점 확대되어 1984년에는 90.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分配金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債券利子 그리고 1994년에는 금융기관이 받는 利子所得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이 확대되는 등 法人負擔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1994년에 個人負擔은 62.6%로 크게 낮아졌다.

〈表 II - 23〉 徵收義務者別 源泉徵收 構成

(單位: 億圓, %)

	1975		1984		1988		1990		1992		1994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計	2,931	100	11,394	100	28,277	100	46,059	100	82,303	100	114,212	100
個人	219	7.5	525	4.6	901	3.2	863	1.9	1,176	1.4	1,800	1.6
法人	2,712	92.5	10,869	95.4	27,376	96.8	45,196	98.1	81,127	98.6	112,412	98.4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表 II - 24〉 納稅義務者別 源泉徵收 構成

(單位: 千件, 億圓)

	1975		1984		1988		1990		1992		1994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計	2,931	100	11,394	100	28,277	100	46,059	100	82,303	100	114,212	100
個人	1,695	57.9	10,273	90.2	24,939	88.2	34,898	75.8	53,321	64.8	71,508	62.6
法人	1,235	42.1	1,120	9.8	3,338	11.8	11,161	24.2	28,982	35.2	42,704	37.4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4. 滯納處分

가. 概要

滯納處分이란 納稅告知를 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財政公權力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押留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대금으로 國稅債券에 충당하는 一連의 強制執行節次를 말한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稅收規模가 확대되면서 滯納額의 발생규모도 커지는 반면에 無財產者나 財產隱匿者에 대한 체납액 징수수단은 限界가 있어 未積立滯納額의 規模는 해마다 增加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滯納發生의 推移

일반적으로 滯納發生의 原因은 국민의 納稅意識水準과 擔稅能力, 租稅制度 및 稅務行政, 社會經濟的 與件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국세청 개청 후인 1966년부터 1975년까지의 滯納額 發生推移를 <表 II-25>에서 보면 現年度 滯納額 發生比率이 1966년도에는 8.7%이던 것이 1970년에는 9.6%까지 증가하였다가 197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4~1980년에는 4~5%까지 크게 낮아졌다.

이와 같이 滯納發生比率이 크게 낮아진 것은 1973년부터 「徵收事務正常化方案」을 마련하여 부과된 세금의 체납발생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업무의 공정과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에 철저를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비율이 1972년 46%에서 1974년 85%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納期內 自進納付를 위한 事前 啓蒙活動을 강화한 데 주요 원인이 있었다.

고액어음부도사건 등 대형 경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던 1982년에는 滯納發生比率이 10.2%까지 상승하였으나 1983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경

제성장에 따른 稅收規模의 증가와 追徵收額의 高額化에도 불구하고 徵收事務의 개선으로 체납발생비율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表 II - 25〉 滯納發生 比率 推移(內國稅)

(單位：百萬원, %)

	1966	1970	1974	1978
徵收決定額(A)	68,475	305,502	779,684	2,159,368
現年度發生額(B)	5,935	29,467	24,813	92,593
比率(B/A)	8.7	9.6	3.2	4.3
	1982	1986	1991	1994
徵收決定額(A)	5,187,376	8,676,901	25,497,484	46,764,239
現年度發生額(B)	527,313	752,995	1,454,931	3,029,534
比率(B/A)	10.2	8.7	5.7	6.5

註：1. 徵收決定額은 內國稅 總徵收決定額임.

2. 滯納發生額은 現年度 發生額과 年度移越額 합계 금액임.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滯納未定理件數의 年度別 推移를 〈表 II - 26〉에서 보면 1977년에 11만 4,403건에서 1981년과 198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減少하여 1985년의 경우 3만 1,323건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계속 증가하여 1994년에는

〈表 II - 26〉 未定理 滯納額의 件當 平均額 推移

(單位：件, 百萬원)

		1977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未整理	件數	114,403	35,856	132,917	31,323	113,297	148,526	468,015
	金額	49,795	65,631	275,928	347,180	554,345	1,012,337	1,718,494
1件當 平均金額 (천원)		435	1,831	2,076	11,084	4,893	6,816	3,672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46만 8,0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한 건당 平均 滯納額은 1977년 43만 5천원에서 1985년 1,108만 4천원으로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는 감소하여 1994년에는 367만 2천원으로 감소하였다.

5. 權利救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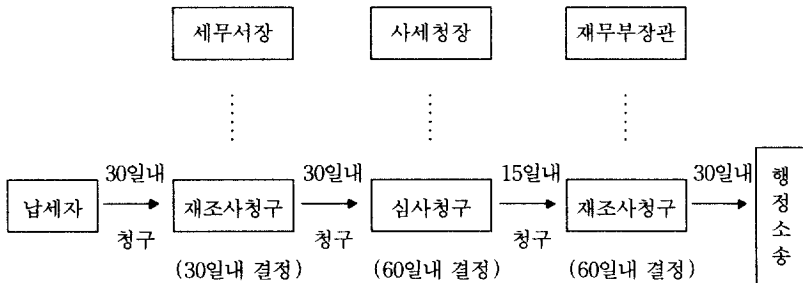
가. 1960年代(國稅審査請求法上的) 權利救濟

1962년부터 「國稅審査請求法」을 시행하여 이전에 각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었던 심사청구제도를 統合하여 권리구제에 관한 一般法 役割을 하게 하였다.

國稅의 賦課와 徵收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제1심으로 세무서장에게 재조사청구, 제2심으로 사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제3심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3급심 행정심판제도였다. 그 불복 청구의 절차는 [圖 II - 3]과 같다.

國稅審査請求法에 의한 再審査請求 및 處理의 推移는 <表 II -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圖 II - 3] 國稅審査請求法에 의한 不服請求 節次圖



〈表 II - 27〉 再審査請求 및 處理 現況

(單位: 件, %, 百萬元)

	심사결정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처리상황			
	처리건수	기각·각하 건수(A)	청구건수 (B)	청구비율 (B/A)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비율	인용금액
합계	16,533	13,307	7,455	56.0	7,335	2,408	32.8	9,859
1966	496	372	186	50.0	172	61	35.5	35
1967	957	767	450	58.7	435	210	48.3	158
1968	1,306	1,004	567	56.5	514	190	37.0	606
1969	1,912	1,483	696	46.9	685	218	31.9	527
1970	1,970	1,521	793	52.1	771	204	26.5	2,082
1971	2,445	1,993	993	49.8	973	268	27.5	761
1972	3,233	2,796	1,593	57.0	1,633	522	32.0	2,492
1973	2,887	2,363	1,384	58.6	1,318	431	32.7	1,898
1974	1,327	1,008	793	78.7	834	304	36.5	1,300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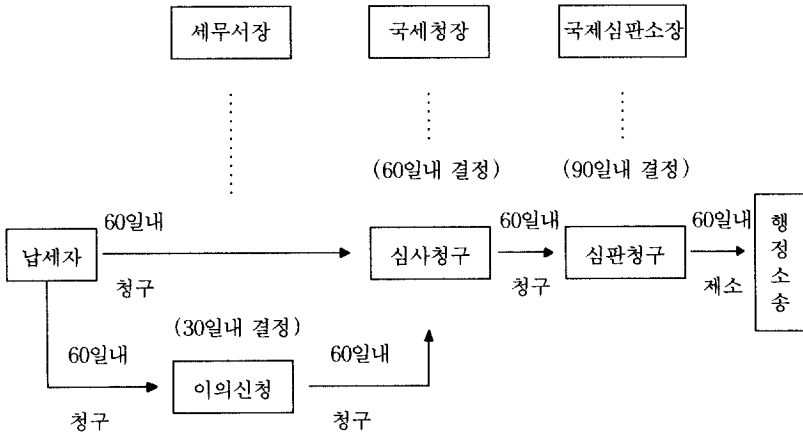
나. 1970年代 以後(國稅基本法上의) 權利救濟

課稅에 관한 一般原則을 규정하여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便宜를 도모하고 公正한 租稅行政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1일 「國稅基本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 제7장 「심사와 심판」에서 새로운 權利救濟節次를 규정하여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國稅審査請求法은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國稅基本法에서는 審級을 원칙적인 2심급으로 단축하고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違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부작위처분) 權益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제1심

으로 國稅廳長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제2심은 最終審으로서 國稅審判所長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審査請求를 하기에 앞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異議申請을 제기하여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圖 II-4] 참조).

[圖 II-4] 現行 不服請求 節次圖⁹⁾



다. 異議申請의 處理 및 再審査의 處理狀況

異議申請에 대한 認容比率은 <表 II-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낮다. 이는 賦課徵收業務의 통일적인 해석기준이 되는 기본통칙의 활용, 審査決定事例集의 發刊 活用 그리고 納稅者의 權益을 존중하고 違법·부당한 행정을 엄중히 배제하는 등 일반적인 稅務行政의 質的 水準의 向上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納稅者의 權利救濟를 위하여 적극적인 심리를 하였고 零細事業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1994년도에는 認容比率이 전년대비 48%나 증가하였다.

9) 납세자는 심판청구 대신 감사원에 심사청구(3월내 결정)를 할 수 있다.

〈表 II - 28〉 異議申請 및 處理 現況

(單位：件, %, 百萬圓)

	請求件數			處理狀況			
	計	稅務署	地方國稅廳	處理件數	認容件數	認容比率	認容金額
1975~84	65,729	61,246	4,483	65,564	16,900	25.7	43,069
1985~89	12,591	10,214	2,377	12,825	962	7.5	13,628
1990	2,159	1,689	470	2,132	194	9.0	3,408
1991	2,601	1,829	772	2,347	201	8.5	4,172
1992	2,413	1,689	724	2,652	199	7.5	4,369
1993	4,277	3,269	1,008	3,721	296	7.9	9,638
1994	2,813	1,941	872	3,369	396	11.7	14,150

資料：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審査決定에서 認容받지 못한 납세자의 年度別 審判請求 比率은 〈表 II -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최종 행정심판까지 받아보려는 납세자의 權利意識 伸張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즉, 審判請求의 比率이 낮은 수준이지만 제3자적인 심판과 自由心證主義에 의하여 納稅者保護 中心으로 심판함으로써 국세청의 審査決定 認容比率 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라. 租稅行政訴訟 發生 推移

조세행정소송은 政府樹立·事變期·戰後復舊期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1966년 國稅廳 開廳 이후 국세행정의 확대·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租稅行政訴訟의 發生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조세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행정소송의 56.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財政需要의 充足을 위한 租稅負擔率의

〈表 II - 29〉 審判請求 및 處理現況 (內國稅分)

(單位: 件, 百萬圓, %)

	심사결정		심판청구				심판청구처리상황						
	처리 건수	기각 각하 건수 A	청구건수		청구금액		처리건수		인용			인용비율	
			건수 B	비율 B/A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1975~84	35,083	26,647	17,311	65.0	772,351	45	16,927	710,765	6,599	153,225	23	39.0	21.6
1985~89	15,124	13,911	10,531	75.7	865,085	82	10,504	870,959	2,938	147,347	49	28.0	16.5
1990	3,780	3,488	2,681	76.9	321,291	120	2,540	302,015	696	64,391	93	27.4	21.3
1991	3,980	3,707	2,718	73.3	435,463	160	2,744	370,133	724	84,183	116	26.4	22.7
1992	5,908	5,466	4,292	78.5	859,604	200	4,257	821,709	947	102,185	108	22.2	12.4
1993	5,316	4,784	3,198	66.8	645,598	202	3,071	634,121	814	141,251	174	26.5	22.3
1994	8,527	7,497	6,084	81.1	1,193,102	196	4,088	677,252	1,128	114,059	101	27.6	16.8

資料: 국세심판소.

增加 그리고 은폐된 稅源의 陽性化를 위한 강력한 行政執行과 국민의 權利意識 伸張 등으로 행정기관과 납세자 사이에 課稅에 관한 爭訟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에 기인한다.

行政訴訟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소송의 前審節次인 審査請求와 審判請求 決定에 대한 不信 때문으로 分析된다¹⁰⁾. 審判請求의 棄却決定에 不服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980년대 후반 이후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前審節次인 行政審判 過程에서 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 行政審判에 대한 信賴度를 제고하여 행정소송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을 준다(〈表 II - 30〉 참조).

10) 國稅廳, 『國稅廳三十年史』, 1996, p. 835.

〈表 II - 30〉 審査・審判請求와 行政訴訟의 年度別 發生 現況

(單位: 件, %)

	審査請求			審判請求				行政訴訟	
	接受	認容	棄却 (A)	接受 (B)	比率 (B/A)	認容	棄却 (C)	提起 (D)	比率 (D/C)
1980~84	17,950	4,005	13,914	9,850	70.8	3,118	6,588	3,011	45.7
1985~89	15,156	1,213	13,943	10,531	75.5	2,938	7,566	5,093	67.3
1990	3,885	292	3,488	2,681	76.9	696	1,844	1,157	62.7
1991	4,893	273	3,707	2,718	73.3	724	2,020	1,213	60.0
1992	5,129	442	5,466	4,292	78.5	947	3,310	1,807	54.6
1993	7,104	442	4,874	3,198	65.6	814	2,257	1,457	64.6
1994	6,877	1,030	7,497	6,084	81.1	1,128	2,960	1,853	62.6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마. 租稅行政訴訟 判決의 推移

租稅行政訴訟에 있어서 國家가 勝訴한 비율은 1980년대 후반 46.6%까지 낮아졌다가 1990년 이후 60%를 상회하였다. 이는 勝訴率을 높이기 위한 訴訟指導管理 強化 등에 기인하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勝訴율이 낮은 편이며, 1994년도의 경우 勝訴率이 감소된 이유는 土地超過利得稅 敗訴件數 增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表 II - 31〉 참조).

〈表 II - 31〉 租稅行政訴訟의 國家勝訴率 推移

(單位: 件, %)

	1966~75	1976~84	1985~89	1990	1991	1992	1993	1994
處理計(A)	1,130	3,228	4,833	802	901	1,422	1,727	1,534
國家勝訴(B)	889	1,903	2,250	490	563	872	1,085	896
國家敗訴	241	1,325	2,583	312	338	550	642	638
勝訴率(B/A)	78.7	59.0	46.6	61.1	62.5	61.3	62.8	58.4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Ⅲ. 日本의 國稅行政

1. 序論

가. 日本의 歲入構造와 租稅收入

1) 一般會計歲入에 있어서의 租稅收入 및 印紙收入

日本의 豫算은 기본적인 一般會計豫算과 國家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特定資金을 보유하여 運用하는 경우 등에 설정되는 特別會計로 나누어진다(이 외에 國家 自體는 아니지만 國家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政府投資機關의 豫算이 있다).

國家 財政活動의 기본이 되는 一般會計를 보면 그 주된 歲入財源은 租稅 및 印紙收入으로 戰前 1934~1936년에는 一般會計歲入의 약 44.7%에 불과했다. 그러나 戰後 日本은 財政法에서 國家의 歲出은 公共事業費 등을 제외하고는 公債 또는 借入金 이외의 것을 財源으로 해야 되며, 또한 公債를 發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日本銀行 引受에 의한 公債發行을 금지하는 이른바 健全財政主義를 채택하여 歲入에서 접하는 租稅 및 印紙收入의 比重이 높아지게 되었다. 1960년도에는 歲入 1兆 9,610億엔 중 租稅 및 印紙收入은 1兆 6,183億엔(82.5%)이었다. 그 후 1965~1975년에 들어와서 歲入의 不足을 보충하기 위하여 建設公債를 發行하는 공채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一般會計歲入에서 租稅 및 印紙收入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75~85%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1973년 第1次 석유파동으로 인한 不況으로 말미암아 租稅 및 印紙收入은 法人稅를 중심으로 대폭 減少되어 一般會計에서 차지하는 租稅 및

印紙收入의 比率은 64.0%로 크게 減少하였다. 1976년 이후에도 歲入增加率이 둔화된 가운데 景氣恢復과 國民生活의 安定·向上을 위하여 歲出面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一般會計는 30% 이상을 特別公債를 포함한 公債發行에 의존하게 되어 租稅收入 및 印紙收入은 60%의 낮은 比率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公債發行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1982년도에는 概算要求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zero ceiling제를 택하여 一般會計歲出의 신장률도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租稅 및 印紙收入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여 1995년도 補正(第1號)後 豫算에서는 一般會計歲入에서 租稅 및 印紙收入이 차지하는 比率은 64.5%가 되었다(〈表 Ⅲ-1〉 참조).

2) 租稅 및 印紙收入의 概要

1995년도 補正(第1號)後 豫算 一般會計에서 租稅 및 印紙收入은 53兆 5,930億엔이었는데, 이 중 內國稅가 50兆 9,260億엔, 關稅 및 頓稅가 9,050億엔, 印紙收入이 1兆 7,620億엔을 이루고 있다.

國稅收入을 主要稅目別로 살펴보면, 直接稅에서 源泉所得稅는 15兆 3,020億엔(國稅收入의 28.1%), 法人稅 13兆 5,480億엔(同 24.9%), 申告所得稅는 4兆 360億엔(同 7.4%)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間接稅에서는 消費稅가 5兆 9,480億엔(10.9%)이며 酒稅는 2兆 1,110億엔(同 3.8%)으로 되어 있다(〈表 Ⅲ-2〉 참조).

〈表 Ⅲ-1〉 日本 一般會計歲入의 科目別 決算額 및 歲入에
대한 租稅收入 比重

(單位: 億圓, %)

	一般會計歲入								A/B
	租稅 및 印紙收入 (A)	專賣 納付金	官業益金 및 官業收入	政府資產 整理收入	雜收入	公債金	前年度 剩餘金	合計 (B)	
1934~1936	10.2	2.0	0.5	0.2	2.4	6.7	0.7	22.9	44.4
1950	4,564	1,145	50	174	644		592	7,168	63.7
1955	7,960	1,143	138	83	498		1,443	11,264	70.7
1960	16,183	1,470	183	226	527		1,022	19,610	82.5
1965	30,496	1,804	157	246	1,699	1,972	1,358	37,731	80.8
1970	72,958	2,744	36	277	3,499	3,472	1,906	84,592	86.2
1975	137,527	3,405	42	304	7,857	52,805	12,793	214,734	64.0
1980	268,687	8,124	99	641	11,260	141,702	9,894	440,407	61.0
1985	381,988	108	225	1,631	25,865	123,080	7,028	539,926	70.7
1988	508,265	107	198	1,557	27,843	71,524	36,576	646,073	78.7
1989	549,218	95	225	3,068	22,124	66,385	31,363	672,478	81.7
1990	601,059	111	224	1,620	27,011	73,120	13,888	717,034	83.8
1991	598,203	119	236	1,341	38,355	67,299	24,347	729,905	82.0
1992	544,453	132	223	1,235	33,376	95,360	24,434	714,660	76.2
1993	541,262	143	247	1,229	57,342	161,740	9,686	777,312	69.6
1994	510,300	167	226	998	60,522	164,900	26,287	763,390	66.8
1995	519,308	163	224	2,744	43,409	212,470	27,254	805,572	64.5
1996	513,450	147	217	3,270	23,482	210,290	194	751,049	68.4

註: 1. 1994년까지는 決算(實績)額, 1995年은 補正後 豫算額임.

2. 1980년까지의 專賣納付金에는 日本專賣公社納付金이 포함됨.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表 Ⅲ-2〉日本の 國稅收入 構成의 年度別 比較

(單位: 億圓, %)

	1955		1960		1965		1970		1975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直接稅	4,811	51.4	9,784	54.3	19,416	59.2	51,344	66.1	100,583	69.3
소득세	2,787	29.8	3,906	21.7	9,704	29.6	24,282	31.2	54,823	37.8
원천분	2,141	22.9	2,929	16.3	7,122	21.7	17,287	22.2	39,663	27.3
신고분	646	6.9	977	5.4	2,581	7.9	995	1.3	15,160	10.5
법인세	1,921	20.5	5,734	31.8	9,271	28.3	25,672	33.0	41,279	28.5
회사임시특별세									1,374	0.9
상속세	56	0.6	123	0.7	440	1.3	1,391	1.8	3,104	2.1
재평가세	43	0.5	21	0.1	0	0.0				
기타	5	0.1	0	0.0					2	0.0
間接稅	4,552	48.6	8,226	45.7	13,369	40.8	26,388	33.9	44,460	30.7
주세	1,605	17.1	2,485	13.8	3,529	10.8	6,136	7.9	9,140	6.3
사당소비세	476	5.1	281	1.6	289	0.9	442	0.6	426	0.3
휘발유세	255	2.7	1,030	5.7	2,545	7.8	4,987	6.4	8,244	5.7
석유가스세							122	0.2	139	0.1
항공기연료세									183	0.1
물품세	269	2.9	822	4.6	1,379	4.2	3,395	4.4	6,825	4.7
트럼프류세			3	0.0	5	0.0	6	0.0	9	0.0
거래소세	2	0.0	6	0.0	25	0.1	49	0.1	97	0.1
유가증권거래세	8	0.1	111	0.6	82	0.3	158	0.2	668	0.5
통행세	24	0.3	43	0.2	42	0.1	122	0.2	345	0.2
입장세	144	1.5	164	0.9	104	0.3	135	0.2	26	0.0
자동차증량세									2,203	1.5
관세	270	2.9	1,098	6.1	2,220	6.8	3,815	4.9	3,733	2.6
돈세	3	0.0	8	0.0	29	0.1	51	0.1	67	0.0
일본은행권발행세	5	0.1	5	0.0	4	0.0	8	0.0	40	0.0
인지수입	233	2.5	506	2.8	827	2.5	2,187	2.8	4,798	3.3
일본전매공사납부금	1,182	12.6	1,465	8.1	1,793	5.5	2,723	3.5	3,380	2.3
지방도로세(특)	77	0.8	188	1.0	461	1.4	903	1.2	1,496	1.0
석유가스세(양여분)(특)					0	0.0	122	0.2	139	0.1
항공기연료세(양여분)(특)									33	0.0
자동차증량세(양여분)(특)									734	0.5
특별돈세(특)			11	0.1	36	0.1	63	0.1	84	0.1
원중유관세(특)							963	1.2	1,349	0.9
전원개발촉진세(특)									299	0.2
합 計	9,363	100.0	18,010	100.0	32,785	100.0	77,732	100.0	145,043	100.0

〈表 Ⅲ-2〉의 繼續

	1980		1985		1990		1991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直接稅								
소득세	201,628	71.1	285,170	72.8	462,971	73.7	463,073	73.3
원천분	107,996	38.1	154,350	39.4	259,955	41.4	267,493	42.3
신고분	82,353	29.0	122,495	31.3	187,787	29.9	195,710	31.0
법인세	25,643	9.0	31,855	8.1	72,168	11.5	71,783	11.4
법인특별세	89,227	31.5	120,207	30.7	183,836	29.3	165,951	26.3
상속세								
지가세	4,405	1.6	10,613	2.7	19,180	3.1	25,830	4.1
법인임시특별세								
間接稅 等							3,799	0.6
소비세	82,060	28.9	106,332	27.2	164,827	26.3	169,037	26.7
주세					46,227	7.4	49,763	7.9
담배세	14,244	5.0	19,315	4.9	19,350	3.1	19,742	3.1
사탕소비세			8,837	2.3	9,959	1.6	10,157	1.6
휘발유세	431	0.2	408	0.1	0	0.0	0	0.0
석유가스세	15,474	5.5	15,568	4.0	15,055	2.4	15,375	2.4
항공기연료세	149	0.1	155	0.0	157	0.0	154	0.0
석유세	488	0.2	521	0.1	641	0.1	690	0.1
물품세	4,041	1.4	4,004	1.0	4,870	0.8	4,883	0.8
트럼프류세	10,379	3.7	15,279	3.9	46	0.0	16	0.0
거래소세	5	0.0	4	0.0	0	0.0	0	0.0
유가증권거래세	152	0.1	111	0.0	413	0.1	388	0.1
동행세	2,087	0.7	6,709	1.7	7,179	1.1	4,430	0.7
입장세	637	0.2	753	0.2	(4)	-0.0	0	0.0
자동차증량세	54	0.0	50	0.0	0	0.0	0	0.0
관세	3,951	1.4	4,523	1.2	6,609	1.1	6,519	1.0
돈세	6,469	2.3	6,369	1.6	8,252	1.3	9,234	1.5
일본은행권발행세	89	0.0	86	0.0	89	0.0	91	0.0
인지수입	0	0.0	0	0.0	0	0.0		
일본전매공사납부금	8,409	3.0	11,126	2.8	18,944	3.0	17,488	2.8
소비세(양여분)(특)	8,081	2.8					12,111	1.9
지방도로세(특)	2,783	1.0	2,999	0.8	11,557	1.8	3,726	0.6
석유가스세(양여분)(특)	148	0.1	155	0.0	3,608	0.6	154	0.0
항공기연료세(양여분)(특)	89	0.0	95	0.0	157	0.0	125	0.0
자동차증량세(양여분)(특)	1,317	0.5	1,508	0.4	116	0.0	2,173	0.3
특별돈세(특)	111	0.0	107	0.0	2,203	0.4	111	0.0
원유등관세(특)	1,387	0.5	1,204	0.3	114	0.0	971	0.2
전원개발촉진세(특)	1,085	0.4	2,335	0.6	1,029	0.2	3,010	0.5
휘발유세(특)			1,110	0.3	2,917	0.5	5,341	0.8
석유임시특별세(특)					5,011	0.8	2,019	0.3
합 計	283,688	100.0	391,502	100.0	627,798	100.0	632,110	100.0

〈表 Ⅲ-2〉의 繼續

	1992		1993		1994		1995		199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直接稅	405,520	70.7	396,582	69.4	359,567	66.6	363,519	66.1	356,140	65.4
소득세	232,314	40.5	236,865	41.5	204,175	37.8	195,151	35.5	193,380	35.5
원천분	184,728	32.2	189,060	33.1	167,142	30.9	157,259	28.6	153,020	28.1
신교분	47,586	8.3	47,805	8.4	37,033	6.9	37,891	6.9	40,360	7.4
법인세	137,136	23.9	121,379	21.3	123,631	22.9	137,354	25.0	135,480	24.9
법인특별세	3,184	0.6	2,861	0.5	178	0.0	44	0.0	-	-
상속세	27,462	4.8	29,377	5.1	26,699	4.9	36,903	4.9	25,540	4.7
지가세	5,201	0.9	6,053	1.1	4,870	0.9	4,063	0.7	1740	0.3
법인임시특별세	223	0.0	46	0.0	14	0.0	-	-	-	-
間接稅	168,444	29.3	174,560	30.6	180,440	33.4	4	0.0	-	-
소비세	52,409	9.1	55,865	9.8	56,315	10.4	186,111	33.9	188,668	34.6
주세	19,610	3.4	19,524	3.4	21,127	3.9	57,901	10.5	59,480	10.9
담배세	10,199	1.8	10,298	1.8	10,398	1.9	20,610	3.7	21,110	3.9
사탕소비세	0	0.0	0	0.0	0	0.0	10,420	1.9	10,400	1.9
휘발유세	15,631	2.7	16,268	2.8	18,133	3.4	-	-	-	-
석유가스세	152	0.0	151	0.0	154	0.0	18,651	3.4	18,750	3.4
항공기연료세	729	0.1	768	0.1	816	0.2	153	0.0	150	0.0
석유세	5,054	0.9	4,907	0.9	5,243	1.0	855	0.2	870	0.2
물품세	8	0.0	6	0.0	4	0.0	5,131	0.9	5,350	1.0
트럼프루세	0	0.0	0	0.0	0	0.0	3	0.0	-	-
거래소세	359	0.1	444	0.1	413	0.1	-	-	-	-
유가증권거래세	3,125	0.5	4,551	0.8	3,905	0.7	438	0.1	470	0.1
동행세	0	0.0	0	0.0	0	0.0	4,791	0.9	3,660	0.7
입장세	0	0.0	0	0.0	0	0.0	-	-	-	-
자동차증량세	6,930	1.2	7,012	1.2	7,543	1.4	0	0.0	-	-
관세	9,155	1.6	8,809	1.5	9,076	1.7	7,837	1.4	8,050	1.5
돈세	89	0.0	86	0.0	87	0.0	9,500	1.7	9,680	1.8
일본은행권발행세	0	0.0	0	0.0	0	0.0	87	0.0	90	0.0
인지수입	15,706	2.7	15,991	2.8	17,519	3.2	-	-	-	-
일본전매공사납부금							19,413	3.5	19,250	3.5
소비세(양여분)(특)	13,102	2.3	13,966	2.4	14,079	2.6	14,475	2.6	14,870	2.7
지방도로세(특)	3,805	0.7	3,543	0.6	2,577	0.5	2,635	0.5	2,681	0.5
석유가스세(양여분)(특)	152	0.0	151	0.0	154	0.0	153	0.0	150	0.0
항공기연료세(양여분)(특)	133	0.0	140	0.0	148	0.0	155	0.0	158	0.0
자동차증량세(양여분)(특)	2,310	0.4	2,337	0.4	2,514	0.5	2,612	0.5	2,684	0.5
특별돈세(특)	111	0.0	108	0.0	109	0.0	109	0.0	113	0.0
원유 등 관세(특)	904	0.2	820	0.1	86	0.2	821	0.1	950	0.2
전원개발촉진세(특)	3,068	0.5	3,090	0.5	3,310	0.6	3,386	0.6	3,448	0.6
휘발유세(특)	5,528	1.0	5,725	1.0	5,948	1.1	5,976	1.1	6,304	1.2
석유임시특별세(특)	175	0.0	0	0.0	0	0.0	0	0.0	-	-
合計	573,954	100	571,142	100	540,007	100	549,630	100	544,808	100

註 : 1. 1991年 以前은 決算額, 1992年은 當初 豫算額임.

2. 入稅稅가 1961年까지는 特別會計에 포함되어 있음.

資料 :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3) 國稅의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率

國稅收入에서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率을 보면 戰前에는 間接稅 比重이 높았으나 戰後에는 直接稅 中心의 稅體系가 확립됨에 따라 直接稅 比重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후 直接稅, 특히 所得稅는 거의 매년 減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經濟의 高度成長으로 個人과 法人의 所得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所得稅와 法人稅의 稅收가 계속 증가하여 直接稅 比重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는 景氣의 沈滯로 企業收益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여 法人稅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源泉所得稅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에 間接稅 收入은 비교적 순조로웠으므로 直接稅 比率은 1974년의 73.9%로부터 69.3%로 減少하였다. 그후 經濟가 安定成長期로 접어들면서 高度成長期에 보였던 所得稅, 法人稅를 중심으로 한 直接稅 收入의 현저한 증가는 없었으며 增稅도 間接稅 中心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直接稅의 비율은 70% 전후를 유지하였고 1975년 말 경부터 다시 상승하여 1990년에는 다시 73.7%가 되었다(〈表 Ⅲ-3〉 참조).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稅制改革은 人口의 高齡化, 經濟의 國際化의 進展 등 장래의 전망을 고려하고 租稅에 관한 不公平感을 불식함과 동시에 所得, 消費, 資產 등에 관한 課稅를 적절히 組合함으로써 均형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4) 國民所得에 대한 租稅負擔率

國民所得에 대한 租稅負擔率은 〈表 Ⅲ-4〉에서 보는 바와 같다. 國稅와 地方稅를 합친 負擔率은 戰前에 15% 내외(1934~1936년 12.9%, 1941년 16.2%)였으나 戰後에는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20% 내외가 되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租稅負擔率은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23.1%에 이르렀다.

〈表 Ⅲ-3〉日本の 國稅收入 構成의 國際比較

(單位 : %)

	日本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直接稅	間接稅等	直接稅	間接稅等	直接稅	間接稅等	直接稅	間接稅等	直接稅	間接稅等	直接稅	間接稅等
1934~1936	34.8	35.2	47.5	52.5	51.0	49.0	36.6	63.4	25.8	74.2	27.0	73.0
1950	55.0	45.0	80.0	20.0	54.1	45.9	32.6	67.4	34.7	65.3	13.4	86.6
1955	51.4	48.6	83.5	16.5	53.7	46.3	45.4	54.6	36.1	63.9	19.0	81.0
1960	54.3	45.7	83.2	16.8	53.4	46.6	47.3	52.7	37.9	62.1	20.8	79.2
1965	59.2	40.8	84.3	15.7	53.9	46.1	48.6	51.4	38.0	62.0	28.0	72.0
1970	66.1	33.9	87.1	12.9	55.2	44.8	47.9	52.1	34.7	65.3	28.0	72.0
1975	69.3	30.7	88.4	11.6	63.7	36.3	52.8	47.2	36.4	63.6	39.3	60.7
1980	71.1	28.9	90.6	9.4	59.2	40.8	52.2	47.8	40.0	60.0	52.9	47.1
1985	72.8	27.2	90.0	10.0	56.2	43.8	52.7	47.3	39.5	60.5	57.9	42.1
1988	73.2	26.8	91.1	8.9	53.6	46.4	53.0	47.0	39.1	60.9	56.5	43.5
1989	74.2	25.8	91.7	8.3	55.3	44.7	53.2	46.8	39.1	60.9	57.9	42.1
1990	73.7	26.3	91.8	8.2	59.2	40.8	50.1	49.9	40.0	60.0	57.2	42.8
1991	73.3	26.7	90.1	9.9	56.8	43.2	49.6	50.4	40.6	59.4	55.6	44.4
1992	70.7	29.3	90.3	9.7	55.6	44.4	49.8	50.2	39.7	60.3	58.5	41.5
1993	69.4	30.6	90.5	9.5	53.6	46.4	47.6	52.4	40.2	59.8	59.4	40.6
1994	66.6	33.4	90.3	9.7	53.5	46.5	47.1	52.9	39.3	60.7	54.2	45.8
1995	66.1	33.9										
1996	65.4	34.6										

註 : 1. 1992年은 當初 豫算임.

2. 독일은 1990년까지는 舊西獨資料이고 1991년부터는 통일후 독일자료임.

3. 日本을 제외한 국가의 1995년, 1996년 자료 수취는 어려움.

資料 : 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 1996.

〈表 Ⅲ-4〉 日本의 國民所得에 대한 租稅負擔率

(單位: 億円, %)

	國民所得 (A)	租稅負擔額			租稅負擔率	
		國稅(B)	地方稅	合計(C)	國稅(B/A)	合計(C/A)
1934~1936	144	12	6	19	8.5	12.9
1950	33,815	5,702	1,883	7,585	16.9	22.4
1955	69,733	9,363	3,815	13,178	13.4	18.9
1960	134,967	18,010	7,442	25,452	13.3	18.9
1965	268,270	32,785	15,494	48,279	12.2	18.0
1970	610,297	77,732	37,507	115,239	12.7	18.9
1975	1,239,907	145,043	81,548	226,591	11.7	18.3
1980	1,995,902	283,688	158,938	442,626	14.2	22.2
1985	2,595,898	391,502	233,165	624,667	15.1	24.1
1988	2,995,894	521,938	301,169	823,107	17.4	27.5
1989	3,197,384	571,361	317,951	889,312	17.9	27.8
1990	3,443,293	627,798	334,504	962,302	18.2	27.9
1991	3,598,071	632,110	350,727	982,837	17.6	27.3
1992	3,610,000	573,964	345,683	919,647	15.9	25.5
1993	3,588,945	571,142	335,913	907,055	15.9	25.3
1994	3,640,000	540,007	327,084	867,091	14.8	23.8
1995	3,766,000	537,048	336,495	873,543	14.3	23.2
1996	3,842,000	544,808	343,108	887,916	14.2	23.1

註: 1. 1980年은 國稅에 日本專賣公社의 納付金이 포함되어 있음. 1955年 以後 地方讓與稅(徵收上 편리 國稅와 동시에 受納, 地方公共團體의 收入으로 함) 등 特別會計의 歲入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2. 國民所得은 1985年 기준임.

3. 1991年은 修正豫算, 1992年은 當初 豫算額임.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나. 國稅行政 組織의 概要

國稅廳은 전후의 세무행정 of 혼란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급속하게 기구가 확대된 대장성 주세국으로부터 세무집행 부분을 분리하여 內國稅(關稅 등은 제외)의 賦課徵收를 담당하는 行政機關으로 設置되었다. 그리하여 국세청-국세국-세무서라고 하는 계통적인 세무기구가 확립되었다¹¹⁾.

1991년 7月 國稅廳의 機構改革으로 賦課擔當部門을 종래의 直稅·間稅라는 稅目別 編成에서 個人·法人이라는 納稅者別 編成으로 개편되었다. 즉, 國稅廳 本廳 및 國稅局에는 直稅部와 間稅部를 課稅部(中規模 以上의 國稅局에 있어서는 課稅 第1부와 課稅 第2部)로 편성하고 稅務署에서는 所得稅·資產稅·源泉所得稅 部門 및 間稅部門을 個人稅 部門과 法人稅 部門으로 再編하였다.

1) 國稅廳의 機構

國稅廳 산하에는 11個 國稅局(東京·關東信越·大阪·札幌·仙台·名古屋·金澤·廣島·高松·複岡·熊本), 오키나와 國稅事務所와 524개의 세무서가 있다.

國稅廳은 長官官房, 課稅部, 徵收部 및 調査查察部の 4部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稅務行政을 執行하기 위한 企劃·立案과 稅法 解釋의 統一을 기하여 이를 國稅局에 指示하고 國稅局과 稅務署의 事務를 指揮監督하는 官廳이다. 또한 稅務行政의 中央官廳으로서 各省廳 기타 關係機關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다([圖 III-1] 參照).

國稅局은 國稅廳과 거의 같은 機構를 가지고 國稅廳의 指揮監督을 받아서 一定한 管轄區域으로 분할되어 있는 稅務署를 指揮監督하는 機關이다. 다만 特定한 事務에 대하여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넘어 직접 집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調査查察部에서 큰 法人의 法人稅 및 消費稅의 조사나 內國稅의 犯則事件의 調査를 할 때 課稅部의 一部에서는 大規模 事業者의 酒稅, 揮發油稅 등을 調査하거나 徵稅部의 一部는 大型納稅者 등의 滯納整理를 담당한다.

-
- 11) 大藏省 主稅局은 租稅制度의 調査, 企劃, 立案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또한 關稅에 관한 制度의 調査, 企劃, 立案 및 賦課徵收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大藏省의 關稅局과 그 下部機關인 稅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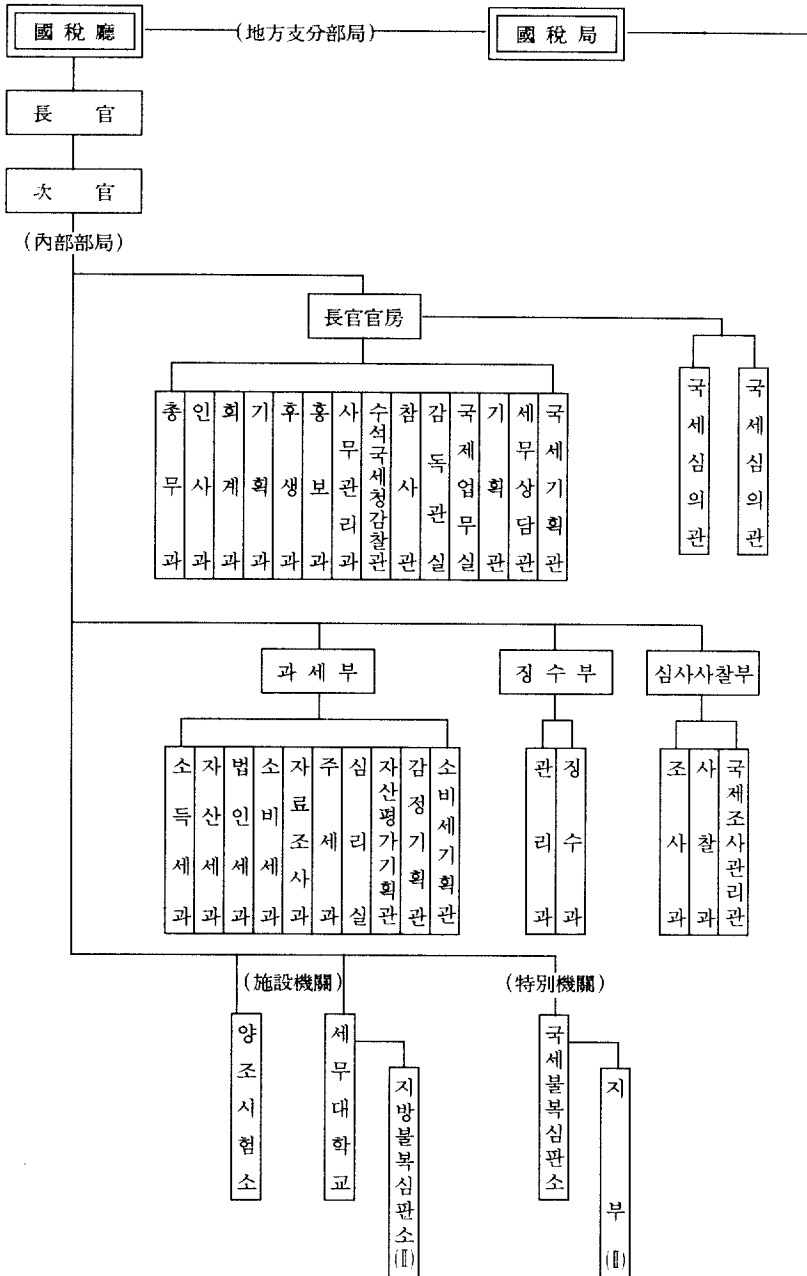
오끼나와의 복귀에 따라 1962年 5月 15日에 創設된 오끼나와 國稅事務所는 國稅局과 거의 같은 機能을 가지나 그 規模는 國稅局보다 작고 部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稅務署는 內國稅를 賦課徵收하는 第1線의 行政機關으로서 納稅者와 가장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各 稅務署는 各의 管轄區域 內에서 모든 內國稅의 賦課徵收를 행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그 機構는 規模의 大·小에 따라서 다르나 一般的으로 署長 밑에 ① 稅務署 內의 調整, 庶務, 會計事務를 담당하는 總務課, ② 內國稅의 債權管理事務, 滯納整理事務를 擔當하는 管理·徵收部門, ③ 所得稅, 個人事業者의 消費稅, 資産稅 및 資料情報事務를 擔當하는 個人稅部門, 法人稅와 法人의 消費稅, 源泉所得稅 및 間接諸稅를 담당하는 法人稅部門이 설치되어 있다 (규모가 큰 稅務署에서는 個人세부문과 資産세를 담당하는 資産과세부문이 분리되어 있으며, 소규모 세무서에는 總務課와 調查部門을 1課 1部門制가 채택되고 있다). 各 部門에는 統括國稅調查官(統括國稅徵收官)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략 7~10名의 職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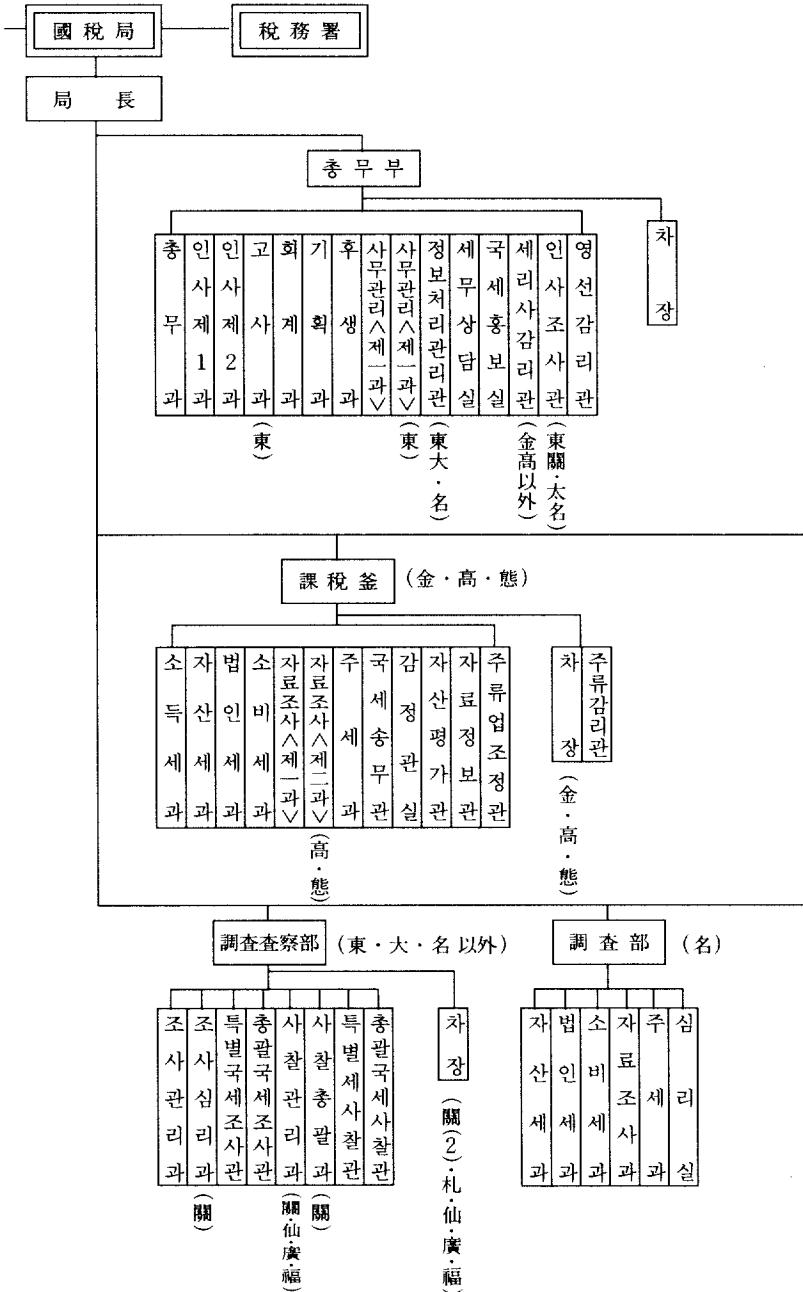
또한 全國의 主要 署에는 內國稅의 弘報(廣報)事務를 담당하는 廣報官과 酒稅·酒類產業 行政事務를 담당하는 酒類指導官이 설치되어 있다. 규모가 큰 稅務署에는 課와 部門 外에 署長을 보좌하기 위하여 副署長이, 또한 大規模 納稅者의 調査와 大規模 滯納整理 등을 담당하는 特別國稅調查官과 特別國稅徵收官이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法人數 및 人口의 증가로 課稅對象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고 수준 높은 行政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10年間 都市部의 大規模 署를 分割하여 13個署를 增設하였다.

以上の 기구 이외에 國稅廳 산하에는 施設機關으로서 酒類의 分析과 釀造의 試驗研究를 하는 釀造試驗所, 稅務職員의 教育기관인 稅務大學校가 있고 特別한 기관으로 納稅者의 不服申請을 審査하는 國稅不服審判所가 있다. 各 國稅局 및 오끼나와 事務所의 所在地에 稅務大學校는 地方研修所를, 國稅不服審判所는 支部를 설치하고 있다([圖 III-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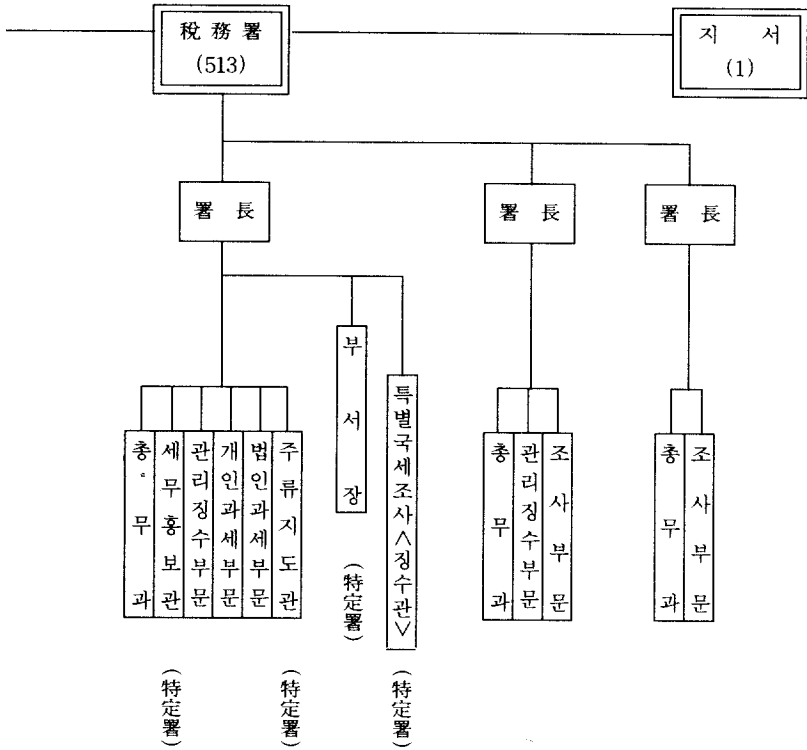
[圖 Ⅲ-1] 日本 稅務行政機構圖(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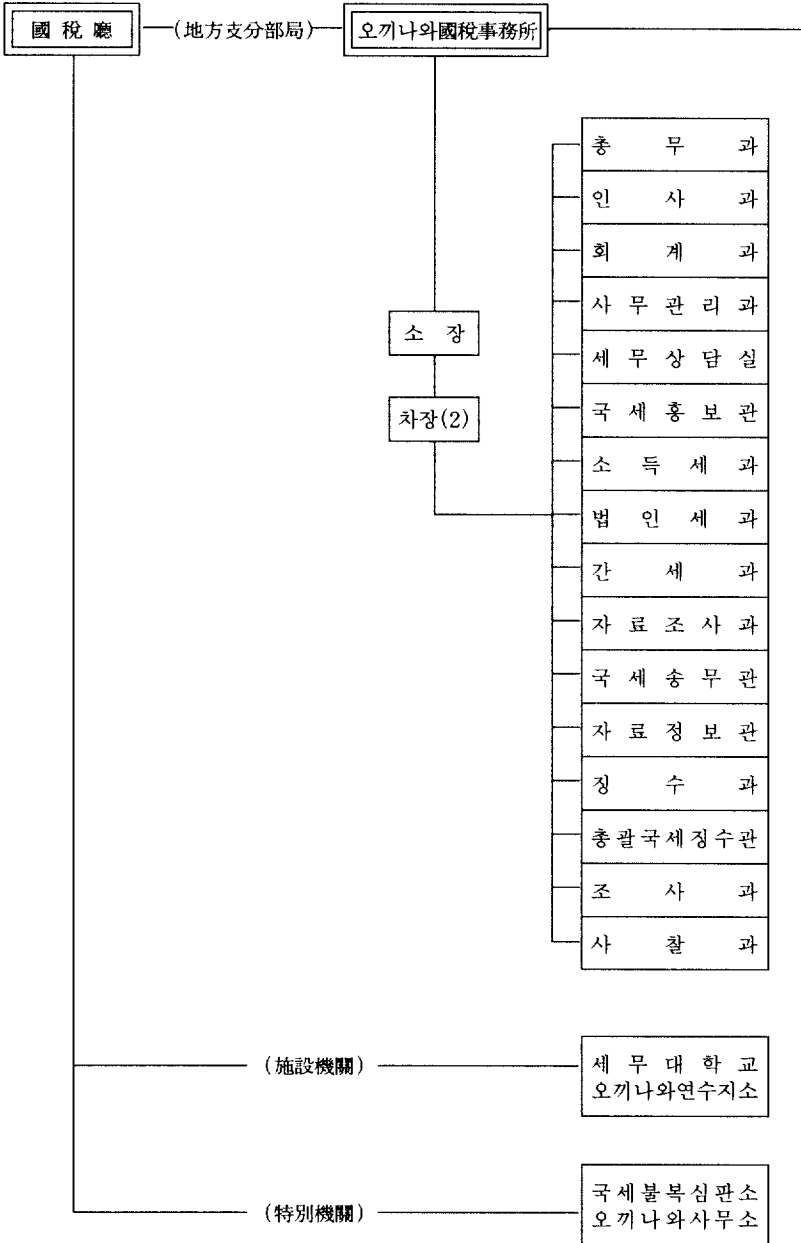
[圖 III-1]의 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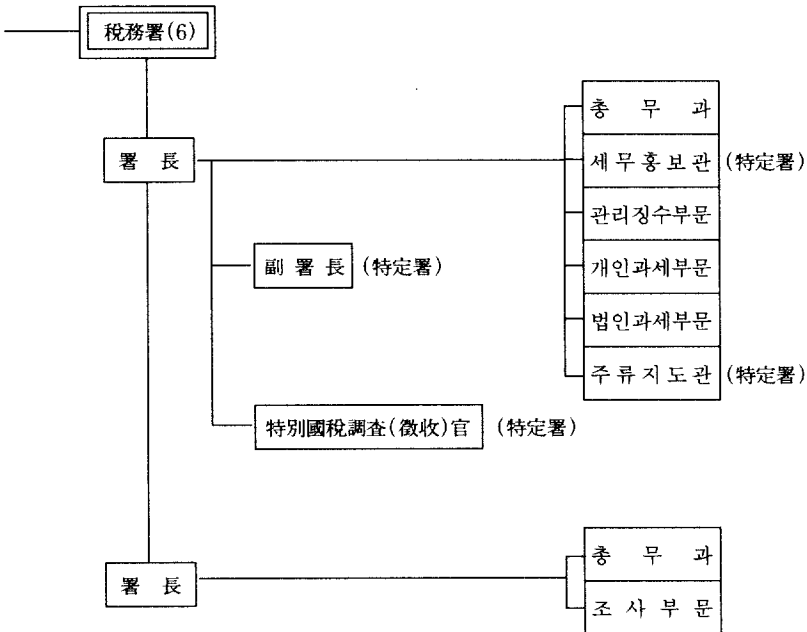
[圖 III-1]의 繼續



[圖 III-1]의 繼續



[圖 III-1]의 繼續



2) 國稅廳의 定員

2차대전 후의 심한 인플레이션과 새로운 稅制에 익숙하지 못하여 稅務行政이 혼란스러웠던 時期(1950년)에는 國稅廳의 定員이 6만 2천명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行政整理 등에 의하여 1954년에는 5만 300명으로 축소되었다. 그 후 1965~1975년에 걸쳐 어려운 行·財政事情으로 5만 2천명대에 머물렀으나 1989년에 消費稅의 도입과 1991年 地價稅가 도입되면서, 1992년에는 定員이 5만 6천명대가 되었고, 1995年 현재 5만 6,961명에 이르고 있다.

組織의 配置狀況은 全體의 79.1%에 해당하는 4만 5,049명이 稅務署에 배치되고, 國稅廳에 601명(1.0%), 國稅局 및 오기나와 國稅事務所 1만 450명(18.4%), 釀造研究所 37명(0.1%), 稅務大學校 368명(0.6

%), 國稅不服審判所 456명(0.8%)으로 되어 있다.

職員의 事務別 配置狀況을 보면 全職員의 67%가 所得稅, 消費稅 等の 賦課事務에, 14%가 國稅債權의 管理와 徵收事務에, 나머지 19%가 總務事務 等に 從事하고 있다.

다. 稅務運營方針

申告納付制度는 納稅者 스스로 자기의 精確한 課稅標準과 稅額을 계산하여 稅務서에 申告하고 그 申告한 稅額을 납부하는 制度이다. 申告納付制度下에서 稅務行政運營의 課題는 納稅者 모두가 租稅의 意義를 認識하여 適正한 申告와 納稅를 함으로써 自主적으로 納稅義務를 수행토록 하는 데 있다.

稅務運營方針은 稅務運營의 基本的인 目標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施策 등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基本方針으로 하고 있다.

1) 納稅者가 自進하여 適正한 申告와 納稅를 할 수 있도록 誘導할 것

納稅者가 스스로 精確한 申告와 納稅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納稅者가 租稅의 意義를 이해하여 그 義務를 自覺함과 동시에 稅法을 이해하여 精確한 計算을 위한 記帳方法 등의 知識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弘報, 說明會, 稅務相談을 통하여 稅法 등에 대한 知識의 보급과 동시에 記帳慣習에 대한 敎育으로 納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課稅標準의 調査에 있어서는 事實關係를 精確하게 파악하여 納稅者의 誤謬를 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계기로 納稅者가 納稅知識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納稅意識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適正한 課稅의 實現에 努力할 것

適正한 自進申告와 納稅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國民의 納稅道義를 提高하여 같은 입장에 있는 납세자에게는 동일하고 適正한 納稅義務를 부과하는 것을 保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申告가 適正하지 않은 納稅者에 대해서는 실시한 조사를 행하여 그 誤謬를 是正하여야 하며, 특히 惡質的인 脫稅에 대하여는 嚴正한 措置를 취해야 한다.

3) 紀綱을 바르게 하고 밝고 能率的인 職場을 만들 것

國民의 納稅道義를 높여 稅務에 대한 納稅者의 信賴와 協力을 얻기 위해서는 職務에 대한 집행이 매우 公正해야 하며 職務態度 또한 規律的이고 能率的이어야 한다. 職員은 각자가 國家財政을 擔當하고 있다는 것에 自矜心을 가지고 適正한 態度로 自身을 規律해야 한다. 이것이 納稅者에게 가깝고 친밀한 稅務署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 徵稅費

徵稅費(人件費, 旅費, 物件費 등 稅務의 執行에 요하는 一切의 費用)는 모두 一般會計 歲出豫算에 計上된다. 1995년의 徵稅費 當初 豫算總額은 6,228億圓인데 人件費가 4,990億圓으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物件費 890億圓, 旅費 203億圓 등으로 되어 있다. 國稅廳이 징수하는 租稅 및 印紙收入에 대한 徵稅費 比率를 稅收 100圓에 대한 징세비는 1950년에 2.79圓이었던 것이 그 후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으나 하향경향을 나타내어 1995년에는 1.31圓이 되었다.

이와 같이 徵稅費用의 저하는 稅收確保의 效率性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徵稅費는 稅負擔의 公平確保를 위한 原價이므로 단순히 稅收額과 비교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측면도 있다.

〈表 Ⅲ-5〉 日本의 徵稅費(累年比較)

(單位: 百萬元)

	100円當 費用(A /B:円)	人件費	旅費	物件費	施設費	補助金 委託費	郵政事 業特別 會計에 移入	其他	計(A)	指數	租稅 및	指數
										(1950年 100基準)	印紙收入 (B) (億円)	(1950年 100基準)
1950	2.79	5,433	2,332	3,009	362	125	868	74	12,203	100	4,371	100
1955	2.32	12,804	1,527	1,990	131	93	645	68	17,258	141	7,454	171
1960	1.81	21,365	1,895	2,481	162	86	437	90	26,516	217	14,676	336
1965	1.87	42,649	2,858	3,892	664	127	757	152	51,099	419	27,310	625
1970	1.40	81,828	4,589	6,583	684	170	1,251	292	95,397	782	68,006	1,556
1975	1.80	198,281	8,496	18,786	902	1,008	3,328	878	231,679	1,899	128,588	2,942
1980	1.40	296,472	14,255	30,377	1,469	1,858	4,799	1,694	350,924	2,876	249,913	5,718
1985	1.16	352,298	14,650	40,587	1,192	1,318	4,216	2,856	417,117	3,418	360,423	8,246
1988	0.99	399,206	15,433	53,956	1,076	1,505	3,764	2,370	477,310	3,911	482,359	11,035
1989	0.95	410,494	15,960	61,134	1,721	2,513	3,880	2,550	498,252	4,083	522,026	11,943
1990	0.90	424,939	19,161	63,587	1,107	2,486	3,946	2,795	518,021	4,245	575,266	13,161
1991	0.93	437,145	19,423	69,173	1,108	2,471	4,038	4,006	537,362	4,404	578,647	13,238
1992	1.06	451,562	19,340	72,180	2,446	2,461	4,307	4,314	556,610	4,561	524,170	11,992
1993	1.10	467,163	19,291	75,256	3,121	2,449	3,232	4,574	575,086	4,713	522,503	11,954
1994	1.23	480,436	19,473	85,197	4,623	2,433	2,857	4,712	599,730	4,915	487,480	11,153
1995	1.26	493,740	19,544	88,035	8,641	2,246	2,411	4,891	619,688	5,078	493,615	11,293
1996	1.31	504,248	20,412	103,167	4,230	2,420	2,145	4,929	641,553	5,257	489,184	11,192

註: 1. 1994년까지는 決算額, 1995년부터는 當初 豫算額임.

2. 租稅 및 印紙收入은 國稅廳所管 歲入額임.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2. 申告納稅制度와 調査

國稅廳은 歲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內國稅의 賦課徵收라는 稅務執行을 담당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 調査와 指導의 一體化, 稅務相談의 充實, 弘報活動의 積極化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納稅하는 申告納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어 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効果적인 稅務調査와 情報管理를 통하여 납세자와의 사이에 適當한 緊張關係를 유지하면서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납세환경의

정리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租稅收入을 확보하기 위하여 租稅債權을 정확하게 管理함과 동시에 滯納處分을 執行하는 등 정확하고 확실한 徵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申告納稅制度和 青色申告制度

申告納稅制度는 자신이 행한 신고에 의하여 第1次로 稅額이 확정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것이 適正하게 機能하기 위해서는 納稅者의 自發的인 納稅 意慾과 함께 納稅者가 계속적이고 바른 記帳을 하고 客觀的인 計數에 기초하여 所得을 計算하는 것이 基本的 前提가 되어 있다.

이 制度는 1947년에 美國 稅制의 영향으로 採擇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稅務官廳의 行政處分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稅額이 결정되는 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 초기 당시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申告納稅制度가 導入되고부터 50여년 이 지난 현재에는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背景에는 ① 申告納稅制度의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1950년에 青色申告制度가 創設되었다는 것 ② 1984년에는 申告納稅制度를 더욱 정착시키기 위하여 白色申告者에 대한 記錄保存制度, 記帳制度, 收支內譯書添附制度가 제정되었다는 것 ③ 稅理士會, 青色申告會 등 關係 民間團體의 협력을 얻어 記帳方法 등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納稅者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에 노력하여 왔다는 것 ④ 申告漏落額이 크다고 인정되는 者를 대상으로 하여 철저한 稅務調査를 해온 것 등 制度·執行 兩面에서 이 制度의 정착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青色申告制度

申告納稅制度가 適正하게 機能하기 위해서는 納稅者의 繼續的이고 올바른 記帳이 基盤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青色申告制度는 이러한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1950년에 슈프(Shoup) 勸告에 의하여 稅制의 全面的인 개혁의 일환으로 創設된 제도이다.

青色申告制度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個人 또는 法人이 미리 稅務署長의 承認을 받아서 青色의 申告用紙에 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納稅者에게는 帳簿書類를 비치하고 일정 수준의 記帳을 계속함과 同時에 保存할 義務가 있는 한편 다른 納稅者와 비교하여 稅制上 有利한 所得金額의 계산이나 취급이 인정되는 것을 활자로 하는 것으로서 日本의 申告納稅制度에 있어서 中心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現在 青色申告制度는 納稅者 사이에 정착되고 있어 青色申告者는 個人이 449만명, 法人이 253만社에 달한다(〈表 Ⅲ-6〉, 〈表 Ⅲ-7〉 參照).

2) 記帳制度

1984年の 稅法改正에서 申告納稅制度의 定着과 課稅의 公平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하여 青色申告 이외의 者(白色申告者)에 대해서도 記帳制度가 설치되었다. 그 내용은 事業 등을 하는 個人 白色申告者에 대해서는 ① 去來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受領한 帳簿書類를 保存하고(記錄保存制度) ② 事業 등의 所得金額이 一定額(300만円)을 넘는 者에 대해서는 거래에 관하여 簡易한 記帳을 해야 하며(記帳制度) ③ 確定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등의 總收入金額 및 必要經費의 內容을 記載한 書類를 申告書에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收支內譯添附制度)이다.

記帳制度의 適用者數(個人)는 1995年 3月 31日 現在 106만명이다(〈表 Ⅲ-8〉 參照).

間接稅에 대하여도 1962年 4月부터 賦課課稅制度를 대신하여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表 Ⅲ-6〉 日本의 個人 青色申告者數 推移

(單位：千名, %)

	青色申告者數				(參考) 申告納稅額이 있는 營庶業所得者 狀況		
	營庶業 所得者	農業 所得者	不動產·山 林所得者	合 計	青色申告者와 白色申告者의 合計	青色 申告者	青色申告 者의 比重 F/E
	A	B	C	D	E	F	G
1950	94	17	0	111	2,000	82	4
1955	491	26	1	518	1,105	353	32
1960	551	24	4	579	1,100	366	33
1965	759	18	17	794	1,349	449	33
1970	1,540	35	36	1,611	2,062	1,000	48
1975	2,168	64	189	2,421	2,055	1,093	53
1980	2,688	118	401	3,207	2,622	1,354	52
1985	2,998	203	610	3,811	2,947	1,497	51
1988	3,089	255	772	4,116	3,150	1,630	52
1989	3,098	265	831	4,194	3,094	1,625	53
1990	3,078	274	893	4,245	3,171	1,648	52
1991	3,050	283	952	4,285	3,204	1,641	51
1992	3,045	294	1,020	4,359	3,151	1,601	51
1993	3,053	304	1,081	4,439	2,972	1,481	50
1994	3,056	313	1,126	4,494	2,850	1,421	50
1995	3,061	321	1,166	4,548	2,727	1,367	

註：1. A의 營庶業所得者라 함은 事業所得이 있는 者 중에서 事業所得이 農業所得만
으로 이루어진 者를 제외한 數, 예컨대 商工業者, 醫師, 辯護士를 의미함. C의
不動產·山林所得者라 함은 事業所得이 없는 者로서 不動產所得 또는 山林所
得이 있는 者임.

2. 調査時點：A~D는 各 年度의 3月 15日 現在, E~G의 1950年은 4月 30日 現
在, 1955~1965年은 翌年 7月 31日 現在, 1960年은 翌年 3月 15日 現在, 1975
年은 翌年 4月 30日 現在, 1980年 以後는 翌年 3月 31日 現在임.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表 Ⅲ-7〉 日本의 法人數 및 青色申告 法人數 推移

(單位: 個, %)

	法人數(A)	清算中인 法人數(B)	青色申告法人數 (C)	青色申告普及率 (C/(A+B) 또는 C/A)
1950	287,860	14,888	144,674	47.8
1955	489,593	21,702	347,289	67.9
1960	634,363	22,735	458,171	69.7
1965	840,560	27,576	652,597	75.2
1970	1,111,026	25,328	外16,415 919,368	82.7
1975	1,481,999	29,713	外21,050 1,304,537	88.0
1980	1,783,921	32,509	外23,371 1,612,117	90.4
1985	2,030,185	45,283	外33,432 1,834,226	90.3
1988	2,247,722	36,731	外26,400 2,003,410	89.1
1989	2,353,719	43,730	外28,802 2,111,253	89.7
1990	2,518,444	40,004	外26,227 2,241,800	89.0
1991	2,602,063	40,642	外27,392 2,371,408	91.1
1992	2,665,429	41,498	外28,381 2,442,103	91.6
1993	2,708,619	41,367	外29,782 2,493,459	92.1
1994	2,750,834	44,284	外31,474 2,527,959	91.9
1995	2,700,088	133,802	外86,868 2,500,626	92.6

註: 1. 「法人數(A)」는 休眠法人은 포함되고 清算法人은 제외됨.

2. 「青色申告法人數(C)」의 外는 清算中 法人의 青色申告 法人數를 나타냄.

3. 「青色申告普及率」의 1965年 이전은 清算中法人을 포함하고 1970年 이후는 清算法人은 제외함.

4. 調査時點은 翌年 6月 30日 現在임.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税制行政』, 1996.

〈表 Ⅲ-8〉日本の 記帳制度 適用者數(個人) 推移

(單位：千名)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462	508	579	678	811	942	1,042	1,067	1,044	1,058	1,054

註：調査時點은 各 年 3月 31日 現在임.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나. 主要稅目的 概要

1) 所得稅

가) 申告

1994年の 確定申告者數는 1995年 3月 31日 현재 1,927만명으로 申告 納稅額이 있는 者가 802만명, 還付申告者가 863만명, 그 외의 者가 260만명으로 되어 있다(〈表 Ⅲ-9〉 參照).

〈表 Ⅲ-9〉日本の 所得稅 確定申告者數 推移

(單位：千名)

	申告納稅額이 있는 者	源泉還付申告者	左記 以外の 者	合 計
1982	6,579	5,516	1,734	13,829
1983	6,998	5,734	1,811	14,543
1984	7,129	5,707	2,004	14,840
1985	7,372	5,992	2,036	15,401
1986	7,695	6,544	2,061	16,301
1987	7,707	6,993	2,143	16,843
1988	7,797	6,963	2,155	16,915
1989	7,966	6,593	2,416	16,974
1990	8,547	6,633	2,127	17,308
1991	8,563	6,994	2,156	17,712
1992	8,578	7,346	2,186	18,110
1993	8,428	7,811	2,382	18,621
1994	8,223	8,673	2,377	19,274
1995	8,021	8,637	2,605	19,263

註：調査時點은 各 翌年 3月 31日 現在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申告稅額이 있는 者는 實務上, 事業所得額과 사업소득 이외의 所得金額을 비교하여 事業所得者(商工業者 및 農夫, 醫師, 辯護士 등을 말한다)와 그 외의 所得者로 크게 분류되고 事業所得者에 대하여는 營業所得者, 農業所得者 및 그 이외의 事業所得者로 구분된다. 1994년의 申告納稅額이 있는 納稅者數를 보면, 事業所得者가 312만명(營業所得者 223만명, 農業所得者 27만명, 그 이외의 事業所得者 62만명), 그 이외의 所得者가 510만명으로 되어 있다. 申告納付者 전체가 납부한 稅額은 3조 4,306億圓으로 事業所得者가 7,620億圓(營業所得者 3,983億圓, 農業所得者 382億圓, 其他 事業所得者 3,255億圓), 其他 所得者가 2兆 6,686億圓으로 되어 있다(〈表 Ⅲ-10〉 參照).

나) 納稅相談

地方公共團體, 關係民間團體 등의 협조하에 납세자가 稅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確定申告說明會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納稅者가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相談窓口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納稅相談에 응하고 있다.

다) 調査·指導

(1) 申告審理

대다수의 納稅者는 3月の 確定申告期限까지 신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申告書를 提出하지 않거나 부주의 등으로 잘못된 申告書를 제출 또는 고의로 過少申告를 하는 納稅者가 있다.

稅務署에서는 申告額의 適否檢討와 無申告者를 把握하기 위하여 申告審理를 하고 있는데 이는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支拂調書, 稅務署가 수집한 과세상 참고가 되는 各種 資料의 모든 정보를 各 納稅者別로 分類整理하여 이들 자료정보와 申告內容을 對查(check)하고 신

〈表 Ⅲ - 10〉日本の 所得稅 納稅者數 및 申告納稅額 推移

(單位 : 千名, 億円)

		事業所得者			其他所得者	合 計
		營 業	農 業	其他事業		
納稅者數	1982	2,217	203	546	3,613	6,579
	1983	2,275	266	602	3,855	6,998
	1984	2,257	334	629	3,909	7,129
	1985	2,281	315	666	4,110	7,372
	1986	2,312	318	701	4,363	7,695
	1987	2,346	245	703	4,413	7,707
	1988	2,447	239	704	4,408	7,797
	1989	2,423	231	670	4,641	7,966
	1990	2,505	250	666	5,127	8,547
	1991	2,521	236	683	5,123	8,563
	1992	2,465	243	686	5,184	8,578
	1993	2,302	214	670	5,243	8,428
	1994	2,226	272	624	5,100	8,223
1995	2,129	195	599	5,098	8,021	
申告納稅額	1982	3,399	168	6,379	15,542	25,488
	1983	3,594	238	6,265	16,685	26,782
	1984	3,677	321	5,788	17,619	27,405
	1985	3,748	312	5,230	19,522	28,811
	1986	4,074	356	5,507	23,734	33,670
	1987	4,446	296	5,430	31,655	41,827
	1988	5,011	345	5,215	32,677	43,248
	1989	5,907	327	4,846	42,557	53,637
	1990	6,623	427	4,419	54,554	66,023
	1991	6,598	491	4,192	54,471	65,752
	1992	5,923	395	4,265	30,310	40,893
	1993	5,049	404	4,214	32,928	42,594
	1994	3,983	382	3,255	26,686	34,306
1995	3,947	273	3,410	27,016	34,647	

註 : 調査時點은 各 翌年 3月 31日 現在임.

資料 : 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税制行政』, 1995.

고 내용에 관하여 세밀한 分析 · 檢討를 하는 것이다.

(2) 調査 · 指導

申告審理의 結果, 申告額에 명백한 誤謬가 있으면 納稅者에게 그 오류를 지적하여 修正申告書를 제출케 하고 申告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申告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期限 後 申告書를 提出토록 한다. 納稅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稅務署長은 申告에 誤謬가 있는 者에게는 更正處分을, 無申告者에게는 決定處分을 한다.

또 많은 脫漏所得이 있다고 認定되거나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調査對象으로 選定하여 實地調査를 한다. 특히 많은 脫漏所得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해 數日間の 調査로서는 確實한 調査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調査를 하게 된다. 調査對象이 몇개 署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고 不正의 手法이 매우 복잡한 것 등에 대하여는 稅務署의 特別國稅調査官과 國稅局의 資料調査課에서 철저한 調査를 한다. 1991年 7月の 機構改革에 의하여 종래의 稅目別에서 納稅者別의 體制로 개편 이후에는 所得稅와 消費稅를 同時 調査를 하고 있다.

調査方法은 반드시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그 對象者의 業種이나 事業의 規模, 記帳狀況 등에 따라 가장 적절한 方法을 구사하여 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去來의 廣域化·複雜化나 納稅者의 不正方法의 巧妙化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나 去來銀行에 대한 預貯金 등의 調査도 하고 있다.

또한 調査時에는 納稅者의 非理를 지적하여 그것을 시정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調査의 내용을 納稅者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納稅者가 稅務知識을 높여 이후에는 自主的으로 적정한 신고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調査結果, 調査對象者가 속하는 業種에 공통적으로 같은 오류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같은 業種에 속하는 다른 納稅者에 대해서도 같은 오류가 없는가의 與否를 자진해서 검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法人稅

日本の 法人數는 1995年 6月 30日 現在 약 275만개이다(〈表 Ⅲ-11〉參照). 이들 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조사 및 지도를 통하여 적정한 申告

〈表 Ⅲ-11〉日本の 法人 現況

(單位: 個)

	普通法人	外國法人	人格없는 社團 等	公益法人 等	協同組合 等	合 計
1950	238,531	(不明)	-	(不明)	(不明)	287,387
1955	438,995	489	-	812	42,884	483,180
1960	587,453	528	760	2,036	44,586	634,363
1965	790,848	742	975	3,208	44,787	840,560
1970	1,053,485	955	1,327	5,535	49,724	1,111,026
1975	1,413,402	1,111	1,936	9,845	55,705	1,481,999
1980	1,706,479	1,105	2,862	13,017	60,458	1,783,921
1985	1,946,119	1,177	4,454	18,131	60,310	2,030,185
1988	2,163,426	1,118	4,772	19,920	58,486	2,247,722
1989	2,268,850	1,208	4,887	20,655	58,119	2,353,719
1990	2,433,226	1,220	5,019	21,101	57,878	2,518,444
1991	2,516,185	1,354	5,168	21,609	57,747	2,602,063
1992	2,578,816	1,341	5,399	22,208	57,665	2,665,429
1993	2,621,567	1,422	5,541	22,724	57,365	2,708,619
1994	2,663,334	1,554	5,743	23,174	57,029	2,750,834
1995	2,612,107	1,430	6,044	23,742	56,765	2,700,088

註: 1. 1950年 및 1955年은 翌年 3月 31日 現在, 그 외는 翌年 6月 30日 現在の 法人 數임.

2. 清算中인 法人數는 除外함.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 1996.

納稅制度를 추진하기 위하여 稅務署에서는 모든 法人을 稅務에 대한 誠實性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양상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지도를 하는 소위 質的管理를 실시하고 있다.

적정한 신고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그 申告를 信賴히 처리하여 이에 응답하는 한편, 常時 注意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有效한 資料情報의 수집을 계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調査의 必要度를 확인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法人稅의 調査는 원칙적으로 資本金 1億圓 이상의 大法人과 外國法人에 대해서는 國稅局의 職원이 담당하고 그 외의 法人에 대하여는 稅務署

의 職員이 조사하고 있다. 稅務當局의 調査에 의하여 申告額이 정확하지 않다고 判明된 경우나 申告書를 提出하지 않은 경우에 稅務署長은 그 調査額에 기초한 更正·決定處分 또는 修正申告 期限後 申告를 尊重하게 된다. 또한 適正한 申告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稅務知識의 普及과 申告에 관한 具體的인 計算 및 節次의 指導, 稅務에 대한 相談 등 納稅者의 指導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가) 申告

法人은 원칙적으로 事業年度 終了日의 翌日부터 2개월 이내에 稅務署長에게 申告書를 제출해야 한다. 申告狀況件數를 <表 Ⅲ-12>에서 살펴 보면, 申告義務가 있는 法人 중에 申告書를 제출한 法人의 比率는 1950년에는 58.5%였던 것이 1955년에는 85.1%로 상승하였고, 현재는 거의 모든 法人이 自主的으로 申告書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法人稅의 總稅額을 納稅者가 신고한 稅額(申告稅額)과 調査를 기초로 稅務署長이 追徵한 稅額으로 분류하면, 申告稅額의 占有比가 1950년에는 68.9%였으나, 1965년에는 91.6%, 1975년에는 94.2%로 增加하였고, 現在에는 그 대부분이 納稅者의 自主的인 申告稅額으로 분류된다(<表 Ⅲ-13> 參照).

1947년에 申告納稅制度를 채택한 이후 40년 이상이 지난 現在에는 自主申告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는 稅務署의 적절한 지도와 철저한 調査 그리고 1950년부터는 靑色申告制度를 채택하여 靑色申告法人에게 稅法上의 特典을 부여한 것이 영향이 컸으며 또한 法人會, 稅理士會 등 關係 民間團體의 協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表 Ⅲ-12〉日本の 法人稅 申告狀況 推移

(單位：千件, %, 億円)

	要申告件數 (A)	申告 (B)	申告比率 (B/A)	(B)中 所得이 있는 申告分		申告分	
				件數(C)	比率(C/B)	所得金額	缺損金額
1950	448	262	58.5	138	52.7	(不明)	(不明)
1955	538	458	85.1	246	53.7	4,270	(不明)
1960	674	591	87.7	382	64.6	15,599	1,952
1965	850	780	91.8	451	57.8	27,176	7,290
1970	1,105	1,031	93.3	672	65.2	80,003	9,313
1975	1,477	1,367	92.6	723	52.9	123,927	44,177
1980	1,787	1,633	91.4	814	49.8	255,548	39,096
1985	2,060	1,858	90.2	807	43.4	324,615	57,844
1988	2,234	2,050	91.8	960	46.8	498,307	66,118
1989	2,347	2,162	92.1	1,068	49.4	526,815	66,627
1990	2,469	2,290	92.8	1,146	50.0	531,223	103,400
1991	2,620	2,426	92.6	1,179	48.6	512,087	147,852
1992	2,688	2,479	92.2	1,088	43.9	426,428	183,497
1993	2,743	2,525	92.0	975	38.6	359,161	189,903
1994	2,790	2,558	91.7	925	36.2	357,631	196,707
1995	2,845	2,600	91.4	912	35.1	395,798	191,527

註：1960年 이전의 要申告件數는 前年度 末까지 申告期限이 到來된 法人으로써 申告書의 提出이 없고 未處理된 것을 포함.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 1996.

〈表 Ⅲ-13〉日本の法人税課税額推移

(單位：億円，%)

		申告税額(A)	更正・決定等に 의한 増減差税額(B)	合計(A+B) C	申告税額の比率 (A/C)
税務署 所管分	1950	142	151	293	48.5
	1955	426	187	613	69.5
	1960	1,559	374	1,933	80.7
	1965	2,944	617	3,561	82.7
	1970	9,493	863	10,356	91.7
	1975	16,399	1,362	17,761	92.3
	1980	30,602	1,983	32,585	93.9
	1985	37,674	2,610	40,284	93.5
	1988	59,453	3,757	63,211	94.1
	1989	68,106	4,168	72,274	94.2
	1990	68,507	4,434	72,941	93.9
	1991	64,885	4,186	69,071	93.9
	1992	54,699	3,956	58,655	93.3
	1993	47,959	3,399	51,357	93.4
1994	47,703	3,208	50,911	93.7	
1995	47,623	3,034	50,657	94.0	
國稅局 所管分	1950	495	136	631	78.4
	1955	1,254	115	1,369	91.6
	1960	4,317	180	4,497	96.0
	1965	5,667	173	5,840	97.0
	1970	15,766	379	16,145	97.7
	1975	24,274	1,130	25,404	95.6
	1980	53,294	1,152	54,446	97.9
	1985	77,793	1,773	79,566	97.8
	1988	120,502	2,216	122,717	98.2
	1989	118,305	2,579	120,884	97.9
	1990	107,972	2,490	110,462	97.7
	1991	94,994	2,952	97,946	97.0
	1992	78,121	2,137	80,258	97.3
	1993	67,667	1,776	69,442	97.4
1994	70,188	1,841	72,030	97.4	
1995	84,157	1,991	86,148	97.7	
合 計	1950	637	287	924	68.9
	1955	1,680	302	1,982	84.8
	1960	5,876	554	6,430	91.4
	1965	8,611	790	9,401	91.6
	1970	25,259	1,242	26,501	95.3
	1975	40,673	2,492	43,165	94.2
	1980	83,896	3,135	87,031	96.4
	1985	115,466	4,383	119,849	96.3
	1988	179,955	5,973	185,928	96.8
	1989	186,412	6,747	193,159	96.5
	1990	176,480	6,924	183,403	96.2
	1991	159,879	7,138	167,017	95.7
	1992	132,820	6,093	138,913	95.6
	1993	115,626	5,174	120,780	95.7
1994	117,981	4,959	122,941	96.0	
1995	131,968	4,844	136,802	96.5	

資料：國稅廳，『日本における税制行政』，1996

나) 調査

(1) 稅務署 所管法人

(가) 申告書의 審理

法人으로부터 제출된 신고서는 調査擔當部門에 회부되어 適正한 申告與否를 審理받게 된다. 申告內容의 審理는 同一 業種의 같은 규모인 法人의 申告內容과의 比較, 法人의 과거 課稅歷, 資料情報, 代表者의 生活狀況 등 다양한 角度에서 審理가 이루어진다.

이 申告內容의 審理를 確實하게 하기 위하여 調査擔當部門은 法人을 業種別·地域別로 分擔하여 分擔 法人에 대한 業種別 狀況, 商慣習, 採算狀況 등에 대하여 연구함과 동시에 각각의 法人에 經營特色 등의 探聞, 情報 등의 수집에 노력한다.

(나) 實地調査

審理의 結果, 申告가 過少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實地調査를 한다. 實地調査의 內容은 반드시 一律의인 것은 아니지만 먼저 調査時 帳簿의 記帳狀況, 書類의 保存狀況, 在庫品의 狀況 등을 把握한 후 상세한 帳簿調査가 행해진다. 최근에 經濟去來가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不正方法도 교묘해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去來 상대방에 대한 調査나 去來銀行에 대한 預貯金 등의 調査와 함께 法人 代表者의 生活狀況 調査도 한다.

調査는 稅務署 法人稅部門의 調査官이 하지만 특히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稅務署의 特別國稅調査官이 담당하며, 大量的이고 惡質的인 事案으로서 多角的인 調査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稅務署에 설치된 特別調査班이나 國稅局의 資料調査課가 調査하고 있다.

1967년부터는 實地調査에 有效한 資料의 收集 및 活用 추진을 위해 全國의 主要 稅務署에 專擔者를 두었다. 1991年 7月의 機構改革에 의하여 部門編成이 稅目別에서 納稅者別로 移行되면서 法人稅·源泉所得稅와

消費稅의 同時調査가 實施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大規模·惡質인 不正計算이 상정되는 法人 등 조사의 必要度가 높은 者에 대해 重點을 두고 效果的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消費稅의 觀點에서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確實하게 실시하고 있다.

(다) 指導

稅務署에서는 法人이 適正한 申告와 納稅를 自主적으로 할 수 있도록 各개 法人의 實情에 의거하여 個別指導 및 集合指導를 실시하여 申告內容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指導는 新設法人을 대상으로 하는 것, 改正法令 등의 說明會, 決算期別 指導 등의 啓蒙指導와 調査를 一體로 한 業種別(地域別) 指導가 있으며 指導의 時期, 場所, 回數 등에 대하여도 세심한 配慮를 하여 실시하고 있다.

(라) 調査實績

稅務署에서의 實地調査는 1994년에는 약 17만 4천件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 調査結果, 更正·決定 등을 한 件數는 12만 8천件이고 또한 不正計算을 하고 있었던 것은 4만 6천여件이었다.

(2) 國稅局 所管法人

法人이 제출한 申告書 중에 國稅局 所管인 것은 稅務署長이 國稅局長에게 송부하여 擔當部門에 회부된다. 擔當部門에서는 稅務署와 같은 方法으로 申告內容을 審理하지만 支店, 工場 등의 事業所가 國內외에 所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檢討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申告가 過少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게 되는데 對象法人의 規模가 크고 그 대부분이 機械化 會計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去來內容이 國際的이므로 稅務署 所管

法人에 比하여 많은 調査日數가 소요된다.

3) 地價稅

土地와 같이 有限하고 公共的 性格이 있는 資産에 대한 稅負擔을 適正·公平하게 하고, 土地를 자산으로서의 有利性을 감축하는 觀點에서 土地의 資産價値에 응하여 負擔시키는 地價稅法이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圖 III-2] 地價稅의 構造

$$\begin{array}{c}
 \left[\begin{array}{c} \text{當該年} \\ \text{1月 1日 現在의 價格} \end{array} \right] \\
 \\
 \left[\left[\begin{array}{c} \boxed{\text{保有土地}} - \boxed{\text{非課稅土地}} \end{array} \right] - \boxed{\text{基礎控除}} \right] \times \boxed{\text{稅率}} = \boxed{\text{地價稅 稅額}}
 \end{array}$$

地價稅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가) 地價稅는 個人 또는 法人이 保有하는 土地 등을 對象으로 하여 每年 課稅되는 稅金임. 課稅對象은 매년 1月 1日 午前 0時 現在에 國內에 있는 土地 등을 所有한 個人 또는 法人으로서 課稅價格이 基礎控除額을 초과하는 者이다.
- 나)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는 土地 이외에 借地權, 地上權, 一定의 地役權 등임. 다만 居住用에 供하는 土地와 農地, 森林의 土地 등, 一定한 公共·公益의인 用途에 供하는 土地 등은 原則적으로 課稅되지 아니한다. 또한 1m²당 更地價格이 3만円 이하인 土地 등은 課稅되지 아니한다.
- 다) 課稅價格은 當該年の 1月 1日 午前 0時에 소유한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價格의 合計額이다. 이 토지 등의 價格은 종래부터 相續稅

등의 財産評價에 사용되어 온 土地評價額에 의하여 評價된다. 다만 工場立地法上의 환경시설이나 消防法上의 위험물 製造所의 用地처럼 그 이용 등에 대하여 강력한 公的인 規制를 받는 것과 같은 特定한 土地는 그 價格의 2분의 1에 相當하는 金額을, 또한 優良한 住宅地의 造成事業 등에 關係된 分讓豫定地 등에 해당하는 土地 등은 그 價格의 5분의 1을 課稅價格에 算入한다.

라) 基礎控除에는 定額控除額과 面積比例控除額이 있어 어느 쪽이든 많은 金額을 基礎控除額으로 한다.

① 定額控除額 : 資本金 또는 出資金이 1億円을 超過하는 普通法人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相互會社 등은 10億円이고, 그 이외의 法人 및 個人은 15億円임.

② 面積比例控除額 :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의 面積×3만円 (借地權, 地上權, 일정한 地役權 등의 경우에는, 3만円の 部分에 借地權 등의 比率를 곱하여 계산하고 課稅價格 計算의 特例對象이 되는 土地 등의 경우에는 3만円 部分에 2분의 1(또는 5분의 1)을 곱하여 計算함.

마) 稅率은 0.3%(1992년에는 0.2%)임. 地價稅額은 課稅價格에서 基礎控除額을 控除한 殘額에 이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이다.

바) 課稅價格이 基礎控除額을 超過하는 者는 申告書를 그 해의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納稅地의 管轄稅務所에 提出해야 한다. 申告한 稅額은 申告書의 提出期限까지 2분의 1을, 나머지 2분의 1은 翌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4) 相續稅 및 贈與稅

가) 申告 및 調査

相續稅 및 贈與稅에 대해서도 申告納稅制度가 채택되어 있다. 그러나 相續, 遺贈 또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임시·우발적인 것으로 納稅者에게 인식되어 있는 등 稅金에 대한 知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申告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把握하는 것이 重要하다. 資料蒐集의 結果, 課稅가 예상되는 者에 대하여는 다른 稅目에서와 마찬가지로 期限 前에 申告書 用紙, 說明書 등을 송부함과 함께 期限 內에 適正한 申告가 행해지도록 申告方法, 財産의 評價方法, 稅額計算 등에 대한 相談에 응하고 있다. 또한 申告에 있어서는 申告漏落額이 크다고 예상되는 事案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내용에 따른 필요한 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表 III - 14〉 日本의 相續稅 課稅現況

(單位: 億円, 名)

	課稅價額		納付稅額		被相續人數	死亡者數	死亡者 100人當 課稅比率
	相續人數	金額	相續人數	金額			
1950	40,466	94	40,466	28	(不明)	904,876	-
1955	39,664	375	39,664	34	30,859	693,523	4.4
1960	29,499	706	23,293	100	9,183	706,599	1.3
1965	46,176	2,091	36,970	410	13,407	700,438	1.9
1970	80,314	7,011	67,248	1,342	24,454	712,962	3.4
1975	51,649	15,121	42,858	1,973	14,593	702,275	2.1
1980	90,870	30,212	78,931	4,399	26,797	722,801	3.7
1985	154,650	62,463	134,475	9,261	48,111	752,283	6.4
1988	163,711	96,380	107,253	15,629	36,468	793,014	4.6
1989	140,983	117,686	124,160	23,930	41,655	788,594	5.3
1990	161,254	141,058	142,286	29,527	48,287	820,305	5.9
1991	183,567	178,417	154,888	39,651	56,554	829,797	6.8
1992	177,688	188,201	156,467	34,099	54,449	856,643	6.4
1993	171,532	167,545	150,851	27,768	52,877	878,532	6.0
1994	151,565	145,454	130,298	21,058	45,335	875,933	5.2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 1996.

〈表 III - 15〉日本の贈與稅 課稅現況

(單位: 億円, 名)

	課稅價額	納付稅額	
		人 員	金 額
1950	25	34,168	7
1955	256	108,633	26
1960	386	91,658	51
1965	573	66,564	76
1970	1,633	136,942	236
1975	2,408	104,859	307
1980	5,540	239,080	591
1985	8,685	346,736	788
1988	11,098	416,013	1,285
1989	21,491	461,184	2,926
1990	25,684	510,453	3,430
1991	20,593	515,644	2,392
1992	16,471	492,446	1,619
1993	17,484	494,239	1,598
1994	15,266	472,449	1,312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 1995.

나) 財産의 評價

相續稅와 贈與稅는 相續 또는 贈與에 의한 財産의 無償取得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地價稅는 每年 1月 1日 午前 0時 현재 所有하고 있는 土地 등에 課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課稅의 適正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課稅對象이 되는 財産의 精確한 평가가 필요하다. 相續稅法에 있어서 財産의 價額은 相續, 遺贈 또는 贈與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의 時價에 의하여 評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相續稅法은 地上權, 永小作權, 定期金에 관한 權利, 生命保險契約에 관한 權利 등 特定の 財産에 대한 評價方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時價에 의하여 評價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은 規定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地價稅法에 있어서는 土地 등의 價額은

課稅時期的 時價에 의하여 評價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地上權, 永小作權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評價方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財産의 評價는 財産의 種類別로 그 性質에 따라 賣買實例價格 등에 의한 方法, 販賣價格을 기초로 하는 方法, 買入價格을 기초로 하는 方法 및 複利現價에 의한 方法 등에 의하고 있다.

5) 消費稅

1988년 4월 稅制調査會에서 근본적인 稅制改革에 대한 答申에 의해 稅制全般에 걸친 改善을 하여 同年 12月 末에 稅制改革關聯法案이 國會에서 可決되어 公布되었다. 이 稅制改革에 따라 넓고 가볍게 消費에 負擔시키는 「消費稅」가 창설되어 1989년 4월 1일부터 施行되었다. 그 후 消費稅는 ‘稅制問題 등에 관한 兩院合同協議會’에 대한 協議를 근거로 하여 1991年 5월에 議員立法에 의하여, 非課稅 範圍, 簡易課稅制度, 中間申告, 納付制度의 改正이 있었고 同年 10월에 施行되었다.

가) 消費稅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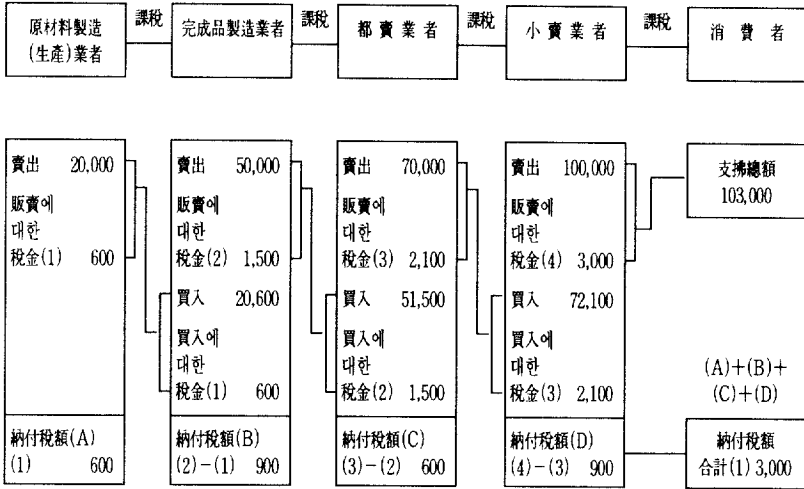
消費稅는 國內에서 事業者가 사업으로 대가를 얻고자 하는 資産의 讓渡, 貸付 및 서비스의 提供(資産의 讓渡 등)과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出되는 外國貨物을 課稅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國內去來에 대하여는 事業者를, 輸入去來에 있어서는 外國貨物을 保稅區域으로부터 거래하는 者를 納稅義務者로 하고 있다.

課稅期關의 課稅賣上高가 3千萬円 이하인 事業者에 대해서는 그 課稅期間中에 國內에서 행한 課稅資産의 讓渡 등에 따라 納稅義務가 免除된다(선택에 의하여 納稅義務者가 될 수 있다).

國內去來 中에서 土地의 讓渡, 貸付, 金融去來 등 消費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消費稅의 성격상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과 社會政策上 과세

[圖 Ⅲ-3] 消費稅의 흐름

(單位: 엔)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등은 비과세로 하고 있다. 또한 消費稅는 國內에서의 소비가 과세대상이므로 物品의 輸出이나 國際運輸, 國際通信 등은 免稅하고 있다.

消費稅의 課稅標準은 國內去來에 대해서는 課稅資産의 讓渡 등의 對價, 즉 實際 去來價格이며 輸入去來에 있어서는 課稅貨物의 關稅課稅價格, 關稅額 및 다른 個別消費稅額의 合計額이다. 消費稅의 稅率은 3% 單一稅率이나 보통승용차에 대하여는 1992年 3月 31日까지는 6%, 1992年 4月 1日부터 1994年 3月 31日까지는 4.5%로 되어 있다.

納稅額의 計算은 그 課稅期間의 課稅標準額에 대한 消費稅額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중의 課稅買入과 保稅區域으로부터 인도한 課稅貨物에 부과된 消費稅額의 合計額을 控除한다.

이 경우에 控除稅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 A. 課稅賣出比率이 95%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중 課稅買入의 稅額金額을 控除할 수 있다.

B. 課稅賣出이 95%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방식 중 하나에 의하여 計算한다.

① 個別對應方式

그 期間中의 課稅買入稅額을 課稅賣出에만 필요한 것, 非課稅賣出에 필요한 것 및 課稅賣出과 非課稅賣出에 公同으로 필요한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控除稅額으로 한다.

$$\text{控除稅額} = (\text{課稅賣出에 必要的한 課稅買入의 稅額} + \text{課稅賣出과 非課稅賣出에 公同으로 필요한 課稅買入의 稅額}) \times \text{稅額賣出 比率}$$

② 一括比例配分式

一括比例配分式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이 控除稅額이 된다.

$$\text{控除稅額} = \text{課稅買入稅額} \times \text{課稅賣出比率}$$

中小事業者의 買入稅額에 대한 控除特例(簡易課稅制度)規定이 設定되어 있는데 課稅基準期間의 課稅賣出額이 4億圓 이하인 事業者가 이 制度의 適用을 받겠다는 뜻의 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課稅標準額에 대한 消費稅額에 一定率(간주매입률)을 곱한 金額을 課稅買入稅額으로 간주하여 納付稅額을 計算할 수 있다.

간주매입률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종 사업(도매업) 90%
- ② 제2종 사업(소매업) 80%
- ③ 제3종 사업(제조업) 70%
- ④ 제4종 사업(서비스업) ... 60%

또한 그 課稅期間의 課稅賣出額이 5천萬圓 미만인 事業者에 대한 特例措置로서 限界控除制度가 設치되어 있다.

消費稅의 申告納付는 國內去來에 대해서는 그 課稅期間 末日의 翌日 부터 2個月 이내(個人事業者의 1993年분까지의 確定申告에 대하여는 3月 末日까지)에 確定申告書를 제출하여 納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直前 課稅期間의 確定消費稅額이 500萬円이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課稅期間 開設 後 3개월마다(3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年 4회 各該 當該 確定消費稅額의 4分の 1씩을 中間申告·納付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確定消費稅額이 60만원을 넘고 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설 후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年 1회 當該 確定消費稅額의 2分の 1을 中間申告·納付하도록 되어 있다.

輸入去來에 대해서는 課稅貨物을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할 때에 申告·納付하게 되어 있다. 事業者(免稅事業者는 제외)는 帳簿를 비치하고 資産의 讓渡 등, 課稅買入 또는 課稅物件을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에 관한 사항을 記錄하고 그 帳簿를 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記錄事項을 충족하는 것이면 商業帳簿 또는 所得稅, 法人稅의 帳簿書類라도 상관없다.

나) 消費稅의 調査 指導

消費稅는 1991年 4月 도입 이래 弘報·指導를 基本으로 한 施策을 추진함으로써 制度의 원활한 定着을 도모하여 왔다. 1991年 7月 以後에는 弘報·相談·指導에 調査를 추가한 執行體制로 이행하여 所得稅, 法人稅 등과 동시처리·동시조사함으로써 納稅者의 便宜增進과 함께 제도를 한층 더 정착시키고, 適正·公平한 課稅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1年 5월에 消費稅法의 一部가 改正(1991年 10月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事業者가 改正 稅法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 改正內容을 충분히 이해하여 스스로 適正한 申告가 될 수 있도록 弘報, 相談, 指導를 中心으로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 改正 消費稅法의 원활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表 Ⅲ-16〉日本の 消費稅 課稅現況(1993年)

(單位：千件, 億円)

		個 人	法 人	計
申告總件數		786	1,688	2,473
納稅	件 數	767	6,622	2,389
申告	稅 收	2,500	68,364	70,863

註：납부신고액은 1조 184억엔임.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6) 酒稅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장수 추이는 〈表 Ⅲ-17〉과 같고 〈表 Ⅲ-18〉은 主要酒類 酒稅額을 나타내고 있다.

〈表 Ⅲ-17〉日本の 酒類製造 및 販賣免許場數 推移

(單位：場)

	製造免許場數						販賣免許場數	
	清酒	麥酒	위스키	果實酒類	其他	合計	計	小賣可能한 場數
1950	3,692	13		4,566		8,271	96,153	91,690
1955	4,021	13		2,916		6,950	121,654	114,649
1960	3,980	16		1,146		5,142	127,708	123,888
1965	3,865	25	18	336	651	4,895	139,085	135,845
1970	3,533	28	22	263	588	4,434	147,399	144,392
1975	3,229	32	29	232	580	4,102	167,301	165,153
1980	2,947	35	31	236	568	3,817	172,122	169,268
1985	2,586	38	35	231	591	3,481	174,544	172,505
1988	2,495	41	31	250	572	3,389	175,091	172,900
1989	2,438	39	28	243	575	3,323	176,550	174,117
1990	2,435	41	28	248	574	3,326	176,953	174,487
1991	2,418	41	25	246	581	3,311	176,944	174,458
1992	2,407	42	26	247	579	3,301	177,521	175,086
1993	2,386	42	24	249	572	3,273	178,126	175,654
1994	2,369	49	24	245	574	3,261	179,156	176,624
1995	2,336	68	24	241	573	3,242	179,880	177,319

註：1. 調査時點은 1955年 이전은 그해 9月 30日 現在, 그 이외의 年度는 翌年 3月 30日 現在임.

2. 한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종목 주류난에 개재하였음.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表 III-18〉日本の主要酒類 酒稅額表(1994年 現在)

(單位: ml, %, 円)

	容量	알코올분	標準的 希望小賣價格(A)	酒稅額(B)	酒稅等 負擔率(B/A)
清酒	1,800	16.0	2,100	外 61.16 256.71	15.1
	1,800	15.0	1,780	外 51.84 240.86	16.4
	1,800	15.0	1,560	外 45.43 240.66	18.3
麥酒	633	-	320	外 9.32 131.91	44.1
위스키	750	43.0	2,870	外 83.59 791.98	30.5
	750	43.0	2,370	外 69.02 791.98	36.3

註: 1. 「酒稅額」欄의 '外'는 消費稅額임.

2. 「標準的 希望小賣價格」및 「酒稅等負擔率」欄은 消費稅도 포함되어 있음.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表 III - 19〉日本の 酒類課稅數量 및 課稅額 推移

(單位：千kl, 億円)

	清酒		麥酒		위스키		果實酒類		其他		合計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1950	186	413	181	275	-	-	-	-	-	-	649	1,095
	28.7	37.7	27.9	25.1	-	-	-	-	-	-	100.0	100.0
1955	510	735	406	450	-	-	-	-	-	-	內1 1,385	內2 1,599
	36.8	46.0	29.3	28.1	-	-	-	-	-	-	100.0	100.0
1960	751	996	932	1,032	-	-	-	-	-	-	內2 2,194	內7 2,499
	34.2	39.9	42.5	41.3	-	-	-	-	-	-	100.0	100.0
1965	內0 1,159	0 1,258	1 1,986	1 1,886	1 66	22 186	1 40	1 20	1 321	3 177	內4 3,572	外0 內26 3,528
	32.4	35.6	55.6	53.5	1.9	5.3	1.1	0.6	9.0	5.0	100.0	100.0
1970	內0 1,601	0 2,106	1 2,982	1 3,161	3 137	68 655	2 33	4 20	2 315	5 194	內8 5,068	外0 內79 6,137
	31.6	34.3	58.8	51.5	2.7	10.7	0.7	0.3	6.2	3.2	100.0	100.0
1975	內0 1,747	0 2,600	3 3,908	3 4,190	23 256	422 2,119	9 51	16 39	2 287	6 178	內36 6,250	外72 內447 9,125
	28.0	28.5	62.5	45.9	4.1	23.2	0.8	0.4	4.6	2.0	100.0	100.0
1980	內0 1,473	0 2,538	12 4,533	19 7,295	27 371	602 4,106	15 65	29 70	3 372	12 252	內56 6,814	外0 內662 14,260
	21.6	17.8	66.5	51.1	5.4	28.8	1.0	0.5	5.5	1.8	100.0	100.0
1988	內0 1,448	0 2,695	36 5,860	86 13,994	44 340	1,001 4,427	50 125	68 133	15 914	29 791	內144 8,688	外0 內1, 194 22,041
	16.7	12.2	67.5	63.5	3.9	20.1	1.4	0.6	10.5	3.6	100.0	100.0
1989	內0 1,353	0 1,963	71 6,320	148 13,150	65 260	669 2,669	69 151	34 76	24 704	41 690	內229 8,788	外671 內893 18,549
	15.4	10.6	71.9	70.9	3.0	14.4	1.7	0.4	8.0	3.7	100.0	100.0

〈表 III-19〉의 繼續

(單位：千 kℓ, 億円)

	清酒		麥酒		위스키		果實酒類		其他		合計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課稅數量	課稅額
1990	內0	0	96	200	64	655	67	33	32	47	內259	內935
	1,422	2,033	6,586	13,702	253	2,588	147	73	916	962	9,324	19,358
	15.3	10.5	70.6	70.8	2.7	13.4	1.6	0.4	9.8	5.0	100.0	100.0
1991	內0	0	101	211	61	641	59	29	27	45	內248	內926
	1,377	1,940	6,970	14,502	239	2,454	131	56	798	783	9,515	19,745
	14.5	9.8	73.3	73.4	2.5	12.4	1.4	0.3	8.4	4.0	100.0	100.0
1992	內0	0	112	234	55	563	54	27	18	37	內239	內861
	1,374	1,718	7,078	14,726	222	2,263	124	62	874	870	9,672	19,639
	14.2	8.8	73.2	75.0	2.3	11.5	1.3	0.3	9.0	4.4	100.0	100.0
1993	內0	0	120	251	54	553	61	31	24	46	內259	內881
	1,422	1,777	7,015	14,594	225	2,114	128	64	1,002	978	9,792	19,527
	14.5	9.1	71.7	74.7	2.3	10.8	1.3	0.3	10.2	5.0	100.0	100.0
1994	內0	0	327	723	52	536	85	48	35	71	內499	外87 內1,378 21,211
	1,243	1,614	7,413	16,327	204	1,982	157	90	1,054	1,198	10,071	
	12.3	7.6	73.6	77.0	2.0	9.3	1.6	0.4	10.5	5.7	100.0	100.0
1995	內0	0	213	472	47	479	88	51	91	155	內437	內1,157
	1,310	1,709	6,979	15,464	181	1,754	170	99	1,366	1,584	10,006	20,610
	13.1	8.3	69.7	75.0	1.8	8.5	1.7	0.5	13.7	7.7	100.0	100.0

註：1. 各欄의 '內'는 關稅임.

2. 合計의 '外'는 手持品課稅임.

3. 1975년까지는 그해 3月~翌年 2月, 1980年以後는 그해 4月~翌年 3月의 課稅搬出數量에 대한 課稅額임.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3. 源泉徵收制度

日本の 稅務行政에서 給與所得에 대한 源泉徵收制度는 매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源泉徵收制度는 納稅의무자가 納付하여야 할 租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給與(즉, 所得의 源泉)를 支給하는 者를 稅金의 徵收 및 納付義務者(源泉徵收義務者)로 定하여 納稅의무자가 納付하여야 할 稅

額을 給與 등의 支給時에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給與所得의 源泉徵收義務者數는 1994年 6月 30日 현재 395萬件이다. 1994年度 豫算에서는 所得稅收入 21兆 3,500億圓 중, 源泉徵收 方法으로 징수되는 것이 그 79%에 해당하는 16兆 7,710億圓이다.

〈表 III - 20〉 日本의 源泉所得稅 課稅現況

(單位: 億圓)

	給與所得	退職所得	利子所得 等	配當所得	讓渡所得 等	報酬·料金 等所得	非居住者 等所得	計
1950	1,213	28	18	2	-	11	-	1,308
1955	1,880	39	25	118	-	81	20	2,186
1960	2,267	50	156	362	-	156	55	3,046
1965	5,436	137	658	610	-	412	159	7,412
1970	12,095	193	2,529	1,824	-	974	340	17,955
1975	27,343	356	8,029	2,722	-	2,496	472	41,418
1980	60,374	1,071	14,158	4,825	-	4,433	750	85,611
1985	90,837	2,145	19,699	6,294	-	6,822	1,254	127,051
1988	92,974	2,308	19,896	9,347	-	9,820	1,466	135,811
1989	99,513	1,561	26,710	11,617	7,062	10,230	1,682	158,375
1990	114,712	1,654	52,275	10,642	4,143	10,535	2,043	196,004
1991	129,639	1,997	52,497	9,750	2,227	10,886	2,069	209,065
1992	138,243	1,899	35,955	9,249	1,085	11,207	2,001	199,639
1993	140,717	2,179	35,460	8,829	2,155	11,252	1,909	202,502
1994	118,329	2,199	37,822	7,933	1,615	11,011	2,021	180,920
1995	115,389	2,374	29,787	7,897	1,903	11,390	2,353	171,093

註: 1. 1950年 및 1955年의 「計」와 各 所得種類別 合計額의 差는 加算稅額임.

2. 1960年 以後의 加算稅額은 各 所得種類別의 稅額 中에 포함되어 있음.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이 제도가 日本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99년 公社債의 利子所得이었고 給與所得에 적용된 것은 1940年이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정비된 것은 第2次 世界大戰 後이다. 源泉徵收의 대상이 되는 것은 給與所得과 退職所得을 비롯하여 利子所得, 配當所得, 原稿料, 作曲, 音盤吹入의 報酬, 기타 各種 人的서비스(役務)의 報酬(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自由職業者의 報酬, 醫師가 社會保障의 基金으로 받는 報酬, 직업야구선

수, 외교관, 예능인, 호스텔스의 報酬 등), 上場株式 등의 讓渡利益 등 광범위하다.

또한 源泉徵收制度의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給與所得에 대한 源泉徵收는 개별 급여소득자의 人的控除와 所得의 大小에 따라 이들을 감안하여 작성된 稅額表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 稅額表는 定期的으로 받는 給與에 적용되는 부분과 賞與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각각의 給與 性格에 따른 一定한 假定下에 세액이 계산되고 있다. 이들 稅額表에 의하여 給與所得에 대해 정당하게 徵收하여야 稅額에 근사한 稅金이 徵收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徵收總額은 年間 徵收하여야 할 적정한 세액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源泉徵收義務者에 있어서는 그 年度의 最後 給與를 支拂할 때 徵收하여야 할 稅額과 비교하여 그 過不足을 精算하는 구조(年末調整)로 되어 있다.

이 年末調整을 행한 給與所得에 대해서는 源泉徵收機構를 통하여 정확한 세금이 徵收되므로 給與 이외의 一定額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稅務署에 確定申告書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재 給與所得者의 대부분은 源泉徵收制度를 통하여 납세하고 있다.

4. 納付와 滯納國稅의 徵收

가. 納付

1) 國稅의 納付方法

가) 現金의 納付

國稅는 원칙적으로 金錢 또는 證券(稅入納付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納付書에 첨부하여 納期限 內에 日本銀行 등의 國稅收納機關에 納付하도록 되어 있으나 印紙稅, 登錄·免許稅 등에 대하여는 金錢納付 대신 印紙納付가 가능하다. 그리고 申告所得稅, 相續稅 및 贈與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연납할 수 있고 또한 지진에 의한 피해, 풍수해 등의 재해에 의하여 損害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納稅者로부터의 申請에 의하여 一定期間(대부분 1年) 그 國稅의 納付를 猶豫할 수 있다.

國稅收納機關은 日本銀行, 郵便局 및 國稅收納官吏(國稅의 收納을 하는 稅務署의 職員)이며 이들은 전국 각지에 있다(日本銀行에는 本店, 支店 외에 市中銀行으로서 日本銀行의 代理店 또는 歲入代理店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된다). 그 점포 수는 銀行이 약 2만 4,700개의 支店, 그리고 약 2만개의 郵便局, 524개의 稅務署가 있어 納稅者에게는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納付된 稅金은 日本銀行 本店의 政府計定에 집중된다.

나) 物納

相續稅는 財産稅라는 성격 때문에 특별히 相續財産에 의한 物納이 認定되고 있다. 相續財産에 의한 物納이 認定되기 위해서는 ① 相續稅를 延納에 의하여도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 ② 納期限

까지 申請할 것 ③ 物納申請財産은 法定의 順位에 의할 것 등 모든 條件을 갖추어야 하며 納付가 곤란한 金額의 範圍 內에서 인정된다.

최근, 物納申請件數는 地價 및 株價의 하락 등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다(〈表 Ⅲ-22〉 參照). 1992年 이후에는 土地去來가 한산해지고 讓渡所得稅率의 引上(26%→39%) 및 土地의 평가비를 引上(70%→80%)에 의하여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物納申請의 增加傾向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年度에는 規模가 크고 處理困難한 사안에 대해서는 國稅局長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관련법규의 정비가 있었다.

다) 還付金 등의 返還

還付申請書의 제출 또는 納稅者의 착오납부 등에 의해 還付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返還하도록 되어 있다. 이 還付金 등의 반환은 還付申請書 또는 債權臺帳에 의하여 확인한 後에 이루어지는데 原則적으로 請求書의 제출이 없어도 返還하고 있다. 이 경우 返還方法으로는 納稅者가 지정한 銀行 등 金融機關의 預金口座에 불입하는 방법과 納稅者가 지정한 郵便局에 지불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라) 納稅貯蓄組合

稅金納付를 용이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평소에 納稅資金을 저축하기로 한 납세자가 법률에 의하여 任意로 組織한 納稅貯蓄組合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納稅貯蓄組合은 業種別 또는 地域別로 결성되어 있으며 가입이나 탈퇴에는 제한은 없다. 현재, 納稅貯蓄組合은 納稅資金 貯蓄의 알선 등 納稅貯蓄에 관한 사무 외에 稅에 관한 知識의 보급을 위한 研修會의 開催와 弘報活動, 租稅教育活動 등을 하고 있다. 組織의 規模는 약 17만개의 組合, 組合員數 약 1,091만명으로 되어 있다.

〈表 III-21〉日本の國稅徵收現況

(單位：億円，%)

		(A)	處理濟額			(E)		B/A	(B+C+D)/A	F/E
		徵收決定濟額	(B) 收納濟額	(C) 還付加算金充當濟額	(D) 不納缺損額	收納未濟額(A-B-C-D)	(F) E中滯納處分停止額			
總 件	1955	8,588	7,609	7	133	839	203	88.6	90.2	24.2
	1960	15,424	14,878	3	47	496	86	96.5	96.8	17.3
	1965	29,805	28,006	2	27	1,770	93	94.0	94.1	5.3
	1970	72,970	69,211	2	48	3,708	133	94.8	94.9	3.6
	1975	145,477	135,312	2	26	10,138	86	93.0	93.0	0.8
	1980	270,461	257,860	2	54	12,545	287	95.3	95.4	2.3
	1985	385,722	369,579	-	183	15,960	513	95.8	95.9	3.2
	1989	571,763	544,591	-	287	26,885	835	95.2	95.3	3.1
	1990	642,437	606,562	-	493	35,382	813	94.4	94.5	2.3
	1991	662,226	614,844	-	403	46,979	968	92.8	92.9	2.1
	1992	625,909	565,794	-	430	59,686	1,100	90.4	90.5	1.8
	1993	617,769	557,191	-	741	59,837	1,554	90.2	90.3	2.6
	1994	576,874	520,982	-	859	55,033	2,027	90.3	90.5	3.7
1995	580,865	527,712	-	1,025	52,128	2,735	90.8	91.0	5.2	
本 年 度 分	1955	7,574	7,306	3	0	265	2	96.5	96.5	0.8
	1960	14,931	14,675	3	0	253	2	98.3	98.3	0.8
	1965	28,089	26,764	1	0	1,323	1	95.3	95.3	0.1
	1970	69,770	66,690	2	0	3,079	2	95.6	95.6	0.1
	1975	135,913	127,554	1	0	8,358	0	93.8	93.9	0.0
	1980	259,940	250,820	1	1	9,117	0	96.5	96.5	0.0
	1985	373,201	362,920	-	1	10,280	1	97.2	97.2	0.0
	1989	553,621	535,749	-	0	17,871	6	96.8	96.8	0.0
	1990	623,062	598,232	-	0	24,830	2	96.0	96.0	0.0
	1991	638,847	605,804	-	1	33,042	5	94.8	94.8	0.0
	1992	593,489	556,423	-	1	37,066	30	93.8	93.8	0.1
	1993	574,692	547,515	-	5	27,162	4	95.3	95.3	0.0
	1994	533,670	511,259	-	3	22,409	4	95.8	95.8	0.0
1995	537,345	517,415	-	5	19,925	5	96.3	96.3	0.0	
過 年 度 分	1955	1,014	303	5	133	574	200	29.9	43.5	34.8
	1960	493	203	1	47	243	83	41.2	50.9	34.2
	1965	1,716	1,242	1	27	447	92	72.4	74.0	20.6
	1970	3,199	2,522	0	47	630	130	78.8	80.3	20.6
	1975	9,564	7,658	1	26	1,879	86	80.1	80.4	4.6
	1980	10,521	7,039	1	53	3,427	287	66.9	67.4	8.4

〈表 Ⅲ-21〉의 繼續

	(A) 徵收決定 濟額	處理濟額			(E)		B/A	(B+C+D) /A	F/E
		(B) 收納濟 額	(C) 還付加 算金充 當濟額	(D) 不納缺 損額	收納未濟 額(A-B- C-D)	(F) E 中 滯納處分 停止額			
1985	12,522	6,660	-	182	5,680	512	53.2	54.6	9.0
1989	18,142	8,841	-	287	9,014	829	48.7	50.3	9.2
1990	19,375	8,330	-	493	10,552	811	43.0	45.5	7.7
1991	23,379	9,040	-	402	13,937	963	38.7	40.4	6.9
1992	32,420	9,372	-	429	22,620	1,071	28.9	30.2	4.7
1993	43,077	9,676	-	736	32,665	1,550	22.5	24.2	4.7
1994	43,204	9,723	-	857	32,624	2,023	22.5	24.5	6.2
1995	43,520	10,297	-	1,020	32,203	2,730	23.7	26.0	8.5

註：1. 「不納缺損額」은 滯納處分の 執行停止後 3年이 경과한 경우 消滅時效(5年)가 完成된 경우 등 사유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消滅된 것임.

2. 「收納未濟額」에는 揮發油稅의 規程에 의해 納期限이 延長中인 것 등 소위 滯納이 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 1996.

〈表 Ⅲ-22〉日本の 最近 物納申請 現況

(單位：件, 億円)

	申請件數	申請金額
1987	397	274
1988	410	409
1989	515	977
1990	1,238	1,333
1991	3,871	5,876
1992	12,778	15,645
1993	10,446	11,081
1994	內 7,268	內 7,545
	16,066	14,823
1995	8,488	6,610

註：'內'는 特例物納計數임.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마) 對替(振替)納稅制度

稅金を 納付하는 편리한 方法으로 對替納稅制度가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稅務署로부터 받은 納付書를 預貯金口座를 가지고 있는 金融기관에 送付하여 金融기관이 納稅者의 計座에서 納稅者를 대신하여 稅金を 納付하는 장치이며, 納稅後의 領收證은 그 金融機關으로부터 納稅者에게 직접 送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制度는 納稅者에게는 納稅를 위하여 金融機關에 갈 필요가 없고 稅務서는 納稅者가 納期를 잊어버려서 滯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事務處理의 效率化를 도모하는 등의 效果가 있다. 國稅廳에서는 가장 效果가 크다고 인정되는 申告所得稅 및 消費稅(個人事業者)納稅者를 중심으로 確定申告의 納稅相談 때에

〈表 III-23〉 日本の 對替納稅 普及現況(確定申告分)

(單位: 千名, %)

		納稅人員	對替利用者數	普及率
申告所得稅	1975	4,286	1,546	36.1
	1980	5,430	1,804	33.2
	1985	7,009	3,704	52.8
	1989	7,594	5,058	66.6
	1990	8,139	5,618	69.0
	1991	8,086	5,745	71.7
	1992	8,000	5,711	71.4
	1993	7,803	5,565	71.3
	1994	7,553	5,469	72.4
	1995	7,646	5,498	71.9
消費人稅分	1989	538	358	65.5
	1990	583	438	75.2
	1991	598	466	78.0
	1992	586	470	80.3
	1993	565	460	81.4
	1994	527	435	82.5
	1995	521	431	82.6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利用을 권장하거나 또는 地方公共團體, 金融機關, 納稅貯蓄組合 등 關係民間團體의 協力을 얻어 그 利用을 권장하는 등 이 제도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申告所得稅 및 消費稅(個人事業者)의 確定申告에 있어서는 納稅者 중 각각 71.3%, 81.4%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 滯納國稅의 徵收

가) 徵收節次의 概要

納期限까지 納付되지 않은 國稅, 소위 滯納國稅는 督促을 하고 納稅者의 財産을 滯納處分에 의하여 押留하고 換價하여 얻은 金錢으로 國稅에 充當하는 절차에 의하여 徵收한다. 그러나 納期限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國稅의 徵收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納期限 前의 強制徵收措置가 認定되는 한편, 納稅者의 사정 등에 의하여 바로 滯納處分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徵收의 緩和措置가 취해진다.

強制換價節次에 대해서는 租稅는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公課 기타 私債權에 우선한다. 다만 私法秩序 調整 등의 관점으로부터 특정 담보권부 채권에 대한 우선 등에서는 예외가 있다.

(1) 原則的인 徵收節次

滯納된 國稅에 대해서는 통상 그 納期限 後 50日 이내에 督促狀에 의하여 納付를 督促한다. 督促狀 발송 후에도 納稅하지 않는 경우에는 強制的 徵收節次인 滯納處分節次가 開始된다. 이 節次는 押留를 시작으로 稅務當局이 法院의 관여 없이 自力으로 할 수 있다. 押留는 督促 後 10日이 경과하여도 納付하지 않는 경우에 納稅者의 財産에 대하여 換價할 것을 전제로 그 財産의 處分을 禁止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押留를 한 後에도 納付하지 않을 경우에는 押留財産의 強制的인 賣却인 ‘換價’를 하여 그 換價代金を 押留國稅나 기타 일정한 債權에 ‘配當’한다. 다만 納稅

者의 財産에 대하여 이미 強制換價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換價를 대신하는 節次로서 先行의 強制換價節次의 執行機關에 대하여 交付要求를 하여 配當을 받을 수 있다.

(2) 納期 前의 強制徵收措置

國稅의 納付는 통상 納期限까지 하면 되지만 納稅者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國稅를 免하기 위하여 고의로 破産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 國稅를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特別保全을 위한 節次(繰上請求, 保全押留, 繰上保全押留, 保全擔保)가 認定된다.

(3) 徵收의 緩和措置

國稅의 徵收에 대해서는 그 확보조치가 필요한 반면 납세자의 生活이나 事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므로 徵收의 緩和制度가 設置되어 있다. 納稅者가 災害, 疾病, 휴폐업 등에 의하여 納付가 곤란한 경우나 押留된 財産이 換價되면 生活이나 事業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는 納稅를 유예하여 分割納付를 認定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滯納處分의 대상이 될 財産이 없는 경우나 納稅者의 生活을 현저히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執行을 정지하고 그 정지가 3年間 계속되면 國稅의 納稅義務가 소멸된다.

(4) 滯納發生 및 處理狀況

滯納整理는 稅務署의 徵收職員(國稅徵收官, 事務官)이 하고 있으나 規模가 크고 惡質的인 사안에 대해서는 國稅局의 徵收職員이 稅務署로부터 徵收의 인계를 받아서 處理하게 된다. 滯納의 발생 및 處理現況은 <表 III-24>와 같다.

〈表 Ⅲ-24〉日本の滞納發生處理現況

(單位: 億円, %)

	本年度 徴收決定 済額(A)	期初 滞納額 (B)	新規發生 滞納額 (C)	滞納發 生率 (C/A)	要整理滞 納額 (D=B+C)	處理済 滞納額 (E)	處理率 (E/D)	滞納殘高		F中滞納處 分停止中인 稅額(G)
								稅額 (F=D-E)	殘率 (F/(A+B))	
1950	4,496	1,258	1,626	36.2	2,885	1,939	67.0	946	16.4	74
1955	7,544	1,048	884	11.7	1,932	1,086	56.2	847	9.9	203
1960	14,931	495	1,008	6.8	1,503	1,007	66.9	496	3.2	86
1965	28,089	788	1,827	6.5	2,615	1,741	66.6	874	3.0	93
1970	69,770	1,054	3,196	4.6	4,250	3,019	71.0	1,231	1.7	133
1975	135,913	3,261	5,459	4.0	8,720	5,424	62.2	3,296	2.4	87
1980	259,940	4,542	7,070	2.7	11,612	6,364	54.8	5,248	2.0	287
1985	373,200	7,296	8,222	2.2	15,518	7,582	48.9	7,936	2.1	513
1987	459,239	8,778	11,378	2.5	20,156	9,871	49.0	10,285	2.2	580
1988	501,831	10,285	11,439	2.3	21,723	10,659	49.1	11,064	2.2	670
1989	553,620	11,064	11,457	2.1	22,521	10,830	48.1	11,691	2.1	840
1990	623,062	11,691	11,384	2.5	27,076	12,957	47.9	14,118	2.2	813
1991	638,847	14,118	16,987	2.7	31,105	14,057	45.2	17,048	2.6	965
1992	593,489	17,048	18,903	3.2	35,951	15,435	42.9	20,516	3.4	1,106
1993	574,692	20,516	17,958	3.1	38,474	15,194	39.5	23,280	3.9	1,555
1994	533,670	23,280	15,971	3.0	39,251	14,271	36.4	24,980	4.5	2,027
1995	537,344	24,980	15,559	2.9	40,539	13,933	34.4	26,606	4.7	2,739

註: '滞納處分停止中인 稅額'은 원칙적으로 滞納處分停止後 3年이 경과하면 納稅義務가 消滅함.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5. 權利救濟制度

가. 制度의 概要

國稅에 관해 納稅者로부터 正當한 權利利益을 侵害당했다고 하여 不服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審理하여 救濟하는 제도로서 不服審理制度와 訴訟이 있다.

不服審理制度는 更正·決定과 差押(押留)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처분을 받은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가 행정부에 대하여 그 처분의 取消나 變更을 구하는 제도로서, 먼저 爭訟의 대상이 된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不服을 申請한다. 이것이 異議申請이다. 異議申請은 行政爭訟의 제1단계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異議申請에 대한 行政廳의 決定에 불복이 있을 때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處分廳의 上級行政廳에 대하여 提起하는 것이지만 國稅에 대한 審査請求는 특히 그것을 위한 專門機關으로 설치된 國稅不服審判所(長)에 대하여 제기한다.

그 다음 國稅不服審判所長의 裁決을 거친 처분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法院)에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行政爭訟制度에 대하여 일반법으로 行政不服審査法 및 行政事件訴訟法이 있으나, 國稅에 관한 爭訟에 대하여는 國稅에 관한 處分이 대량,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專門技術性이 있는 등 國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國稅通則法에 特例規程을 규정하고 있다.

즉 行政不服審査法에는 審査請求 中心主義가 있는 데 반해 國稅通則法에서는 原處分廳에 再調査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趣旨에서 處분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異議申請을 제기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審査請求는 上級行政廳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처분청과는 독립된 전문기관인 國稅不服審判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不服申請과 訴訟과의 관계를 검토하면 行政事件訴訟法에는 不服申請을 하지 않고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國稅通則法에서는 國稅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處分の 取消를 구하는 訴訟은 原則적으로 不服申請에 대한 行政廳의 決定 또는 裁決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不服申請前置主義가 채택되어 있다.

나. 異議申請

異議申請은 爭訟의 대상이 된 處分을 행한 行政廳(통상적으로 세무서장)에 제기한다. 이는 爭訟의 당사자인 行政廳 스스로가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정당한 權利利益의 救濟를 도모하는 한편 行政의 적정한 운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異議申請은 處分の 通知를 받은 익일부터 起算하여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며 異議申請이 있으면 稅務署에서는 그 사안을 調査·審理하여 申請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決定한다. 사안의 調査·審理에 있어서는 公正하고 客觀的이기 위하여 그 다툼이 있는 處分の 擔當者 이외의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6. 其他 稅務行政에 關聯된 事項

가. 犯則調査

1) 査察制度

日本은 납세자 스스로가 올바른 申告를 하여 稅金を 納付하는 申告納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納稅者의 申告額에 誤謬가 있으면 稅務官廳이 職權에 의하여 申告額을 更正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調査는 원칙적으로 納稅者의 同意에 의한 소위 任意調査이다. 그러나 不正한 手段을 써서 故意로 稅金を 免한 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正當한 稅金を 과하는 것 이외에 刑罰을 부과하는 것이 稅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者에 대하여는 任意調査만으로는 그 實態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強制的 權限에 의하여 犯罪調査에 準하는 方法으로 조사하며 그 결과에 의하여 檢察官에게 告發하여 公訴를 提起하는 査察制度가 있다. 査察制度는 이러한 의미에서 申告納稅制度를 基本的으로 지지하고 稅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必要한 制度이다. 査察制度의 具體的인 節次는 國稅犯則取締法에 정해져 있으며 그 執行에는 強制權을 행사하기 위해 各 國稅局에 배치되어 있는 國稅調査官이 담당하고 있다.

2) 國稅調査官

國稅調査官은 國稅廳 및 全國 11個의 國稅局과 오키나와 國稅事務所에 配置되어 있다. 國稅調査官은 稅務職員이지만 脫稅事件에 대해서는 특별한 調査權限을 가지고 있으나, 犯則嫌疑者를 逮捕하여 取調하는 權限은 없고 國稅犯則取締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調査를 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즉, 犯則嫌疑者와 參考人에게 質問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帳簿나 書類를 檢査할 수 있고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領置할 수 있으며 裁判官의 令狀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 搜索하고 證據物件을 押留할 수 있다.

國稅査察官은 脫稅調査를 함에 있어서는 所屬 國稅局長의 지휘 아래 있으며 直接 檢察官의 指揮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調査를 함에 있어서는 후일 裁判에서 公判 維持를 고려하여 所得의 有無을 立證하는 證據의 保全은 물론, 犯則嫌疑者의 故意의 有無, 責任의 有無 등에 대한 충분한 配慮를 하며 그를 위하여 調査의 過程에서 檢察官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필요에 의하여 그 助言을 구한다.

3) 査察調査 現況

査察制度는 1948년에 도입되었지만 當時에는 日本經濟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였으며 納稅秩序도 혼란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利得을 隱匿하는 者가 많았고 査察件數도 상당히 많았다. 그 후 인플레이션이終了되고 經濟가 安定되어 申告納稅制度가 定着됨과 동시에 査察調査의 對象으로 社會的 非難을 받아야 할 事案만을 選定하였으며, 調査體制도

이에 副應하여 점차 整備되어 經濟去來의 複雜化, 多樣化 등에 効果적으로 대응하는 査察調査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査察調査는 脫稅의 嫌疑가 있는 者를 發見하면, 脫稅規模, 手法 등을 具體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內查를 하게 된다. 이 內查로 脫稅가 豫見되고 手法도 惡質的이라고 인정되어 社會的 非難을 받아 마땅한 者를 選定하여 그 者의 脫稅嫌疑 事實을 判事에게 說明하고 令狀을 교부받게 된다. 이 令狀에 기초하여 強制調査에 着手하게 되는데 着手에 있어서는 各 國稅局에 배치되어 있는 國稅調査官은 本廳의 관례에 따라 통일되게 사무를 처리한다. 國稅局 相互間에도 臨機應變의인 應援體制도 확립되어 있어 強制調査의 着手에 의하여 모아진 書類 등은 그 후 綿密한 調査에 의하여 眞實된 所得의 計算과 그 存在를 立證하기 위한 證據가 된다.

4) 處理實績

〈表 Ⅲ-25〉에 나타나 있듯이 1994년에는 216件的 脫稅事件을 處理하여 그 71.8%에 해당하는 155件을 告發하였다.

가) 間接稅의 犯則調査制度

(1) 制度의 概要

間接稅의 犯則者에 대한 調査(團束)制度는 直接稅의 査察制度보다 오래된 歷史를 가지고 있다. 1883년에 酒稅 및 담배稅 외 2개 稅目的 間接國稅에 대하여 犯則이 있으면 稅務官吏가 특별히 調査하도록 정한 이래 다른 間接稅에 대해서도 같은 取扱을 하는 것이 慣例가 되어 1890년에 間接稅 全般의 犯則者에 대하여 특별한 處分節次를 정한 間接國稅犯則者處分法이 制定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改定을 거쳐 1948년에는 이 法律에 直接稅에 관한 犯則者의 調査節次도 포함하여 法律名稱도 國稅

〈表 Ⅲ-25〉日本の 査察事件 處理實績

	件 數		告發率(B/A)	脫 稅 額	
	處理(A)	告發(B)		金額(C)	1件當(C/A)
	(件)	(件)	(%)	(百万円)	(千円)
1950	909	73	8.0	5,116	5,628
1955	233	40	17.2	1,779	7,635
1960	169	55	32.5	2,726	16,130
1965	145	100	69.0	5,566	38,386
1970	167	103	61.7	7,555	45,240
1975	203	147	72.4	15,595	76,823
1980	235	167	71.1	23,062	98,136
1985	259	201	77.6	40,876	157,822
1989	253	172	68.0	63,943	252,739
1990	234	161	68.8	52,377	223,833
1991	237	161	67.9	59,107	249,397
1992	219	157	71.7	64,704	295,454
1993	215	161	74.9	60,107	279,568
1994	216	155	71.8	44,050	203,936
1995	223	163	73.1	41,553	186,246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5.

犯則取締法으로 改正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0年 當時부터 間接稅의 事務運營은 犯則을 豫防하는 의미의 檢査와 犯則調查團束 등 二元的으로 行해져서 犯則處分件數는 전통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많은 犯則件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間接國稅 犯則者處分法時代부터 오늘날까지 通告處分制度가 설치되어 있다.

이 通告處分制度라는 것은 犯則事件의 조사에 의하여 犯則事實이 인정된 때에 國稅局長 또는 稅務署長이 罰金 또는 過怠料를 犯則者에게 通告하여 納付케 하는 行政處分制度이다. 犯則者가 이 通告處分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告發에 의하여 刑事訴追를 받게 된다. 間接國稅의 犯則事件의 대부분은 通告處分으로 終結되고 告發에 의하여 刑事訴追하는 件數는 比較적 적으며 犯則內容에 있어 특히 惡質의인 境遇 등에는

通告處分을 거치지 아니하고 直接告發한다. 消費稅에 대하여는 輸入去來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通告處分制度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犯則調査狀況

酒稅에 대하여는 免許制度를 採擇하여 최근까지 엄격한 조사를 實施하고 있었으나 現在에는 대형, 악질적인 脫稅事件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酒類의 密造는 현재 거의 없으며 酒類의 密輸入도 최근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揮發油稅에 대한 대규모 악질적인 脫稅事件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表 III-26〉 參照).

〈表 III-26〉 日本의 間接稅 犯則事件 處分現況

(單位: 件, 百万円)

	犯則處分件數	犯則處分件數 內譯				脫稅額	通告處分 罰金額
		通告處分	罰金額	不問處分	其他		
1950	74,341	65,112	7,314	1,673	242	(不明)	606
1955	58,683	51,740	5,272	1,087	539	(不明)	324
1960	75,890	72,499	678	2,260	453	(不明)	400
1965	94,543	91,371	819	1,715	638	302	357
1970	5,991	4,429	17	1,108	437	347	317
1975	711	542	6	135	28	1,029	556
1980	838	672	9	139	18	992	631
1985	733	653	9	65	6	1,539	678
1988	396	341	5	48	2	861	605
1989	23	16	2	5	-	34	49
1990	6	5	-	1	-	-	1
1991	16	8	-	5	3	45	2
1992	33	18	1	12	2	-	2
1993	26	24	1	-	1	41	7
1994	4	4	-	-	-	-	1
1995	10	9	-	1	-	4	7

資料: 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6.

나. 稅務相談

1) 稅務相談室

申告納稅制를 基礎로 한 稅務行政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調査와 指導의 一體化를 도모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쉽게 상담할 수 있는 稅務相談體制를 정비하여 납세자를 援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래에 不服申請處理 外에 납세자에 대한 稅務相談도 담당하고 있는 協議團이 1970년 5월에 國稅不服審判所로 개편될 때에 稅務相談이나 稅務에 관한 苦衷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國稅局에 稅務相談室이 新設되어 稅務相談 및 苦衷의 處理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1973년부터 全國의 主要한 稅務署 內에 稅務相談室의 分室이 開設되어 1994년 7월 현재, 全國 135分室에서 稅務相談 및 苦衷의 處理를 하고 있다.

稅務相談官의 定員은 전국에 531名(1995년 7월 현재)으로 정해져 있으며 稅務 全般에 관한 經驗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稅務相談室은 성실한 組織 運營과 弘報活動의 強化와 함께 납세자에게 稅金에 대한 知識의 增大, 稅務相談에 대한 信賴感을 증가시키면서 定着하게 되었다. 1994年(1994年 4月~1995年 3月)에 受理한 稅務相談 件數는 約 272萬件(前年 對比 102%, 이외에 Tax Answer에 의한 회답이 約 78萬 4千件이 있음)이었다. 이를 稅務相談室 發足 當時와 비교하면 約 20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電話에 의한 稅務相談은 이용자가 많고 그 比率은 全相談件數의 77%에 달한다. 稅務相談의 稅目別 구성비를 보면 所得稅 關係가 49%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資產稅關係 29%, 法人稅關係 7%, 消費稅 2%, 기타 稅目이 13%로 되어 있다. 稅務相談은 납세자가 올바른 신고를 하기 위한 事前相談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각각의 實情에 따라 가장 適切한 處理方法을 迅速·正確하게 회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1년도 苦情事案은 732件이었다. 이 苦情事案의 處理에 있어서는 그 適否가 稅務相談의 運營全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公平한 立場에 서서 事案을 檢討하여 迅速·適切히 處理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2) Tax Answer¹⁾

Tax Answer는 電話에 의한 稅務相談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回答하는 시스템으로서 全般的 事務機械化의 일환으로 1987年 1월에 東京局에 導入하였고 그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989年 1월에는 全局(所)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1991年 10월에는 새로이 全國의 主要都市에 Tax Answer를 增設하여 全國 51地域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1992年 6월에는 東京局과 大阪局의 Tax Answer에 팩시밀리 서비스를 開始하여 利用者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4年度 回答件數는 約 112만件(〈表 Ⅲ-27〉 參照)으로서 이 시스템 導入 以來의 總回答件數는 1995年 3月 末에 579萬件에 이르고 있다.

다. 컴퓨터의 活用

1) 컴퓨터화의 過程

國稅廳은 事務의 合理化·效率化를 위하여 1961年 2월부터 컴퓨터活用に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후 5年間의 준비기간을 거쳐 1966年 2월에 東京 國稅局에 ADP(Automatic Data Processing) 센터를 開設하여 컴퓨터에 의한 事務處理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1968年 7月

1) 日本에서 英語 原語로 사용하고 있음.

〈表 Ⅲ-27〉日本の Tax Answer 利用 코드 上位 20(1994年)

順位	Code	稅 目	Code 名	利用件數
1	151	所 得 稅	副收入은 얼마까지 稅金을 내지 않는가	54,378
2	152	所 得 稅	妻의 所得이 얼마까지 配偶者控除가 되는가	43,835
3	141	所 得 稅	治療費 所得控除	39,949
4	142	所 得 稅	醫療費控除의 對象이 되는 醫療費	33,166
5	437	所 得 稅	扶養控除	23,101
6	305	源 泉	아르바이트 等 源泉徵收	21,410
7	160	所 得 稅	住宅取得 等 特別控除 節次	20,028
8	155	所 得 稅	住宅取得 等 特別控除 概要	17,639
9	121	所 得 稅	봉급자로서 確定申告가 필요한 者	17,050
10	503	讓 渡	長期讓渡所得의 稅額計算	16,166
11	439	所 得 稅	配偶者特別控除	16,160
12	521	讓 渡	自家를 관 경우의 特例	12,775
13	191	所 得 稅	本人이 수취한 公的年金等 稅金	11,869
14	601	相 續 稅	相續稅가 課稅되는 경우	11,533
15	131	所 得 稅	中途退職으로 年末調整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506
16	643	贈 與 稅	父母 等으로부터 住宅取得資金의 贈與를 받은 경우의 特例	11,388
17	132	所 得 稅	자기집을 取得하거나 増改築을 한 경우(住宅取得 等特別控除)	10,599
18	501	讓 渡	讓渡所得의 計算方法(分離課稅)	10,184
19	701	消 費 稅	消費稅構造	9,930
20	436	所 得 稅	配偶者控除	9,602
上 位 20 Code 計				402,268
其 他				715,270
全 Code 計				1,117,538

資料：國稅廳,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5.

에는 大阪 國稅局에, 1977年 7月에는 ADP 센터를 設置하고, 管内 稅務署의 事務를 컴퓨터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 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1983年 7月에는 國稅廳 事務管理센터를 設置(東京 ADP센터도 同 센터에 옮김)하고 이에 의하여 關東信越, 札幌, 仙台, 金澤, 廣島, 高松 및 熊本の 各 國稅局과 오끼나와 國稅事務所의 稅務署에도 事務 컴퓨터處理

를 開設하였다. 1987年度에는 全國의 稅務署(19952年 7月 現在 524署)로의 擴大를 完了하여 주요한 內部事務의 전산화가 정비되었다.

2) 컴퓨터處理의 概要

가) 申告所得稅 事務

申告所得稅 事務 중에서 定型的인 內部事務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納稅者의 申告實績 등의 基本 資料로 하여 ① 納稅者에게 送付하는 申告用紙에 受信人名, 豫定納稅額의 記入 ② 申告額의 檢算·集計 ③ 高額納稅者의 公示者名簿, 納稅者名簿 등을 作成한다.

나) 法人稅 事務

法人稅事務 중 定型的인 內部事務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法人의 申告實績 基本 資料로 하여 ① 申告期限이 到來한 法人의 추출 및 당해 法人에게 송부할 申告用紙에 受信人名, 中間申告分の 法人稅額의 記入 ② 申告額의 檢算·集計 ③ 申告督促書, 高額所得法人의 公示表, 地域別·豫算期別의 法人名簿 등을 作成한다.

다) 源泉所得稅 事務

源泉所得稅 事務 중에서 定型的인 內部事務를 컴퓨터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源泉徵收義務者의 이동항목, 納付實績 등의 基本資料에 의한 ① 源泉徵收義務者에 納付하는 徵收高 計算書用지에 受信人名 記入 ② 納付實績의 檢算 集計 ③ 加算稅 賦課 決定決議書, 未納催告狀, 源泉徵收義務者名簿 등의 作成이 있다.

라) 消費稅 事務

消費稅 事務 중에서 定型的인 內部事務를 컴퓨터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納稅義務者의 屈出項目, 申告實績 등의 基本 資料에 의하여 ① 納稅義務者에게 송부하는 申告書用紙의 受信人名, 中間納付稅額의 記入 ② 申告額의 檢算 集計 ③ 申告督促書, 納稅義務者名簿 등을 作成하고 있다.

마) 債權管理 事務

債權管理 事務 중 定型的인 內部事務를 컴퓨터 處理하고 있는데, 具體的으로는 納稅者의 申告 및 納付實績 등의 基本 資料에 의하여 ① 納稅者에게 送付하는 納付用紙에 受信人名을 記入 ② 納付實績의 檢算·集計 ③ 督促狀, 滯納處分表 등을 作成하고 있다.

바) 資料情報 事務

컴퓨터에 의하여 商品의 去來情報, 利子の 支給 등에 관계된 資料情報 등의 이른을 모으고, 稅務調査를 지원하기 위한 資料를 作成하고 있다.

사) 職員 給與計算 事務 등

國稅 全職員의 給與計算, 源泉所得稅의 年末調整 등의 事務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每月의 個人別 給與支給 明細書, 年 1日의 所得源泉徵收 需要 등의 作成을 한다. 이 외에 職員의 厚生關係 事務에 대해서도 컴퓨터 처리하고 있다.

아) 使用機器, 經費, 人員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는 다음과 같다.

- 國稅廳事務管理(東京ADP)센터 大型 컴퓨터 7대
- 大阪 ADP 센터 大型 컴퓨터 3대
- 各 古屋 ADP 센터 大型 컴퓨터 2대

1996年度 當初豫算에서 컴퓨터 處理關係 結果는 약 529億円이며 事務 擔當職員은 487名이다.

3) 將來의 課題

이상과 같이 國稅廳에서는 제한된 人員으로 事務 效率化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稅務行政의 모든 분야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社會經濟情報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調査支援事務에 ADP를 利用하는 등, 高度의 시스템에 대한 必要性이 인정되었다. 또한 電算處理技術이 비약적 진보로 이들 成果를 國稅事務의 ADP化에 活用함으로써 보다 高度의 ADP化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하여 最新 技術을 구사하는 새로운 ADP시스템(國稅總合管理制度)의 開發實施가 필요불가결하다는 認識에서 1988年 7월부터 廳內 연구계획에 대하여 檢討하였다.

그 檢討結果를 기초로 하여 1989년에 국세종합관리제도의 基本設計를 作成함으로써 ① 폭넓은 事務를 總合적으로 機械化할 것 ② 統一的인 處理環境을 제공하여 利用者가 使用하기 쉬운 시스템을 할 것 ③ 金후에 多樣化하는 行政需要에 유연하게 對處할 수 있는 構造로 할 것 등, 국세 종합관리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1990年 7월부터 연구계획팀을 확대하여 本格的인 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라. 稅理士 制度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公正한 立場에서 申告納稅制度의 理念에 따라 納稅義務者의 信賴에 부응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適正한 실현을 도모한다고 하는 公共的 使命을 가지고 있으며 申告納稅制度의 適正하고 원활한 운영에 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稅理士의 業務, 資格, 權利 및 義務 등은 稅理士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事務는 印紙稅·贈與免許稅 등을 제외한 租稅에 대하여 稅務代理, 稅務署類의 作成 및 稅務相談을 하는 것이다. 稅理士 資格이 있는 者는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 외에 稅理士試驗이 免除된 者, 변호사(변호사가 자격이 있는 자를 통합) 및 公認會計士(公認會計士가 될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이다. 이들이 稅理士가 되기 위해서는 日本稅理士聯合會에 비치되어 있는 稅理士 名簿에 登錄을 해야 한다. 稅理士가 아닌 者는 稅理士 業務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罰則이 적용된다. 다만 변호사는 國稅局長에게 通知하고, 公認會計士는 國稅局長의 許可를 받는 등의 일정한 條件下에 稅理士 業務를 할 수 있다.

全國의 稅理士會의 會員數는 1995年 3月 31日 현재 6萬 1,544名이며 그 외에 國稅局長에게 通知하여 業務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1,189名, 國稅局長의 許可를 받고 稅理士 業務를 하고 있는 公認會計士는 1,363名이 있다(〈表 Ⅲ-28〉參照).

國稅廳에는 學識經驗者 3名으로 구성되어 있는 稅理士審査會가 설치되어 있으며 稅理士試驗의 實施 및 稅理士에 대한 懲戒處分의 審議를 담당하고 있다.

〈表 III-28〉日本の全國稅理士會 會員數 推移

(單位：名)

	會員數		會員數
1955	6,114	1989	55,216
1960	9,646	1990	56,962
1965	14,049	1991	58,530
1970	21,567	1992	59,710
1975	29,036	1993	60,752
1980	36,818	1994	61,544
1985	47,221	1995	62,389

註：「會員數」は年末會員數也。

資料：國稅廳，『日本における稅制行政』，1996。

IV. 韓·日 國稅行政의 比較·評價

本 報告書의 目的은 韓國 國稅行政 30年을 評價하는 데 있다. 그 평가의 기준을 日本의 國稅行政과 相互比較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國稅行政을 평가하고자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租稅制度和 行政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實物經濟 못지않게 租稅制度 및 行政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國稅行政의 韓·日比較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國稅行政이 나아갈 방향을 摸索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租稅體系

우리나라는 최근에 直接稅 比重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間接稅 中心 稅制인 데 반하여 일본은 일찍이 전후에 所得稅를 基幹稅로 하는 直接稅 中心의 租稅構造를 채택하였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租稅制度의 큰 차이이다.

所得稅의 長點은 능력에 따른 租稅負擔의 原則(ability to pay principle)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稅制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所得稅 中心 稅制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매우 어렵다는 면과 높은 累進稅率 適用은 勤勞意慾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經濟成長을 둔화시킨다는 주장에 의해 所得稅率을 인하하여 稅負擔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이 所得稅(法人所得稅 포함)가 전체 세수의 60~70%를 상회하는 국가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세입총액에서 소득세비중이 15%, 법인세비중이 9%에 불과한 間接稅

中心國家에서는 소득세의 경감보다는 오히려 所得稅가 세수면에서 租稅體系의 중심적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所得稅를 기간세로 하여 負擔能力에 따른 공평한 세제를 만드는 것을 長期租稅政策의 基本方向으로 해야 할 것이다.

韓日 양국의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表 IV-1>과 같다. 우리나라의 所得稅가 전체의 22.8%, 法人稅의 14.1%로서 소득에 대한 課稅總額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약 37%에 불과한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所得稅가 세입총액의 35.7%, 法人稅가 25.0%로 所得에 대한 과세총액이 60%를 上廻하고 있다.

<表 IV-1> 우리나라와 日本의 所得稅 比重

(單位 : 조원, 조엔, %)

	우 리 나 라		일 본	
	세입액	구성비	세입액 ¹⁾	구성비
세 입 계	66.8		54.1	
국 세	64.9	97.2	51.4	95.0
소 득 세	14.8	22.8	19.3	34.7
법 인 세	9.4	14.1	13.5	25.0
부 가 가 치 세	16.8	25.1	5.9	10.9
상 속 세	1.0	1.5	2.6	4.8
인 지 세	0.4	0.6	1.9	3.5
관 세	5.3	7.9		
교 육 세	4.1	6.1		
교 통 세	4.8	7.2		
기 타 수 입	1.58	2.8	2.5	4.6

註 : 1) 일본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5.1조엔이나 그중 21조엔은 공채수입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51.4엔이 됨.

資料 :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7

石弘光, 『財政構造改革白書』, 1996.

바람직한 租稅體系는 公平課稅, 效率, 簡素, 經濟成長 등 租稅原則에 부합하는 세금을 組合하여 이룰 수 있으며 그 基幹稅의 후보로는 所得

稅, 支出稅, 一般消費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오늘날 소득세를 과도한 累進率로 課稅하는 경우에 貯蓄意慾의 減少, 勤勞意慾의 減少, 투자위축 등으로 資本形成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批判이 있으며 精確한 所得을 計算하기에는 여러 가지 行政상의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支出稅를 所得稅에 대체하기에는 行政上 解決하여야 할 問題點이 많이 있어서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이 通說이다. 또한 EU 제국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 一般消費稅인 附加價値稅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應能負擔의 原則으로 볼 때 負擔의 逆進性이라는 결점으로 인하여 租稅體系의 中心的 세금으로 採擇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結論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所得稅體系를 租稅體系의 기간세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學者와 稅務行政 專門家 사이에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

2. 申告納付와 調査行政

우리나라의 自進申告納稅制度는 法人稅의 경우 1980년, 所得稅의 경우는 1995년에 비로소 導入되었다. 自進申告納稅制度도 이전에도 신고납세제도가 있었으나 정부부과제도하에서 課稅의 根據를 提出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조세채권이 신고에 의하여 確定되는 自進申告納稅制度와는 本質的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自進申告納稅制度가 이와 같이 지연된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稅務行政 내부에서의 ‘時機尙早論’이 계속 우세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日本 國稅廳은 1947년에 도입한 自進申告納稅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靑色申告制度를 시행하여 납세자에 대한 계몽과 교육·홍보를 계속하는 한편 納稅者 협력단체를 組織·育成하여 납세협력을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申告納稅制度를 뿌리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국세청 발족 후 日本의 靑色申告를 참고로 하

여 綠色申告制度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國稅廳은 綠色申告制度를 도입한 후 납세자가 記帳을 근거로 한 自進申告納付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거의 매년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標準率·基準率에 의한 신고권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推計課稅를 마찰 없이 추진하였다. 1966년 녹색신고제도를 실시한 이래 1969년 이를 法制化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規制하다가 1975년에는 이를 대폭 緩和하였으며, 1990년 방침을 旋回하여 승인요건을 強化하는 등 政策에 一貫性이 없었기 때문에 녹색신고제도는 <表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名無實한 제도가 되었으며 1995년 신고납부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폐지하게 되었다.

<表 IV-2> 綠色申告制 導入 當時 및 最近 5個年間 綠色申告人員 推移

(單位: 名, %)

	1966	1990	1991	1992	1993	1994
신 고 인 원	109	211	153	5	30	8
기장인원절대비율	-	0.1	0.08	-	-	-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國稅廳이 所得稅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결정의 類型을 보면 국세청 發足 이전에 記帳者는 실지조사결정에 의하고, 無記帳者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하도록 二分化되어 있었으나 국세청 발족 이후에는 신고한 대로 시인하는 것을 확정신고결정이라 하고 조사결정은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확정신고결정제도는 前年度의 收益金額이 一定金額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업종 및 현황을 감안하여 정한 基準率(자동부과율) 이상을 신고한 때에는 기장유무에 불구하고 신고대로 결정함으로써 一體의 稅務調査를 면제하는 特異한 제도이다.

서면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는 제도로서 1966년 녹색신고제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국세청의 소득세 행정은 이 書面決定對象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법이 納稅者의 성실한 帳簿의 記帳과 이에 따른 정확한 신고를 誘導하기보다는 業種別 · 地域別 基準率 이상을 신고한 자를 성실한 신고로 보는 이른바 基準率 行政의 한 방법에 불과했다¹²⁾.

실지조사결정은 장부를 기장 · 비치하고 있는 納稅者의 所得稅를 現場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 ·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1991년에 실지조사신청자 전원을 조사하는 체제에서 選別調查體制로 轉換하였다.

추계조사결정은 所得金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帳簿,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明白한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원칙적으로 標準所得率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綜合所得稅를 실시한 다음 연도인 1976년과 1980년 그리고 1990년대의 綜合所得稅 種類別 조사결정 추이를 살펴보면 <表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고결정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추계조사 인원도 감소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IV-3> 綜合所得稅 種類別 調査決定 推移

(單位: 千名, %)

		1976		1980		1990		1992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 계		401	100	539	100	636	100	828	100
신 고 결 정		86	21.4	32	5.9	17	2.7	19	2.3
조사결정	서면조사	0.3	0.1	2	0.4	235	36.9	282	34.1
	실지조사	3	0.8	46	8.5	18	2.8	23	2.7
	추계조사	311.7	77.7	459	85.2	366	57.6	504	60.9

資料: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12) 國稅廳, 『國稅廳 三十年史』, 1996, pp. 319~330.

自進申告納稅制度가 담보상태에 머무른 것은 오직 國稅廳의 책임만은 아니며, 제도를 담당했던 財務部와 納稅道義 수준이 매우 낮았던 납세자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自進申告納稅制度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간결한 세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納稅者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법에 정한 納稅義務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納稅者에게는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법을 위반한 데 따르는 응분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 잘못을 시정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納稅者의 道義를 昂揚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國稅廳의 경우는 高度成長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경제규모에 부응하지 못하는 稅務公務員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稅收比重은 작지만 많은 納稅者를 다루어야 하는 대중세 분야에서 一定 基準率 이상만 신고하면 이들에 대한 課稅를 종결하는 안이한 방안을 계속해 온 것에 문제가 있었다. 申告率 行政의 가장 큰 병폐는 비록 수는 많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記帳하려는 納稅者를 실망시키고 요령이 좋은 일부 納稅者의 脫稅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基準率에 의한 行政은 稅務行政의 現代化·科學化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根據課稅에 대한 逆機能, 實質課稅原則의 違背, 申告納稅制度에 대한 逆機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國稅廳은 1997년부터 이러한 基準率을 廢止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된다¹³⁾.

日本은 戰後 슈프勸告에 의하여 所得稅 中心 租稅制度를 확립하고 租稅行政의 목표를 自進申告納稅의 增進에 두는 行政體系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소득세·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稅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의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게 되

13) 基準率租稅行政에 대하여는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研究所, 『租稅行政의 適正 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1995. 3, pp. 47~59 참조.

었다. 이는 納稅者 자신의 申告에 의하여 제1차적인 租稅債務가 확정되며,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당국의 決定 또는 決定에 의하여 稅額이 확정되는 제도이다. 日本의 申告納稅制度는 1947년에 종전의 부과과세 제도를 代替하여 導入된 것이다. 導入 당시에는 納稅者들이 기장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었고 記帳慣習도 없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運營에 다소의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들 사이에 널리 定着되었다(〈表 Ⅲ-6〉, 〈表 Ⅲ-7〉 참조).

이와 같이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정착의 배경을 보면 첫째, 신고납세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50년에 청색신고제도를 창설한 것 둘째, 1984년에 신고납세제도를 한층 더 정착시키기 위하여 백색신고자에 대하여 기장보전제도, 기장제도, 수지내역서첨부제를 설치한 것 셋째, 이들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稅理士會, 청색신고회 등 관계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기장방법 등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고누락이 多額이라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점 등 制度·執行 兩面으로부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申告納稅制度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계속적이고 정직한 기장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청색신고제도는 이와 같은 基盤을 만들기 위하여 1950년에 슈프권고에 의한 세계의 全面的인 改革의 일환으로써 創設된 제도이다.

청색신고제도는 事業者인 個人 또는 法人이 미리 세무서장의 承認을 얻어 청색의 신고용지에 의하여 申告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納稅者에 대하여는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一定水準의 記帳을 繼續的으로 할 것과 이를 보전할 義務를 부과하는 한편, 청색신고자 및 청색신고법인 이외의 納稅者에 비하여 稅制上 유리한 所得金額의 계산이나 취급을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에서 중심

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재 청색신고제도는 납세자간에 정착되어 있으며 청색신고자는 개인이 449만명, 법인이 253만개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의 청색신고의 비율을 보면 개인의 경우는 50% 내외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國稅廳은 이들 零細企業에 대하여 성실한 기장을 기초로 한 신고를 하도록 하는 制度를 정비하여 납세자 교육·홍보, 협력단체의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調查機構의 整備와 效率의 調查行政으로 탈세자를 색출하여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세정전반에 걸쳐 신고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國稅廳 機構의 改編

國稅廳 조직은 30년전 發足 당시에 비하여 量的으로는 刮目할 성장을 하였으나 그 기본 골격은 발족 당시의 稅目別 조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오늘날 稅務行政組織의 세계적 추세는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納稅者數의 급격한 증대에 부응하여 稅目別 組織에서 機能別 組織으로, 더 나아가서 納稅者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추세에 있다¹⁴⁾.

美國 국세청은 이미 1952년에 종래의 稅目別 組織을 機能別 組織으로 대폭 改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稅政改革計劃(Compliance 2000, Tax System Modernization)에 의하여 기구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稅政改革의 3대 목표를 自進納付 水準의 提高, 納稅者 負擔輕減, 質의 生産性과 顧客滿足度 增大로 하여 國稅廳 전체의 조직을 종래의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改編하고 있다.

日本 國稅廳은 1991년 우리 나라와 같은 세목별 조직을 納稅者別 組織으로 개편하였다. 이 개편의 동기는 1989년에 도입된 消費稅로 인하여

14) 유시권 외 3인, 『國稅行政 改革方案(Ⅱ)』, 한국조세연구원, 1994. 12 참조.

그 동안 直接稅·間接稅로 분류하던 稅務行政의 틀이 非能率의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日本 국세청의 1991년도 機構改革의 내용을 보면 申告所得稅, 法人稅 및 消費稅를 통합·처리하여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改革 前의 所得稅部門, 資產稅部門, 法人稅部門, 間接稅部門 등 稅目別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個人課稅部門과 法人課稅部門으로 재편하였다.

申告納稅制度의 정착을 위해서는 現行 세목별 조직인 國稅廳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국세행정을 納稅서비스·申告管理·調査·徵收 등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조직으로 編制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할 경우 納稅者를 인별, 기업체별 단위로 세적관리·신고지도·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管理하는 것이 가능하다. 機能別 組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 先進國에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組織改編은 납세자 중심 조직(customer oriented organiz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예로 1992년 네덜란드 內國稅 關稅廳(Dutch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DTCA)은 세무행정 目標集團인 납세자를 ‘個人納稅者部門’, ‘企業納稅者部門’, ‘大法人納稅者部門’ 그리고 ‘關稅部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개편한 이유는 納稅者의 수요와 행태를 이해하고 납세협력회피의 이유를 分析하여 납세협력증진을 위한 戰略을 구상함에 있어 납세서비스·세무조사·징세체제 등 다양한 手段을 동원하여 納稅者에게 총체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納稅者部門을 관리하는 세무행정조직에서 해당 납세자 집단의 행태와 수요를 總體的으로 파악하여 해당 납세자 집단에 대한 납세서비스·세무조사·징세 등 세무행정 機能의 一體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納稅協力을 增進시키는 것이다.

4. 國稅情報의 公開

우리나라 國稅廳이 발행하는 『國稅統計年報』와 日本 국세청이 발행하는 『國稅廳統計年報書』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국세청은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租稅行政의 성패는 納稅者들의 협조에 있고 납세자들의 협조는 租稅行政에 대한 信賴에 의하여 결정된다¹⁵⁾.

租稅行政에 대한 신뢰는 租稅行政이 공정하게 執行된다는 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은 租稅行政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조세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 改善方案, 經濟的 變動과 새로운 거래질서에 맞는 課稅理論과 課稅技法 등을 계속 개발하여 이를 租稅制度에 逆流(feed back)시켜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國稅行政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여 稅制와 租稅行政이 活性化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制度上的 차이가 있기 때문에 不可避한 경우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日本 國稅廳은 所得種類別 人員數 및 所得金額과 業種別 人員 및 所得金額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國稅廳은 이러한 자료를 公開하고 있지 않고 있다¹⁶⁾.

우리나라 국세청의 세무통계가 일본의 통계에 비하여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즉, 소득세 관련 통계의 경우 일본 국세청이 申告所得稅에 대하여 1994년도판의 경우 41페이지에 걸쳐 統計資料를 수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동 연도의 우리나라 『국세통계연보』에는 7페이지에 걸쳐 綜合所得稅 관련 통계를 掲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가 공개하지 않는 자료 중 중요한 것으로

15) 李愚澤, 「租稅行政의 回顧와 政策課題」, 『光復 後 50年間の 租稅 및 金融政策의 發展과 政策方向』(第1卷: 租稅政策), 韓國租稅研究院, 1995. 12, p. 92.

16) 자료공개에 대하여는 玄鎮權, 『租稅關聯 資料體系의 變遷과 改善方向』, 1996. 6, 참조.

는 所得種類別(예컨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내역과 소득금액의 누년비교, 소득계급별 신고소득세 표본조사 결과 등이다¹⁷⁾. 통계의 공개 정도는 신고소득세뿐만 아니라 源泉徵收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國稅滯納狀況과 같은 통계는 한국국세청이 게재조차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특정 情報를 제외하고는 課稅에 관한 통계를 대부분 공개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透明性을 提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租稅行政에 관심이 있는 學者들이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稅政의 發展과 民主化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7)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國稅廳統計年報書』, 1994년도판(平成6年度版), 제120회, pp. 44~85 참조.

參 考 文 獻

- 國稅廳, 『國稅廳 二十年史』, 1986.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5.
- , 『國稅廳 三十年史』, 1996.
- 金完淳, 『中長期 稅制改編에 관한 研究』, 經濟科學審議會議, 1980. 11.
- 大韓商工會議所, 『課稅行政의 合理化方案』, 1992. 12.
- 稅制發展審議委員會 消費課稅制度研究分科委員會, 『稅制發展研究報告書』, 1990. 6.
- 柳時權 外 7人, 『國稅行政 改革方案(I), (II)』, 韓國租稅研究院, 1994. 12.
- 財務部, 『韓國附加價值稅制史』, 1990.
- 財政經濟院, 『租稅概要』, 1996. 5.
- 韓國租稅研究院, 『光復 後 50年間の 租稅 및 金融政策의 發展과 政策方向』
(第1卷: 租稅政策), 1995. 12.
- 韓國租稅研究所,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1995. 3.
- 玄鎮權, 『租稅關聯 資料體系의 變遷과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6.
12.
- 日本 國稅廳, 『國稅廳 四十年史』, 1990.
- , 『國稅廳統計年報告』, 1990.
- , 『日本における 稅制行政』, 1995.
- 大藏財務協會, 『國稅廳統計報告書(國稅廳編)』, 1994.
- 尾原榮夫 編, 『圖說 日本の財政』, 東洋經濟新報社, 1994.
- 石 弘光, 『稅制改革おおどう 進めるか』, 日本經濟新聞社, 1986.
- 石 弘光・馬場義久 譯, 『稅制改革の理論と現實』, 東洋經濟新報社.

税務大學校, 『國際租稅行政セミナー一講本』, 1994.

税制調査會, 『税制調査會關係資料集』, 1993.

日本銀行調査統計局, 『國際比較總計』, 1992.

中央經濟社, 『稅務祖師の急所と對策』, 1992.

和田八束, 『日本の税制』, 有斐閣選書, 1990.

Alastair, M. *GST-A Practical Guide*, CCH, 1993.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 Outline of Japanese Tax Administration 1993*, Japan, November 1993.

Bird, R. M. and Milka Casanegra de Jantscher, *Improving Tax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ton, D. 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2.

Bird, R. M. and Oliver Oldmen, *Readings on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January 1976.

Board of Inland, *Board of Inland Revenue*, March 1993.

Due, J. F., *Indirect Taxation in Developing Economies: The Role and Structure of Customs Duties, Excises, and Sales Tax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0.

HMSO, *HM Customs and Excise Annual Report 1992~1993*, 1993.

Inter-American Center of Tax Administrators(CIAT), *Modern Trends in Taxation and the Tax Administration*, August 1993.

Internal Revenue Service, *1992 Annual Report*, 1992.

Joint Tax Program, *Problems of Tax Administration in Latin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ctober 1961.

Meldman, R. e. and R. A. *Retrie, Federal Taxation: Practice and Porcedure*, Fourth Edition, Commerce Clearing House,

- 1992.
- Messere, K. C., *Tax Policy in OECD Countries*, IBFD, 1993.
- Musgrave, R.,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1959.
- , *Fiscal Syste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 Musgrave, R. and P.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Seco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76.
- Parthasarathi, S., *Tax Policy Handbook*, IMF, 1995.
- Riggs, F. W.,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64.
- Shoup, C. S., *Public Finance*,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9.
- , "Theory and Background of the Value-Added Tax," Proceedings, Forty-Eighth Annual Conference of Taxation, 7~19, Sacramento, California: National Tax Association, 1956.
- Sommerfeld, R. M., H. M. Anderson, H. R. Brock, J. H. Boyd, S. A. Madeo and G. F. Streuling, *An Introduction to Tax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988.
- Tait, A. A., *Value-Added Tax*, London: McGraw-Hill, 1972.
- ,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Washington, D.C.: IMF, 1988.
- Ture, N., "Economics of the Value Added Tax," *Value-Added Tax: Two View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국문요약>

韓 · 日 國稅行政의 比較 · 評價

柳 時 權

本 研究는 租稅制度和 行政面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의 國稅行政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우리 국세행정을 評價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改善方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兩國의 行政을 평면적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이 장기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民主國家의 비용인 세금을 스스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自進申告納稅하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양국 행정이 어느 정도 이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분석 ·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國稅行政이 日本에 비하여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稅務行政의 發展을 위하여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망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租稅體系는 間接稅 中心 稅制인 데 비하여 日本은 소득세를 基幹稅로 하는 直接稅 中心 稅制를 확립하였다. 오늘날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은 그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제를 확립하지 못한 일부의 책임은 집행관서인 국세청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所得稅 自進申告納稅制度를 1995년에 비로소 도입한 데 비하여 日本은 1947년에 이미 자진신고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50년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의 결과 同 制度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중세 분야에서 標準所得率, 自動賦課率 등의 평균

치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인하여 선량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셋째, 國稅廳의 機構는 아직도 稅目別 組織에 의존하고 있어 신고서의 분류·조사 등 집행상에 문제가 많은 데 비하여 日本은 1991년에 稅目別 組織을 納稅者別 組織으로 改編하였다. 오늘날 선진국의 세무행정조직을 기능별 조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納稅者別 組織으로 전환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국세청은 최소한의 통계만 공개하고 있는 데 비하여 日本은 所得階層別, 地域別 및 滯納現況 등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자유로운 연구와 건전한 비판을 지원하여 稅務行政의 과학화·민주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日本 수준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 Comparative Evalu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Korea and Japan

Yu Shi-Kwon

This report is concerned with evaluating 30 year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f Korea comparing with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f Japan.

Criteria of evaluation are long run goals of tax administration, namely how to collect fair share of taxes of individuals based on voluntary compliance and democra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has the follow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those areas;

First, Korean tax system relies heavily on indirect taxes such as value-added tax compared to Japanese tax system which relies on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for revenue. Kore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s partly responsible for the present tax system because the quality of tax administr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tax system.

Second, level of voluntary compliance in the fields of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is very low compared with those of Japan. The Japanes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succeeded in promoting voluntary compliance by introducing so called "Blue Return System" as early as in 1950.

Third, The organization of Korean Tax Administration is still based on types of taxes which is definitely old-fashioned system while Japan reorganized according to taxpayers in 1991. International trends in re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is toward function-based as well as customer-oriented organizations.

Fourth, Comparing Statistical Year Book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f two countries, it is obvious that Kore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disclose very little tax statistics which are very important for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